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책임연구원 김영한

공동연구원 서정아 권일남



연구보고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책임연구원_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권일남(명지대학교 · 교수)

보조연구원_ 최수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 청소년관계법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방향과 세부 정비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관계법 내용을 분석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환경 및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선행연구 및 법령자료, 헌법체계, 법 개정 연혁과 사유, 법 구성 원리, 새로운 청소년환경 및 정책에 대한 자료, 외국의 법체계 및 정책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둘째, 전문가자문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목적, 개정내용, 미래에 필요한 내용, 해당법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법령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관계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외부인을 대상으로 청소년관계법 포럼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을 하였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헌법정신에 내포된 전체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완

- ②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서의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핵심과제로 설명
- ③ 「청소년 기본법」으로서 지향하는 청소년기본 인권의 의미강력 부여
- ④ 현재의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사적 의미의 재조정
- ⑤ 현장의 청소년육성과 활동 등의 개념 모호성에 대한 의미수정
- ⑥ 입법체계상 상·하위적 설명요소의 관계성 명료화
- ⑦ 「청소년 기본법」상 책임소재의 대상(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핵심역량의 재조명
- ⑧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및 참여권 지원을 위한 역할과 지원명시강화
- ⑨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헌신기여에 대한 보장적 제도화 강조
- ⑩ 청소년지도자의 세부 운영지침사항의 불균형 해소
- ⑪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전문지도위원제도 신설
- ⑫ 근로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등 관심과 지원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지원의 강화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지도사에 관련 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조치가 검토
-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정의 조항상,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 보완
- ③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 도입
- ④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사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 개정 또는 보완
- ⑤ 안정적 국가 및 지자체 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 기금의 확충방안 강구
- ⑥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타 부처 청소년사업과의 명확한 관계성 정리

⑦ 현장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사 인력 양성 및 배치체계 반영
셋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 부처 간 협력의무를 포함하고 중앙단위와 지방단위 청소년복지연계 제시
- ② 청소년복지대상은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지원 방안 제시
- ③ 복지추진방법에서 부처 간 협력사업 개발 근거를 제시하고 정신보건 분야 지원내용 구체화
- ④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통한 법적 설치 규정 강제
- ⑤ 법 조항에 의무성, 강제성 강화
- ⑥ 청소년복지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 ⑦ 청소년 가출 분야를 특화하고 가출청소년대상별 특화 쉼터 개발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방향과 세부내용은 청소년관계법의 개정추진에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외부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 청소년관계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개별법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법 구성 내용에 대한 해당법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음.
- 제6차 청소년정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청소년관계법 개정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았음.
- 미래에 요구되는 청소년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청소년관련법의 법 구성 형태 및 법적용 연계 체계를 제시하였음.
- 위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관계법의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법령자료, 헌법체계, 법 개정 연혁과 사유, 법구성 원리, 새로운 청소년환경 및 정책에 대한 자료, 외국의 법체계 및 정책내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음.

- 전문가자문 : 청소년관계법의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담당공무원 2명, 현장전문가 2명, 법전문가 및 학자 5명에 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개별법 단위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심층면접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및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학자들의 법 내용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외국사례 분석 : 청소년관계법의 법구성과 법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대륙법의 독일사례, 영미법의 미국사례, 아시아지역의 일본사례를 분석하였음.
- 청소년정책 포럼 : 청소년관계법 개정 초안에 대한 외부 이해당사자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9년 9월26일 명지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정책 포럼을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체계

- 기본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방침·프로그램·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하지 않는 법률임.
- 청소년 대상 기본법은 「헌법」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특성이 청소년이기에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피해를 당할 여지나 조건에 처해 있다면 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청소년 기본법」의 핵심적 의미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미 그리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참여의 적극성을 조장하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이 추구하는 맥락적 흐름은 점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고양 시키고 스스로 주체적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방향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청소년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다음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 하위법률에 대해 이념과 개념, 핵심내용을 정하고 이를 위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활동의 범위, 청소년활동시설분야, 청소년활동지도자분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분야,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청소년활동 검증체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청소년활동 안전체계 등으로 구조화가 필요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청소년에 대한 복지 범위, 청소년 우선분야, 청소년 생존권분야, 청소년복지 대상별 지원 분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긴급지원체계, 청소년보호지원체계 등으로 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관계법 정비 현황 분석

- 「청소년 기본법」은 2004년 전면개정이후 2019년 7월 까지 총 57건의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고, 일부 입법화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 지도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정,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개선, 청소년 정책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필요성,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와 교육지원, 후기청소년의 지원방안 제시 등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요소에 중점을 둔 내용이라 볼 수 있음.

- 「청소년 기본법」은 10개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3장 삭제, 제4장 청소년시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6장 청소년단체,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별칙으로 6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기본법의 기능은 ①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인식), ②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청소년인권, 권리를 위한 정책과 시책의 체계성) ③ 행정의 통제기능(타부서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의 지원과 협의), ④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추진된 사업과 대책의 지속성), ⑤ 국민에 대한 전달기능(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대국민 홍보지원), 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청소년인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시) 등 크게 6가지로 구성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주요 개정 사유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제한 운영 등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총 8개의 장 72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별칙으로 구성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은 청소년역량 개발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화된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 청소년정책의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한 청소년 활동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2월 9일에 개정된 이래로 법 16회 제·개정, 시행령 25회 내외 제·개정, 시행규칙 19회 제·개정되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총 10장 45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됨.

3) 외국의 사례

- 독일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인식과, 지역 시행기관의 통일, 둘째, 아동 담당기관과 청소년 담당기관의 통일, 셋째, 아동 청소년의 연계성 및 청소년과 초기 성년의 연계성, 넷째, 청소년의 사회주체성 인정, 다섯째, 장애 청소년과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섯째, 청소년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임.
- 미국사례의 시사점은 부서간 협력을 위한 연계법 제정과 청소년관계법에 따른 연구와 평가 강화, 청소년 스포츠 성취취 등 다양한 법령 제정 등임.
- 일본사례의 시사점은 일본이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는데 반해 지원 또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느슨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음(청소년고용 촉진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기본적으로 35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45세 미만의 자 까지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 일본의 히키코모리, 등교 거부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임.

4. 정책제언

- 「청소년 기본법」 개정 방향은 첫째, 「헌법」의 재해석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가 「청소년 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완하는 노력, 둘째, 저출산, 고령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노력, 셋째,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확산적 의미를 강조하는 새롭고 혁신적 의미를 강조, 넷째, 기본법의 목적상에서도 권리와 책임 등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기본 이념 역시 대상과 주체적 역할, 지원의 임무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 다섯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활동 등의 개념 모호성에 대한 의미수정, 여섯째, 「청소년 기본법」은 기본법 체계상에서 실행성과 현실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하위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계적 의미를 포괄토록 해야 함, 일곱째, 「청소년 기본법」상 책임소재의 대상(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핵심역량의 재조명, 여덟째,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및 참여권 지원을 위한 역할과 지원명시, 아홉째, 법구성체계상 청소년지도자 조항은 필요와 양성의 정도만 언급하고 실제 양성방법과 자격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열 번째, 「청소년 기본법」의 인권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소년인권지도자 또는 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 등 미래시대에 맞는 전문 청소년지도자의 틀을 제시, 열한 번째, 근로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등 관심과 지원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지원의 강화임.
-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청소년인권을 중심으로 권리보장, 기회확대, 성장환경조성, 보호복지 지원 포함, 차별금지조항, 정부 및 지자체 역할과 책임 구체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관련 조항은 기본개념과 방향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가장 큰 명점인 책무성에 대해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방향은 첫째, 청소년지도사에 관련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정의 조항 상,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 셋째,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관련된 규제 제도로 비취지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사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 넷째, 청소년활동정책을 완성하게 하는 안정적 국가 및 지자체 재정구조를 마련,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은 고유한 청소년육성정책의 핵심중 하나이므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정책과 청소년사업의 명확한 관계성 정리가 필요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신고제는 기존의 안전제도와 중복성이 높은 조항이므로 이를 평가등급과 안전등급을 고려하여 면제토록 하며, ‘국립 및 공립(지자체) 수련시설 감독 및 처벌’에 대한 조항 신설,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에 대한 주기를 3년으로 연장,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보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강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 참여 대상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수용인원 산정기준 마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6조 조세감면 수정 및 보완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방향은 중앙단위 - 지방단위 청소년복지전달을 체계화하고 이 내용을 법 체계 상에 포함,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무를 법체계 내에 포함, 복지대상 연령확대(후기청소년 포함),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처 간 협력 사업 개발 근거 마련,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사항 제시,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근거 마련,

지역규모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법적 설치 규정 강제화, 국가, 지자체 책무 - 일반/위기/특별청소년 영역 지원 이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부분 특화 영역으로 확대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자립’에 관한 사항이 법조항에 포함될 필요, 청소년복지체계가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부처, 지역사회, 보호자 등의 협력을 의무화,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을 가능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 건강검진 이후 치료나 조치 등도 법조항에 규정, 청소년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청소년 가출의 조기발견 등을 신규 조항으로 포함, 위기 청소년의 유형화를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발굴방법, 지원 이후 다시 시급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조항에 포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의 경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 체계’를 별도 장으로 신설하여 확대함.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연구보고 19-R09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3
1. 선행연구	15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청소년정책	23
III.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체계	43
1. 법체계	45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53
3.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71

Ⅳ. 청소년관계법 정비현황 분석	75
1. 「청소년기본법」 현황분석	77
2. 「청소년활동진흥법」 현황분석	96
3.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황분석	104
Ⅴ.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61
1. 독일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63
2. 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95
3. 일본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243
Ⅵ.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	267
1. 「청소년기본법」 개정 제안	269
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제안	288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308
참고문헌	323
부록	335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지	337

표 목차

표 I-1	총인구 및 청소년인구 추계(2010~2065)	4
표 II-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권고사항, 권고반영	37
표 II-3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고려사항	39
표 III-1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목록 분류	65
표 IV-1	2004년 이후 「청소년기본법」 입법화내용(57건)	78
표 IV-2	「청소년기본법」의 구성	84
표 IV-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내용	96
표 IV-4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	98
표 IV-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개정 현황	104
표 IV-6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요약	111
표 IV-7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113
표 V-1	청소년 관련 연방 법령	196
표 V-2	교육 관련 연방 법령	199
표 V-3	복지 관련 연방 법령	200
표 V-4	착취와 위기보호 관련 연방 법령	201
표 V-5	업무조율 관련 연방 법령	202
표 V-6	청소년 관련 업무 조율과 협력을 위한 노력	237
표 V-7	각종 법령 등에 따른 청소년 호칭 및 연령구분	245
표 V-8	유스엘 기업 인정 기준	263

그림 목차

그림 II-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27
그림 III-1 법령 상호간의 체계	46
그림 III-2 법령의 구조	46
그림 III-3 법령 제·개정 절차	52
그림 III-4 법령 심사 절차	52
그림 III-5 기본법의 속성	54
그림 III-6 기본법의 주요 범주와 기능	57
그림 III-7 「청소년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의의	68
그림 IV-1 「청소년기본법」 개정발의내용의 범주 요약	82
그림 IV-2 인권의 출발점인식	88
그림 IV-3 기본법의 의미와 「청소년기본법」의 방향성 관계	90
그림 IV-4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성	94
그림 V-1 독일 청소년관련법 체계	168
그림 V-2 미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할 부서	195
그림 V-3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체계	246
그림 V-4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법 개념도	254
그림 V-5 유스엘 마크와 청소년고용촉진종합사이트 홈페이지	260
그림 V-6 잡카드 제도 흐름도	262
그림 V-7 잡카드 작성 예시	262
그림 VI-1 「헌법」에서의 청소년기본권 요구의미	270
그림 VI-2 「청소년기본법」의 변화 지향점	277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지향적 청소년 관련 법 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논의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과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지향이란 무엇인가?’ 하는 측면과 둘째, ‘청소년관련 법 정비란 무엇인가?’ 하는 측면이다.

첫째, ‘미래지향적 측면이란 무엇인가?’ 이는 현재를 포함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방향성과 청사진이 지향하는 바를 말하며 그 근간에는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생활, 고용과 일, 가족관계, 교육관계, 범죄와 처벌, 건강, 각종 서비스 등과 더불어 국가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의 능력 등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변화를 포함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173).

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화의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는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총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이유진, 김영한, 2017).

1) | 장 집필자 :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표 1-1 총인구 및 청소년인구 추계(2010~2065)

(단위 : 명)

연 도	총 인 구	인구성장률	청소년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2020	51,973,817	0.31	8,521,855	4,437,638	4,084,217	16.4
2025	52,609,988	0.20	7,491,892	3,873,864	3,618,028	14.2
2030	52,941,342	0.07	6,988,795	3,596,426	3,392,369	13.2
2035	52,833,722	-0.12	6,745,203	3,464,181	3,281,022	12.8
2040	52,197,882	-0.32	6,499,389	3,336,669	3,162,720	12.5
2045	51,051,159	-0.52	6,331,801	3,251,241	3,080,560	12.4
2050	49,432,752	-0.72	5,963,258	3,062,603	2,900,655	12.1
2055	47,429,589	-0.89	5,461,270	2,804,982	2,656,288	11.5
2060	45,245,985	-0.97	5,013,453	2,574,845	2,438,608	11.1
2065	43,024,097	-1.03	4,727,919	2,428,205	2,299,714	11.0

* 출처 : 통계청, 2016; 이유진, 김영한, 2016, 인구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p.15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 법적 장치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갖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의미에 맞춰 보다 체계적, 개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청소년 삶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며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진학율 또한 약 70%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각적인 교육열과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청소년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의 사회적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심이 비교적 집중되어 자칫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대학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욕구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방위적 교육으로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지식적으로는 산업사회지식에서 정보화 사회 지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환경인 4차 산업에 대한 지식 등까지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의 교육과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은 보다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관련하여 새롭고 다양한 교육 형태와 과정의 등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이다.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특히 부정적 측면으로의 변화는 청소년의 행동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부분(저출산, 문제행동, 위기 및 비행청소년 증대 등)과 청소년 스스로도 우울과 심리적 불안감 고조, 게임중독과 성적 일탈 등의 심화로 인한 고립감은 위기의 대응이라는 시급성을 떠 올리게 하고 있는 반면 멀리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적 여건에 대한 수요 증대, 청소년선거권 등 인권과 권리의식의 고조 등은 과거와 다른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행위확장의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틀을 재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²⁾.

2)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서 정책의 부침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초기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당시의 확산적 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설립부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특성이 강하게 부각된다. 이는 곧 청소년기가 힘들었던 여정으로 각인되었고 위기적 상황을 크게 인식하였던 위정자 스스로가 청소년기 만큼은 과거와 같은 재생산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발로에서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다. 따라서 정책에서도 활동보다는 복지,

이러한 다양한 환경변화는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기본권리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법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관련 법의 개정을 보다 타당성 있게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련 법 정비’ 내용에 관련한 것이다.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서 청소년의 권리의무나 청소년대상 서비스에 관계된 모든 법을 말한다. 여기에 관련된 법률은 정부의 각 부처마다 해당부처의 업무내용과 연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률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크게 네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당해 연도에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3종의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관련 법 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최초 1961년의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청소년법의 모태는 1987년 11월 28일 ‘청소년 육성법’이며, 그 후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 2004년 2월 9일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이 이루어져 정부의 청소년정책추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청소년관련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

보호가 우선시되었고 그러한 대책은 곧 CYS-net과 같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의 정책을 중시하게 되기도 하였다.

첫째는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본법」이 대부분의 기본법들이 갖는 하위법을 포괄하는 법체계와 역할 수행, 법 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적합한가? 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그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초의 「청소년기본법」 제정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당시의 청소년분야 핵심정책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인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추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여전히 하위 법으로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하다.

둘째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당시의 한계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의 경우를 보면 2004년도 당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활동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구성하였다. 이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법구성의 기본관점이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측면보다는 청소년수련활동에 국한하여 해당내용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의 주요 사유가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 ‘국토순례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인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중 일부 청소년복지관련 내용인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각종지원과 청소년상담분야, 청소년증, 청소년관련 각종 지원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복지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결과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권리의 본원적인 측면에서 법률로서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아동복지법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기존의 소극적,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 포괄적 복지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니 만큼(홍봉선, 남미애, 2018)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는 내용 또한 보다 보편적 복지내용을 포괄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관계법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 청소년관계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역할과 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법 체계 구축 및 정비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목적을 명확히 달성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법 개정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최근 청소년정책 등 미래 환경 변화에 필요한 법 내용을 반영한다.

넷째, 청소년법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타 법령 정비 요구안을 함께 제시한다.

다섯째, 외국의 청소년관계법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령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청소년관련 법령의 보편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관계법 내용 분석

청소년관계법 내용분석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개별법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법 구성 내용에 대한 해당법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2) 환경변화에 대한 법제도 환경 분석

청소년관계법의 주요 변경부분에 대해 제6차 청소년정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 지위와 인권 등 보편적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필수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법 개정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

3)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분석

미래에 요구되는 청소년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청소년관련 법의 목적, 법적내용, 법 구조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관계법률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선행연구 및 법령자료, 헌법체계, 법 개정 연혁과 사유, 법 구성 원리, 새로운 청소년환경 및 정책에 대한 자료, 외국의 법체계 및 정책내용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법체계 및 내용구성을 「청소년기본법」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하위법률과의 관계 등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법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동일하게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복지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은 개별법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는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9명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둘째는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자와 청소년학자 3명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2명과 여성가족부 업무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 학자 2명을 중심으로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점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갖추어야할 목표를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업무담당자 1명과 법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셋째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는 현장전문가를 통하여 현행법의 문제점과 실제적인 법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심층면접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면접은 5명의 관련분야 전문 학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 아동복지법과의 관계설정 및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학자들의 법 내용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4) 외국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청소년관계법의 목적, 구성내용, 법체계, 조직체계, 전달체계 등 전반적인 법적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법률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며,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서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사례로는 독일을, 영미법의 경우는 미국을,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청소년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특히 해당국가의 청소년관련법의 법 구성측면과 타법과의 연계측면은 본 연구에서 주요한 사례이다.

해당국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별로 외부전문가 집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토록 하였다.

5) 청소년포럼개최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공개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연구내용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26일 명지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해당 법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등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청소년 정책



1. 선행연구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연구로는 유명미(2016), 김운나(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제·개정 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 고찰에서 유명미(2016)는 ‘청소년 관련 내용의 법률상 구현이 청소년 권리 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하면서 기본법은 ‘정책 이념이나 기본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시책을 추진 또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의 유형’으로(박영도, 2008, p.127; 유명미, 2016, p.105 재인용) ‘정책 총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다른 법률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유명미, 2016, p.106). 그는 「청소년기본법」의 제·개정 과정을 크게 청소년권리에 관한 조항, 청소년정책에 관한 조항, 청소년시설에 관한 조항,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조항, 청소년단체에 관한 조항,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항, 청소년복지에 관한 조항으로 나누어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의 변화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정 「청소년기본법」은 기본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조항이 청소년수련 활동에 치우쳐져 있고 청소년시설,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 관하여 복잡하게

3) ||장 집필자 :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기술하느라 정작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수적 청소년 권리와 보장을 위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여러 차례 해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조문 및 내용의 구성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유영미, 2016, p.122). 유영미(2016, p.122)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관련 일반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률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과 이를 향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권리현장의 구체적 법제화, 사회·문화·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김윤나(2012, pp.41-43)는 인권관점에 기반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개선점을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 중 생존·발달 관련 법조항이 보호권과 참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고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 청소년의 사회적 변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조항이 추가 신설되어야 하며, 청소년 생존·발달권과 더불어 보호·참여권에 관한 법조항, 청소년인권 관련 기관간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연계·협력방안에 관한 법조항, 청소년관련 법률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련법 연구동향을 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분야는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용교(2004, 2007), 박진규(2004), 조성혜(2011), 김선애(2015)는 청소년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윤향희와 김경제(2016)는 중도입국청소년, 안미영(2017)은 청소년증 등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고 있으나 본 절에서는 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 이용교(2004)는 20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 청소년계 요구를 법제화한 의미 있는 것이나 제안내용 중 상당 부분 특히 청소년의 자립지원(7개 조항),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9개 조항), 청소년복지시설(12개 조항), 보칙(6개 조항)이 대폭 삭제·축소되어 입법 취지가 상당부분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원 발의한 내용은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다소 짧은 법률의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당초 청소년복지 지원법안이 의욕적인 내용을 담았던데 반해 입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처와 협조를 해야 할 일 등은 거의 삭제된 형태로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되었다(이용교, 2004, pp.16-17).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인권보장과 복지향상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할 뿐 청소년에게 질병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후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청소년, 비만 청소년 등에 대한 관리 상담, 치료 지원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용교, 2004, pp.17-18). (㉢) ‘청소년 자립지원’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제정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조정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용이 삭제되었다(이용교, 2004, p.19). (㉣)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법안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정보·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고 하여 광의의 청소년 복지개념으로 상정한 데 반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에 기반하면서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 정의되었다(이용교, 2004, p.20).

(ㄴ) 청소년복지지도자를 규정함에 있어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은 명시된 데 반해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실제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복지 전문가가 대부분 사회복지사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전문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ㄷ) 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이용교, 2004, pp.21-22). 관련하여 이용교(2004)는 향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과제로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진규(2004)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특정의 법은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다수가 특정 사항에 대해 복잡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낸 결과물이자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바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의 구성은 그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낱줄과 씨줄로 엮어내듯 시대정신을 망라하고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도출된 기본 원칙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유기적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이러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청소년복지법규와 다른 청소년제도와와의 유기성 확보,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의 명확성, 복지의 우선순위에 따른 고민, 복지 주체들 간의 협력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박진규, 2004, p.13; 이용교, 2007, p.3 재인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2004년에 이어 다시 살펴본 이용교(2007)는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05년 3월에 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쟁점별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청소년복지지원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것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회복적 보호지원은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되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용교, 2007, pp.14-15).

비교적 최근 연구로 김선애(2015, p.94)는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을 살펴보면서 '사회권으로서 복지권은 사회성원이 갖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소홀한 경향이 있으나 최근 복지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제도와 전달체계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권리로서 청소년복지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적 권리를 증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복지권은 현재의 권리만이 아닌 미래의 권리까지도 상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

에서 청소년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또한 강조하였다(김선애, 2015, p.100). 청소년복지권은 아동의 그것보다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복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부모의 양육책임(제18조), 가족 환경이 박탈된 아동(제19조), 심리적·신체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생존과 발달(제6조), 장애아동(제23조),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제26조), 생활수준(제27조), 교육(제28조), 휴식, 여가, 문화생활(제31조) 등이 청소년복지권과 비교적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복지권은 성인으로부터 상당부분 독립적인 능동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보호적 권리로서 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염두에 둔 권리로 자리 매김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선애, 2015, p.106). 청소년은 더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주체적 권리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복지권은 자유, 자기 결정, 자율성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복지권은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른과 사회에 의해 조정되거나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청소년의 삶과 미래 청소년의 누려야 할 생활환경에 따른 시공간적 맥락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김선애, 2015, p.109). 따라서 청소년이 주체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선애, 2015, p.110). 아동복지권과는 구분되는 규범 구조를 갖고 있음 또한 강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 연구로는 주로 체험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도적 장치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많은 관심만큼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인간교육, 시민교육, 도덕교육, 가치관 교육, 기본습관교육 등의 의미로 정의되기 때문이다(곽병선, 유병열, 윤현진, 1997, pp.6-7; 유병열, 2006, p.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인성교육은 여전히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구성되어가는 동시에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어가는 진행 중인 준거(working criteria)라고 할 수 있다(김현수, 2017, p.143).

이 결과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04호로 제정되어 동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법 제2조는 인성교육 및 관련 핵심 용어들을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한 인성교육법을 추진하기 위한 인성교육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일정부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계획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 추진 방법을 비전-미션-아젠다의 세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가치의 회고

또는 소급(retrospect)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과거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가치를 전통으로부터 찾아내어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현수, 2017, p.147).

둘째, '성공적 미래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반이 무엇인가?' 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가치의 전망(prospect)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미래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가치를 찾아내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또한 다른 미래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창조를 인성교육에 기반을 두고 탐색하고자 하고 있다(김현수, 2017, p.14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교와 교육체계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와 노력을 미래인재의 양성에서 탐색하고자 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은 자기관리 능력, 바람직한 대인관계 능력, 고차적 인지 능력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형성되는 미래인재의 양성이라고 할 것이다(김현수, 2017, p.147).

김태균(2016)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제언으로 청소년활동중심의 정책기조 마련, 중앙의 청소년활동 정책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전달체계 강화, 생활밀착형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구축, 국가차원의 활동중심의 표준교육과정 구축을 강조하였다.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청소년정책

1) 환경변화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0만9천명이며 9~24세 청소년 인구는 약 876만 5천명으로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0%이다. 총인구가 2028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데 반해 청소년인구(9~24세)는 1982년 정점(1,420만 9천명)을 찍은 후 출산율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5).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2040년 650만명, 2050년 596만명, 2060년 50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여성가족부, 2018, p.51).

2018년 총 사망자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910명으로 전체 약 0.7%를 차지한다. 사망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등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62.3%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18, p.60). 2018년 기준 10-19세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35.7%이며, 2위는 악성신생물(암) 14.5%, 3위는 운수 사고로 14.0%이다. 20-29세 사망원인 또한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 47.2%, 2위는 운수 사고 11.6%이다.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데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09.24., p.8).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2018년 비만군(과체중, 비만) 학생 비율은 25.0%(과체중 10.6%, 비만 14.1%)로 전년 23.9%보다 1.1%p 증가하였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율 증가로 인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18년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12~24세 청소년'은 4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7.1%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21.1%, 여학생 33.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높아 중학생(25.2%)보다 고등학생(28.7%)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은 35.6%로 2년 전보다 0.6%p 증가한데 반해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53.1%로 4.6%p, 적정수면(6~8시간)을 취하는 청소년은 71.5%로 0.4%p 감소(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p.8-9, 11, 13)하였다. 2018년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9.3%로 중학생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생 28.3%, 초등학생 22.8% 순이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33).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속한 가구 또는 인구의 비율을 일컫는 '절대 빈곤율' 중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화한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2005년 5.9%, 2010년 4.8%, 2016년 3.7%이며 이는 아동(0~17세)수로 환산할 때 2016년 기준 약 33만에 해당한다.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한 상대아동빈곤율은 2005년 11.3%, 2010년 9.1%, 2016년 7.2%이며 2016년 기준 약 60만명에 해당한다(여성가족부, 2018, p.170).

최근 들어 이혼이나 미혼가구의 증가 등으로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0%, 약 150만 가구에서 2018년 10.9%에 해당하는 약 215만 가구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바이다(e-나라지표 웹사이트, 2018.12.7., 인출; 여성가족부, 2018, p.173 재인용).

2018년 초중고 재학 다문화청소년은 12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 중 2.2%를 차지한다.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중은 76.1%, 중학생 14.8%, 고등학생 8.7%이며 각종 학교 학생은 0.4%이다. 전체 학생 수와 학령인구(6~12세)는 감소추세이나 다문화가족⁴⁾ 학생은 최근 6년간

4) 광의의 다문화가족 개념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8, p.175).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7).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언어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국가법령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기에 달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을 위해 교육·언어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 간 갈등과 가족해체 가속화로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 가출과 반복적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pp.186-187). 2018년 기준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한 학생은 2.6%(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31)이며 청소년 인구수를 바탕으로 단순 추산하면 약 22만명에 해당한다. 남학생(2.7%)이 여학생(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3.1%, 초등학생 1.3% 순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31).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2005년 2월 시행)과 더불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를 거쳐 일시·단기·중·장기 쉼터로 특성화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8년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수는 32,190명으로 집계된다(여성가족부, 2018, p.189).

청년기로의 전이와 관련하여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률은 69.7%로 2009년 77.8%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하였다.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30.7%, 2017년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66.2%로 각각 전년보다 4.0%p, 1.5%p 하락하였다. 2018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7%이며 실업률은 9.5%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p.20). 2017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414만 5천 명에 달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 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4%로 나타났고, 취업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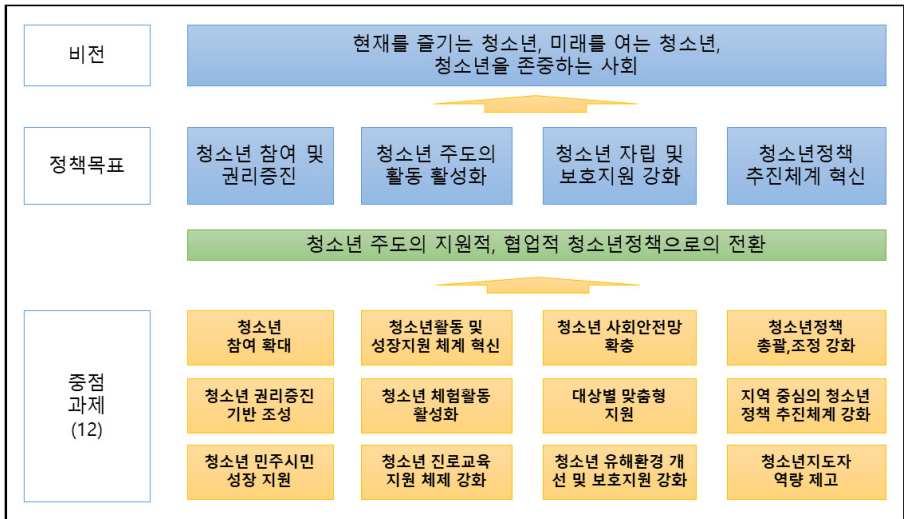
학원이나 기관을 통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21만 8천 명으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5.3%에 해당한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95.9%는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수업을 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통계청은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15~24세)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7년 18만4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중 구직단념자는 8만 3천 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p.408).

2) 새로운 청소년정책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기반하여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으로 활용하여 왔다(여성가족부, 2018, p.7).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4대 정책목표로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기본계획’)」을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절에서는 특히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는 그림 II-1과 같으며 정책 과제별 세부사항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관 부처 해당 부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정책과⁵⁾이며 특히

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림의 '과제 검토 부서'에 '청소년자립지원과'로 표기된 과제명을 위주로 기본계획의 세부내용과 방향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p.13.

그림 II-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정책목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의 ‘1-2-④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과제에서는 ①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위해 (ㄱ)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정신건강 검사 방식을 내실화 하고(교육부), (ㄴ) 청소년·청년 등 자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DB를 구축 하며(보건복지부), (ㄷ)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체계 강화(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위해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교육부(Wee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보건복지부)’에서는 (ㄱ)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㉔)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㉕) 국립정신병원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 강화, (㉖) 치료 후 학교복귀 전 단계에 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③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에서는 (㉗) 교육청,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통한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발굴·연계(교육부, 여성가족부), (㉘) ADHD, 우울, 불안, 품행장애 등 정서·행동문제 유형별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㉙) 지방 청소년의 치유 접근성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치료재활센터 운영을 들고 있다. ④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여성가족부)'를 위해 (㉚) '청소년 지도자(상담사·지도사) 양성교육시 자살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양성, (㉛) 청소년 발달단계(초기, 중기, 후기)에 따른 대상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p.26-28).

'정책목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의 '1-2-⑤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호' 과제에서는 ①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에서 (㉝) 영유아, 학교(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체제로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하고 ②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위해서는 (㉞)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부모·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여성가족부), (㉟)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교육부), (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며(여성가족부) (㊲) 과도한 다이어트,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인식을 개선(여성가족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위해서는 (㉚)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침을 보급하고,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요성을 홍보 강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ㄴ) 수련 시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부분을 포함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ㄷ)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에 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 (ㄹ)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및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먹거리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식품의약품안전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28).

‘정책목표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의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중 ‘2-3-④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과제에서는 ①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을 위해 (ㄱ)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제공 및 참여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ㄴ)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 찾기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ㄷ) 취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력 단절여성 취업을 확대 추진하며, (ㄹ)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고용노동부)’를 위해서는 (ㄱ) 청소년(청년)구직촉진수당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 블라인드 채용 등 청소년(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소년(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 내실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p.48-49).

‘정책목표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의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중 ‘2-3-⑤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과제에서는 ①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위해 (ㄱ)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교육부), (ㄴ) 창업교육 수수료 후 부처간 연계를 통해 단계별 창업 지원(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세부 내용으로 ②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해서는 (㉠)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창업 노하우가 공유·축적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중소벤처기업부)을 ③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을 위해서는 (㉠) 대학 및 연구소의 스타트업, 벤처투자 환경 개선(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및 현지 진출 활성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중소벤처기업부)을 내용으로 들고 있다. ④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을 위해서는 (㉠) 학교협동조합 활동 지원 방안 모색(교육부), (㉡)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활동 장려(여성가족부, 지자체), (㉢) 청소년시설 내 카페 등을 청년 사회적 경제활동 거점화하고 사회진입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여성가족부, 지자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p.49-50).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목표로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중 특히 앞에 두 개 영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중 ‘3-1-Ⅱ.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과제에서는 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용, 위기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여성가족부)’하기 위해 (㉠)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대로 대응력을 강화하고, (㉡) 위기유형에 따라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 위기유형에 따라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위기 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여성가족부)’에서는 (㉠)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서 통용되는 표준화된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개발, 보급 추진으로 위기진단 환경을 혁신하고, (㉡) 고품질의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서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㉔)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p.54-55).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영역의 '3-1-㉒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과제에서는 ① '사회 안전망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사이버) 활성화(여성가족부)'를 위해 (㉑) 청소년전화 1388, 문자, 사이버 상담, 성매매피해상담 등 24시간 연계 가동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다양한 채널 운영을 위한 조기 개입, (㉒) 학교전담 경찰관 활용,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경찰청), (㉓)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거리상담(outreach)' 집중 실시로 거리 청소년 계도 강화 및 가출청소년 적극 발견, (㉔) 랜덤채팅앱과 검색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채팅상담, 쉼터 연계 등 온라인 상의 위기개입 및 긴급구호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교육부, 여성가족부)'과 관련해서는 (㉑)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상담 서비스 제공(여성가족부), (㉒)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역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용자 특성 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제고(여성가족부), (㉓)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운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상담 지원 강화(교육부), (㉔)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하여 고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에 찾아가는 정서·심리상담 지원(여성가족부), (㉕) 위기 피·가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여성가족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과 관련해서는 (㉑) 청소년(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국토교통부), (㉒)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추진(국토교통부), (㉓)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추진(국토교통부), (㉔) 대학생 주거부담완화를 위한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추진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④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여성가족부)’를 위해서는 (㉑) 지역별 CYS-Net 활용,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강구(무업(NEET)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 (㉒)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 맞는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코칭 강화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pp.55-56).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영역의 ‘3-1-③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과제에서는 ①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관련하여 (㉑)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내실화(교육부, 여성가족부), (㉒)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운영 확대(교육부), (㉓) 폭력 가해청소년 교육 등 위기·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를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②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을 위해 (㉑) 아동청소년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교육부, 경찰청), (㉒) 아동·청소년 납치 감시 강화 및 사건·사고 예방기능을 위한 CCTV 구축 지원(행정안전부)를 ③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보건복지부)’과 관련해서는 (㉑)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㉒)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㉓) 지역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의 연계 지원, 전문적 상담 제공(여성가족부), ④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보건복지부, 경찰청)’를 위해서는 (㉑)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조기발견 지침 정착, (㉒)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 인식교육 등 홍보 강화(보건복지부), (㉓) 실종아동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홍보 강화(경찰청)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57).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영역의 ‘3-2-②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①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 전환(여성가족부)을 위한 방안으로 (㉠) '가출청소년'을 '가정밖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가정밖' 상황에 맞춘 지원·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②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여성가족부)'를 위해 (㉠) 보호청소년 맞춤형 생활지원(의·식·주),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구, 지역 균형 및 사업수요 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를 확대하며 (㉢) 거리상당 현장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24시간 원활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 쉼터 운영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길거리徘徊 및 성매매 유입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③ '주거 취약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하기 위해서는 (㉠)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후에도 갈 곳 없는 취약 청소년(19~24세)에게 '청소년 자립관'을 통한 주거우선을 지원하고, (㉡)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여성가족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pp.61-62).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영역의 '3-2-③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과제에서는 ①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를 위해 (㉠) 비행·일탈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선도 실시를 활성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근거)하되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선도기간 및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 체계와 연계하여 전문 선도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경찰 단계 범죄·비행 청소년 조기 선도를 강화하고(경찰청)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을 활용하여 검찰 기소유예자 등 범죄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법무부) (㉣)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법무부, 여성가족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위해서는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제1호, 제6호)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보호 및 사회복지비를 위한 자립을 지원하고, (ㄴ) 보호관찰(보호처분 2호~5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호를 강화하고(법무부, 여성가족부) (ㄷ) 소년원 입출원 청소년에 대해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비를 지원(법무부, 여성가족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pp.62-64).

정책목표 3.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영역의 '3-2-⑥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지원 마련' 과제에서는 ① 초·중등 학생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 지원을 확대(교육부)'하고 ②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며(교육부)'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특별지원을 강화(여성가족부)'하고 ④ 일정소득 이하 청소년들이 생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고용노동부)'하며 ⑤ '저소득층 취업 청소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기반을 지원(고용노동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pp.66-67).

'정책목표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영역 중 '4-1-②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과제와 관련해서는 ① '청소년 시설의 기능 강화(여성가족부)'를 위해 (ㄱ) 시·도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완전 통합 또는 일부 시설만을 부분통합하거나 개별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요자가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편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지정 운영(여성가족부)'하기 위해서는 (ㄱ)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㉔) 청소년활동 서비스와 상담복지 서비스의 통합 운영 우선 적용 등 혁신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 부처합동, 2018, pp.76-77).

'정책목표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영역 중 '4-1-㉓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① 일반국민·정책 고객에게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개편(여성가족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여성가족부)'를 위해 (㉑)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고, (㉒)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 지원을 협의하며 ③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여성가족부)'를 위해 (㉑)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함께 청소년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㉒) 청소년 친화적인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정책 접점을 강화하고, (㉓) 지역사회와 학교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접근식 홍보를 실시하고, (㉔) 신문·방송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청소년 활동·사업을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p.77).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영역 중 '4-3-㉑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과제와 관련하여 ①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여성가족부)'를 위해 (㉑) 수요조사를 통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㉒)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를 조성하며, (㉓) 청소년지도사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㉔)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여성가족부)'를 위해 (㉑)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㉒)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청소년단체 사업을 다양화하며 (㉓) 청소년단체 전문성 확보 및 일선 학교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㉔) 지역 내 협력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획득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시하였다. ③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개선(여성가족부)을 위해서 (ㄱ) 청소년지도사에 요구되는 전문 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시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ㄴ) 자격연수, 보수교육 과정에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교육을 반영하며 (ㄷ) 현장 실습을 연수과정에 추가하여 현장 이해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p.80).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영역 중 ‘4-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과제과 관련해서는 ①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여성가족부)’을 위해 (ㄱ) 임금 기준표 마련 검토 등 보수체계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ㄴ)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를 지표화하며 ②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ㄱ)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쉽과 치유’ 프로젝트, (ㄴ) 지역아동 센터협의회 등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③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을 확대(여성가족부)’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81).

3)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 CRC)’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에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p.99). 동 협약은 ‘어떤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표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18, p.99). 국가 보고서 심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노력 및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권고사항, 권고반영

구분	이행노력	권고사항	권고반영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에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준 시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 및 협약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 (199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협약 일부 조항 유보 유지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 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정할 상설중앙기구 미설치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 계획(2003~2007년)’ 등 아동 관련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활동 지원법」 제정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를 확대한 「아동 복지법」 개정(2004~2007년)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6~2014년) 등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를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2011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6년, 2008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노력 교과 과정 내 아동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구분	이행노력	권고사항	권고반영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개정(2004년) •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공군규정 개정(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 대상 협약 및 선택 의정서 인식 제고 및 교육 개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와 성범죄 행위로 부터 아동보호 수준을 제고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4년)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 경찰·판사·검사 등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모든 전문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지원 • 아동권리협약의 입양 허가제 유보조항 철폐 및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2011.8월) • 입양허가 절차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2012년2월) •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7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1월) 제·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개정 • '아동권리헌장' 제정 (2016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2013 청소년백서. pp. 99-101 재구성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주로 권리, 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 대부분 「청소년 기본법」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김윤나, 2012).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연합의 ‘아동기에는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하겠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표 II-3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1부의 내용을 전제하였으며 이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고민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조항을 표시하였다.

표 II-3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고려사항

조항	관련 내용 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고려사항
제6조	2. <u>아동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u>	청소년의 생존발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7조	2. <u>국적 없는 아동에게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u>	국적 없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제9조	2. <u>모든 이해당사자가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u>	복지지원과 관련한 사항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제12조	2. <u>아동에게 영향 미치는 사법·행정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 또는 또는 대리인, 적절한 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 갖도록 하는 내용(국내법 준수외 범위 이내)</u>	사법적 절차가 아닌 회복적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청소년이 자신의 희망,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였는지 여부
제14조	2. <u>아동 권리 행사에 있어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u>	청소년의 부모나 후견인의 청소년 자녀 지도, 지원 의무를 존중하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제18조	1. <u>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아동 양육, 발달의 일차적 책임자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u> 2. <u>국가가 부모와 법정후견인이 아동 양육 책임을 잘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 보호기관 및 시설, 서비스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u>	청소년에게 최상의 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포함 여부,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한 부모, 법정후견인에 대한 지원 제공 의무, 시설, 서비스 발전 지원 의무 명시 여부

조항	관련 내용 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고려사항
제19조	2. <u>아동 또는 아동 양육책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 수립의 필요성</u>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한 사회계획 수립 여부
제20조	1. <u>가정을 박탈당했거나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 원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u> 2. <u>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 확립에 관한 내용</u>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포함내용 수준 다양한 대안적 보호방안의 확립 및 명시 여부
제22조	1. <u>국제법이나 국내법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적절하고 인도적인 보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u>	국제법 상 난민으로 규정된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권리보장 조치 여부
제23조	1. <u>장애아동이 인격존중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보장 되는 사회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u>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장받는 조항 포함 여부
제24조	1. <u>아동 최상 건강수준 유지 권리 및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권리</u> 2. <u>당사국이 아래 사항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u> 가. <u>영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를 위한 노력</u> 나. <u>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u> 마. <u>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받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u> 바. <u>예방 중심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 및 서비스 발전</u>	청소년의 최상의 건강수준 유지 권리와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포함 여부, 관련하여 청소년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예방중심 교육과 서비스에 관한 노력 포함 여부
제25조	<u>국가는 아동이 치료 목적으로 양육 지정된 경우 아동이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u>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는 청소년에 관한 권리보장 여부
제27조	1. <u>모든 아동이 발달 수준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내용</u> 2. <u>부모 또는 보호자가 능력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을 위한 생활여건을 조성 일차적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u>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 보장 노력,

조항	관련 내용 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고려사항
제27조	3. 국가가 재정 범위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위임의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필요시 지원 제공 의무	물질적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노력
제28조	1.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로써 나.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이 발전해야 하며 모든 아동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 다.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개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라. 모든 아동이 교육, 직업에 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된 정보, 지침 활용가능성 제공 노력 포함 여부
제32조	1. 국가가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가. 최저 고용연령에 규정 고려 필요 나. 고용시간과 고용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절해야 한다는 내용 다.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적절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금지 및 착취에 대한 처벌 포함 여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권리의 포함 여부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40조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이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3) 법률적 지원 및 공정한 심리를 통한 지체 없는 판결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불리하지 않은범위에서의 아동의 연령, 상황 등 고려 (7)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사생활 존중 의무 4. 아동복지측면에서 적절한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	사법절차에서 청소년의 사생활 존중 관련 사항 포함 여부, 회복적 지원에 있어 아동의 나이,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 고려 사항 포함 여부 청소년복지에 반하는 상황 또는 위법상황이 있을 시 처벌조항 등의 포함 여부

* 출처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를 재구성

○ — III.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체계

- 1. 법체계
-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 3.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관계⁶⁾

1. 법체계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되 국가주권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부터 각종 현안을 이루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사회체계를 구성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법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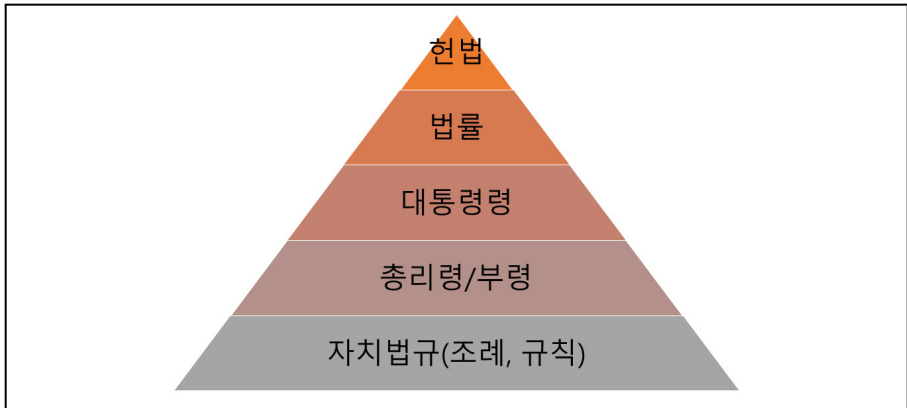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규범을 명문화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이나 기능방식 및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성문이나 불문의 형태로 된 근본법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명명하고 있다(<http://lexikon.meyers.de/meyers/Verfassung>; 김성준, 2009, p.179 재인용).

그럼에도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룸은 물론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전체적 방향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방안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후속 조치를 담게 된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며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법률의 범위에서 규율되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본칙 : 총칙, 해당 법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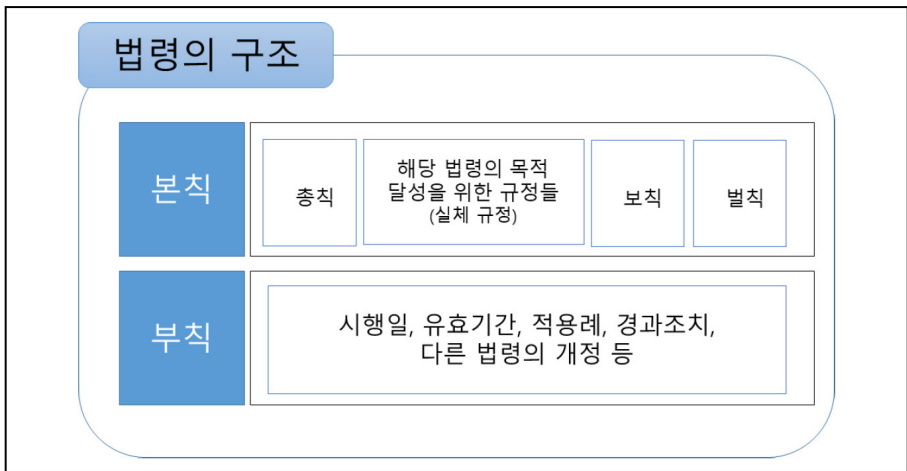
6) Ⅲ장 집필자 : 권일남 교수,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실체 규정), 보칙, 벌칙, (ㄴ) 부칙 : 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 2019, p.6).
 그림 III-1은 법령 상호간의 체계, 그림 III-2는 법령의 구조를 나타낸다.



* 출처 : 법제처, 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보건·복지분야). p.6.

그림 III-1 법령 상호간의 체계



* 출처 : 법제처, 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보건·복지분야). p.6.

그림 III-2 법령의 구조

법령⁷⁾의 입안⁸⁾방식은 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폐지로 나뉘며 (ㄱ)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개정하려는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령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들도 검토하여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칙들은 다시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해 주어야 한다. (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는 규율하려는 입법사항이 기존 법률 개정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며 (ㄷ) 법률을 폐지하는 경우는 법령의 효용이 다해 폐지하는 경우(폐지 법률안) 또는 다른 법률과 통합되면서 폐지하는 경우(부칙에서 폐지)이다(법제처, 2019, pp.9-11).

총칙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목적 규정, (ㄴ) 정의 규정, (ㄷ) 해석 규정, (ㄹ)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ㅁ)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ㅂ)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법제처, 2019, p.14). 실제규정에 규정되는 내용들은 (ㄱ)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신고, 지정, 인허가 의제, (ㄴ) 결격사유, (ㄷ) 과징금, 부담금, 연체금과 가산금, (ㄹ) 보조·출자·출연, 재정·회계제도, 기금, (ㅁ) 자격부여, 외국인의 지위, (ㅂ) 위원회, 특수법인, (ㅅ) 행정쟁송이다(법제처, 2019, p.19). 보칙규정은 법령의 총칙과 실제규정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수수료, (ㄴ)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의무, (ㄷ) 청문, (ㄹ) 권한의 위임·위탁, (ㅁ) 직무대리, 행정업무의 대행, (ㅂ)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ㅅ)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이다(법제처, 2019, p.28). 벌칙규정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형벌, (ㄴ) 과태료이다(법제처, 2019, p.31). 부칙규정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7) 법령의 이름은 앞서 연결되는 표현이 '명사'인 경우 「00법」으로 '∼에 관한'인 경우 「00에 관한 법률」로 표기한다(법제처, 2019, p.12).

8)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 기준은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17)에 나타나 있다.

과도한 조치,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다(법제처, 2019, p.32). 법령 입안에 관련한 헌법 원칙으로는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 (㉤) 최소보장의 원칙이 있으며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는 (㉥) 명확성의 원칙,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 법률(의회) 유보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조세법률주의가 있다(법제처, 2017; 법제처, 2019). 각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의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것’을 말한다(법제처, 2019, p.54).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⁹⁾

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http://www.law.go.kr/preclnfoP.do?mode=0&precSeq=153148>.

(ㄴ) 평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은 법을 적용할 때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법제처, 2017, p.28). '법 앞의 평등은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하는 법, 즉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제처, 2019, p.55).

(ㄷ)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의 법률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부하, 2018, p.130).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수익적 소급법률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적 소급법률에만 적용된다(법제처, 2019, p.57).

(ㄹ) 적법절차의 원칙 :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란 '입법 · 사법 · 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체포 · 구금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7, p.33).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형식적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법제처, 2019, p.59).'

(ㅁ) 최소보장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최대보장이 원칙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보장)가 아니라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보장을 의미하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 등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므로, 급부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 입법자에게 국민전체의 소득수준, 국가의 재정규모,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을 시행할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합리적으로 급부의 대상과 수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령을 입법해야 한다(법제처, 2017, pp.34-35).

(ㄴ) 명확성의 원칙 :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법제처, 2017, p.35). 이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위헌 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법제처, 2019, p.61) 형사법, 조세법 등 침익(侵益)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명확성'을 지향해야 한다(법제처, 2017,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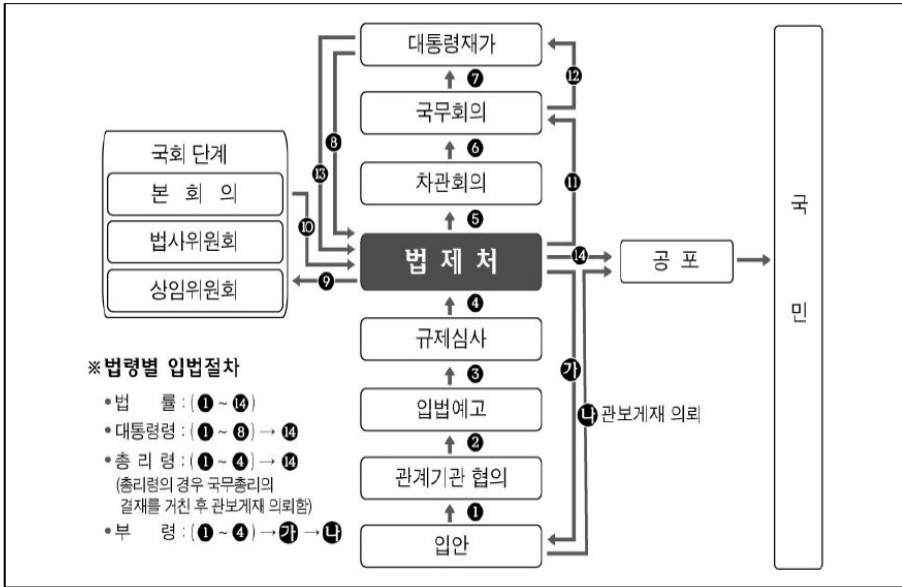
(ㄷ)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법제처, 2017, p.38).

(ㄹ) 법률 유보의 원칙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의회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법제처, 2019, p.66).

(㉞) 죄형법정주의 :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형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7,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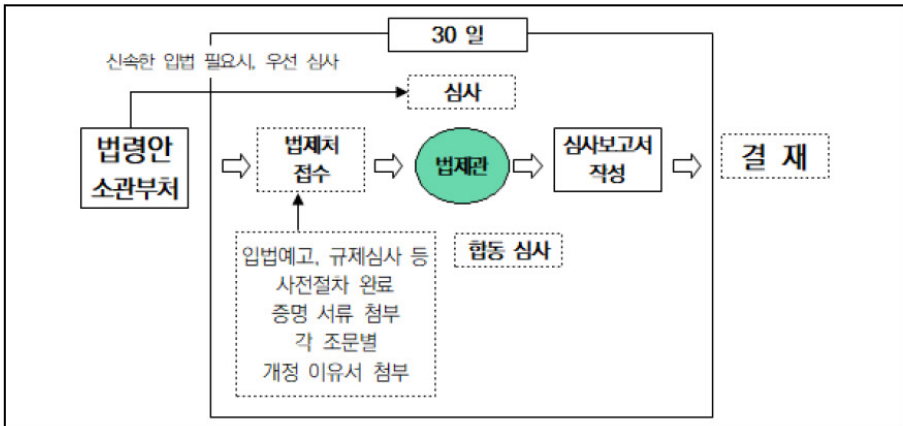
(㉟) 조세법률주의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헌법 제59조 참조)이다. 이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과세 요건과 세율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법제처, 2017, p.42).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52조)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정부제출 법률안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부른다(법제처, 2018). 법령 제·개정 절차와 법령 심사 절차는 그림 III-3, 그림 III-4와 같다(법제처, 2010; 법제처, 2019).



* 출처 : 법제처, 2010, 2011 법제업무편람. p.13; 법제처, 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 p.52.

그림 III-3 법령 제·개정 절차



* 출처 : 법제처, 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 p.53.

그림 III-4 법령 심사 절차

법령 심사는 ‘(㉠) 입법 필요성 :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령의 형식을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 내용타당성 : 헌법적 가치와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가?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충되지 않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표현적절성 : 표현이 정확하고 명확하여 해석상 혼동이 없는가? 외래어, 전문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였는가?’를 내용으로 한다(법제처, 2019, p.53).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1) 헌법과 기본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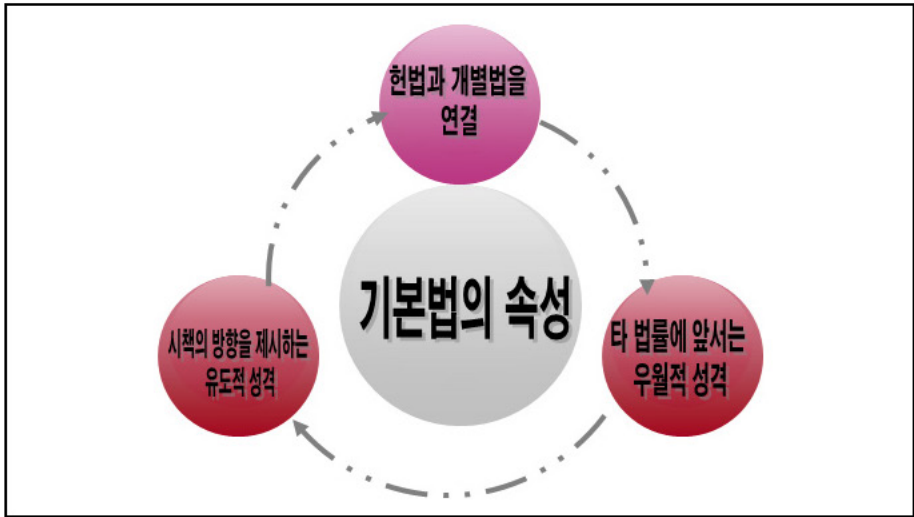
「헌법」을 필두로 제반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법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이중 법체계의 구성 중에서 특이한 점은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¹⁰⁾. 그래서 기본법의 의미나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기본법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려는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기본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방침·프로그램·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법률(박정훈, 2009, p.295)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의 특징을 보면 그림 III-5에서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헌법」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으며 「헌법」에 지향하는 바를 개별법이 충실히 이행

10) 통상적으로 기본법과 타 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위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감상으로 기본법은 국민 스스로가 타 법에 앞서며 가장 기초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을 위해 타법에 우선시하거나 토대를 이루는 법으로써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점과 관념적 특성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출처 : 박정훈, 2009, 자료 요약정리.

그림 Ⅲ-5 기본법의 속성

첫째, 「헌법」과 개별법을 연결하는 속성이 강한 기본법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를 근간으로 하되 「헌법」에서 해당 분야의 대상을 거명하는 영역에 대한 보호적 속성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대상의 보호나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한 조건 즉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정합성 등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헌법」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특성이 청소년이기에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피해를 당할 여지나 조건에 처해 있다면 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모든 대상을

인격체로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한 천부권과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압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갖춘 사람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요소가 침해당하지 않는 관점에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법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편적 의미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나 여건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내도록 하는 유도적 성격을 보여주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이나 법적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향성이 중요함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적 특성은 법률의 제정과 함께 조례 등과 같은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적어도 기본법이 단순히 의미추종의 정도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시적 의미가 강하다.

셋째, 기본법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부분으로서 기본법은 타 법에 우선시하여 추진되어질 수 있다는 우월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우월적 의미는 매우 강력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정한 의미에 앞서서 본 기본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강력하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법적 저항성을 줄이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도록 하는 배경이 되게 된다. 그럼으로써 법이 지향해야 하는 유도적 성향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지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법이 타 법에 우선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의 어느 부분에도 기본법이 타 법에 우선시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법에 우선시되는 상위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¹¹⁾. 다만 이러한 기본법의 의미를 통해서 개별법의 추진과정에서 본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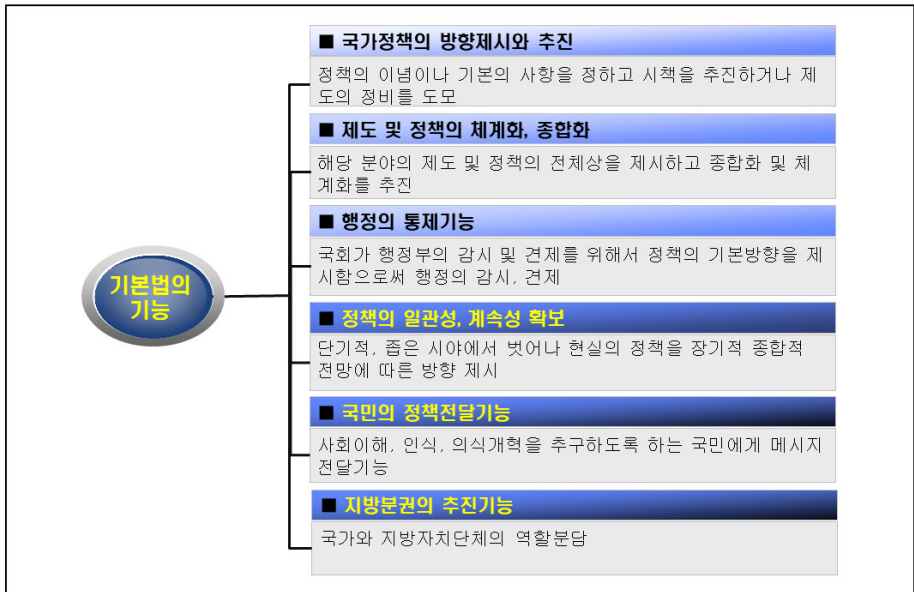
11) 기본법이 상위법적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본법이 상위법이라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갖게 된다. 그 이유는 기본법의 법령상에서 타 법에 비해서 특정 부분의 법은 타 법에 우선시하여 적용될 수

이행해야 할 과제나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우선시하여 추진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부분 기본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미흡하거나 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발행하였음에도 법적 지원이 부족하다면 가급적 이를 준용하여 당위성을 갖도록 여기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도(2006, p.19)는 기본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법률과 달리 기본이라는 의미를 앞에 붙임으로써 여타 법의 추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인식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법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반드시 수반해야 하나 아직 법적 기반이나 제도적 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각이 매우 강조되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의 기능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림 III-6과 같은 의미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도, 2006, p.24).

있다는 문구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법에 우선시하여 실행과 규제의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 출처 : 박영도, 2006, p.24. 수정보완함.

그림 Ⅲ-6 기본법의 주요 범주와 기능

기본법의 기능을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을 돌아보고 이를 보완해내는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본법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수반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적 영역에서 중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정책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제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 해결하고 지지해 나가도록 하는 동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헌법」에서의 주된 내용을 「청소년기본법」과 연계해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명료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헌법」은 모든 법의 근원이자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가치를 개별법에서 어떻게 살리고 추종하도록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이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의 개개인에게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기회균등의 출발점은 참여와 평등적 시각의 기회부여와 실제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참정권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정권과 평등권으로서의 「헌법」은 제1조 2항(주권은 국민에 있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인이라는 지위보장을 받고 있는바 청소년 역시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¹²⁾. 또한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의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청소년에게 부여해야 할 주체적 권리가 구체적이며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13조2항(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음)에서 말하는 참정권의 부여, 제 32조(근로의 권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일시적 근로를 하거나 근로현장에서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이기에 받는 차별이 나타나지

12)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있다고 해도 청소년에게는 미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제한을 매우 당연시 되는 사도가 강하다. 사실 청소년이기에 권한과 인격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점은 법과 제도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동안의 경험과 고정관념 속에서 제약을 해야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성인들의 역할처럼 고착화되어 왔다. 오히려 권한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가능성과 입지조건을 넓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함에도 광범위한 노력을 펼치는 대신 규제의 편리성을 더 쉽게 적용해 버리는 우를 자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기에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지위보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의 해석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감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은 모든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여기서 다소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모든 대상이 동일한 능력과 역량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다양한 차이에 대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더욱 나은 성취도를 얻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헌법」 제 31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능력의 다과를 인정 하되 적어도 교육에서만은 이러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다양성의 인정과정에서 자칫 수월성의 차별을 범하기 쉬운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는 사례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논의에서 경험하고 있다¹³⁾.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선가르기가 행행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 사고가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교권과 인권사이의 차별과 평가르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⁴⁾.

13) 최근 교육현안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자사고의 재평가와 재지정의 문제가 정치적 소용돌이로 내몰리면서 탈락을 위한 평가, 목표를 정하고 행하는 평가라는 갈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과 보편성은 지난 수세기동안 교육의 비판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중심적 논리로서 각기 입장에서는 타당한 논리를 탄탄하게 수렴해 왔다. 하지만 교육의 차별이라는 의식이 청소년이나 학생에게 적용될 때에는 매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월성을 포기하고 보편적 일관성을 선택할 것이냐, 개인의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수월성교육을 행할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보편성과 수월성의 고민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수월성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일반교를 황폐화한다는 논리보다는 잠자는 학생, 학습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학습욕구를 어떻게 올리고 이들의 관심사를 끌어 올리는 몫 역시 교사의 중요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4) 지난 몇 십 년 전부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온 여러 사유가 많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저항과 유지라는 긴장성이 심화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주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항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권을 포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대립의 수단이나 적대적 수단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가? 아마도 이는 교사가

부가적으로 최근에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간의 공간적 차별성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학교 내에 있는 학생 간에도 요구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실제로 부여해 주는가는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최상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¹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의 보장이라는 의미에 대한 규정이 잘 나타나야 한다. 「헌법」 제 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와 제 32조(근로의 권리),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통해서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신분의 제약,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오히려 권리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유린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매우 강한 현실에서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자기선언적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청소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 개선과 실제적인 기능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 11조(법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제 35조(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갈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청소년의 근본적인 인권의 의미보다는 사회 통념상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역할우선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교사는 교복이나 두발자율화의 의미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교사가 지켜온 성과중심적 가치가 이미 빛을 발휘하였고 또 동의를 충분히 얻어 온 바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는데 있어서 교사의 권위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이나 두발, 화장, 각종 청소년들의 요구가 청소년기에는 해서는 안 되고 교사의 또는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면에는 적어도 이것을 교사가 지향하는 교권의 마지막 보류이자 교사의 임무라 믿는 잘못된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교사는 학칙이 위반에 민감하고 또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자율화는 교사의 교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여기는 반발심의 극단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15) 칸트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틀을 제시하였고 이는 필요시 지키고 불필요 시 거부함이 아닌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언명령을 지키는 존재야 말로 인간의 특성, 차별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이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살아갈 공간은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가정 밖 생활, 쉼터, 놀이터, 생활환경, 학교환경 등 청소년이 가는 모든 공간은 바로 쾌적한 여건을 구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공간은 곧 유해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이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생활환경의 쾌적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이 기대이하의 쾌적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도 너무 많다. 또한 일시적으로 도피를 이룬 공간 역시 안락함과 편안함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문화예술적으로도 안락함과 위안을 얻어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청소년에게 행복 지수의 낮음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낮음이 모두 학교의 탓과 공부의 문제, 진로미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비록 이러한 요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학업과 공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문화예술, 체육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에너지원을 발현 시키도록 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국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 자체만으로 살아감이 아닌 세계와 함께하며 글로벌지향을 목표로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작금의 여러 유형의 글로벌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로의 확산적 지향성은 물론 다문화, 외국인의 대한민국 유입에 따른 수렴적 글로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반성장의 인재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헌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볼 때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실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 인간 개개인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세계평화를 주도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영역의 사회적 구성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 청소년이다. 또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권과 권리라는 영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은 「헌법」의 의미를 가장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청소년기본법」의 사회적 의미

「헌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데 정당하게 대우받고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나 자주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주체적 대상 이라기보다는 왠지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그러면서 인권과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념적 시각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내재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협성에 기인하고 있다.

자고로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60년대 이후 미성년자 보호라는 매우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폐기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 되었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인식의 고착화를 이룬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자 보호받아야 하며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논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시각에 대한 일부 반론을 제기하고자 언급된 청소년육성, 청소년지도 등과 같은 의미는 '9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에 대한 시각이 권리, 인권, 존중, 보호, 자립 등과 같은 이전의 사회적 격리차원의 관점과 다른 색다른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무엇보다 증시된 「청소년기본법」¹⁶⁾의 의미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등 자율권에 대한 특이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법과의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당시의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특히 학생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여러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으면서 권리와 참여 등의 청소년중심 사고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를 얻었던 점에 유념해 볼 여지는 있다.

이는 아마도 1980년 초 불어왔던 학생의 교복자율화라는 분위기가 일제잔재의 개선이라는 점과 엮이면서 당시의 학생들이 요구했던 학교에서의 억압적 분위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거대 사회적 압력에 묻혀 결국 청소년과 기성세대, 청소년과 청소년 간, 학부모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상당한 갈등으로 증폭된 문제에서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복 및 두발자율화를 부르짖었고 교복 자율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1991년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상징하는 교복을 준용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16)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최초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적 삶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게 된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매우 특이한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초기의 「청소년기본법」은 명실상부한 기본법의 의미라기보다는 실행을 위한 행정적 의미가 강한 성격을 지닌 특징이 있고 기본법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져 2004년 개정되기에 이른다.

한편 두발자율화 등은 교복자율화보다 더욱 강한 반발과 함께 교사나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학생의 인권이 증시되는 만큼 교사의 인권에 대한 대항적 의미로 주장되면서 오히려 기득권의 포기과 유지라는 상당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한 부분이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갈등구조에는 여전히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수행중심에 청소년을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한 성장의 목표는 청소년이 학업이수를 통한 재능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 자신이 기여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성공리에 완수했다고 자임하여 유능한 교사로 인정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¹⁷⁾.

결과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로의 권리에 대한 대항적 가치가 증시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청소년 또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의미에 더하여서 개인의 권리를 다소 억압해도 된다는 일방주의적 사고가 강한 현실적 의미의 탈출로를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인권의식도 향상되면서 2010년 10월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었고 이후 2012년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수렴과 지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권리와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의 흐름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오래된 역사적 흐름은 1924년 제네바선언으로 거슬러 올라

17) 2019년 2월 말에 교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주된 이유가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고 있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19.3.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297_00797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학생인권만을 중시한 결과 교권은 하락할 대로 하락하여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 점을 들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교사는 권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 권위가 없는 교사는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보아 여전히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교권침해건수가 급증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우리의 사회적 현실은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993년도에 세계청소년의 해가 제정되고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강조되면서 점차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정책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시된 점은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증진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청소년을 점차 모든 사회적 주체로 여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UN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했는데 국제인권규약은 <표 III-1>에서와 같이 양대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나누어져 있다(오병선, 김비환, 2011).

표 III-1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목록 분류

주분류	하위 분류	내용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체 보존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 보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예제도 및 매매금지, 법적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보호 및 국적 변동에 대한 권리 등	제1~6조, 15조
	법집행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절차와 법심리에 대한 권리로서 법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지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법률소급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제7~11조
	시민적 자유권	삶의 특정 부문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	제18~20조
	정치적 권리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국가업무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여러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	제19~21조

주분류	하위 분류	내용	세계인권 선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최소 필요 충족권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제25조
	경제적 권리	본원적 생명활동의 하나인 노동행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노동조건 및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	제22~24조
	사회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대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전의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동등한 대우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제2, 12, 16, 26조
	문화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	제27조

* 출처 : 세계인권선언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사실 세계인권선언의 논의는 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충격에서 역설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극단을 통한 서로의 대결이 무한 반복되었을 때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인간존엄성의 피폐성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삼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역사성을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보고 각 분야에서 약자로 규정되어버린 대상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약자를 위한 긍정적 지지와 지원을 위한 획기적 변화의 기점을 만들 수 있는 논리적 대응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창기의 「청소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등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함께 논의하였던, 말 그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추종하여 대안을 만들고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아마도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가치 지향성을 수반하려는 노력에서 비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을 고조하려 했음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에서도 미래의 청소년이라는 화두가 점차 오늘 그리고 지금의 삶을 운택하고 즐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정책변화를 지지하려는 「청소년기본법」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2010년부터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 시되면서 자립이나 주체적 생활을 하도록 하는 부문에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은 곧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열린 능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들의 지원이 확산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그림 III-7과 같은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¹⁸⁾.

18)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계는 스스로 자기논리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지지의 전문성 추구보다는 용어의 해석이 적절하다는 착각이 더 크다는 문제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의 행위적 시도와 적극성보다는 청소년지도가 주는 어감의 문제, 수련과 육성의 의미가 비인권적이고 지극히 성인중심적 관점이라는 의미분석에 열을 올리게 된다. 그래서 육성을 활동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법체계의 의미혼란을 더 크게 부각시키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청소년을 위해 그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실천적 행위는 그다지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관점에서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의 과정에서도 미래의 청소년과 오늘의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불합리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불편한 논리에 깊이 빠져 있었다. 과연 미래의 청소년이라는 정책목표는 오늘 그리고 지금 청소년정책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했는지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던 논의결과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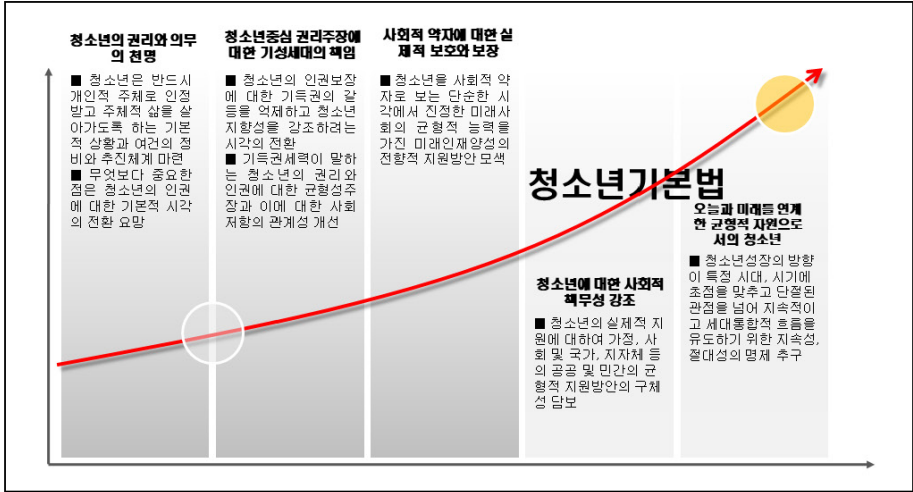


그림 III-7 「청소년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의의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핵심적 의미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미 그리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참여의 적극성을 조장하고자 함에 있다. 사실 청소년의 참여나 권리의 표방은 매우 일상화된 논의였고 통상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청소년정책, 청소년중심의 지원에 대한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정책은 여타 정책에서 매우 낮은 우선순위로 존재감을 잃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떠 오를 때 잠깐씩 언급되는 정책관심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참여와 권리의 주도적 가치를 보장하는 관건은 바로 선거권의 보장, 참정권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와 권리보장의 이양이라는 점은 얼마나 요원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참여보장을 위한 기성세대의 중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의 참여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이루게 하는 기성세대의 나눔과 협력적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세대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전지적 존재로서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대상들이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매우 손쉽게 다루거나 의도한 목적대로 악용하였던 사례가 너무도 많다. 결국 청소년들을 자신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을 나누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 개인이 가진 권력을 약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번 자신의 권력을 경험한 이들이 타인에게 주었을 때 돌아오는 박탈감이 크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력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권력나눔과 배려의 동반자적 관계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에서는 성인이라는 존재가 민·관·공을 막론하고 중요한 권력행사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권력의 균형성을 나누고 함께하려는 시도가 중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¹⁹⁾.

셋째, 「청소년기본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함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심리적 박탈감이 너무도 큼을 증명하려했던 중요한 기제였음을 알게 된다. 사실 청소년들은 학생이어야 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의 유예, 생활의 척박성, 삶의 제약 등은 너무도 많으면서도 당연시되는 등 문제의 일반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주체성이라는 말은 언어적 수식에 불과하였고 주체적 사고나 행동을 표방하는 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의 이단아, 사회적으로는 문제아,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닌 지진아 등과 같은 극단적 용어로

19) 아마도 기성세대가 갖는 권력의 함축성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해야 했던 사례는 미성년자나 아동의 삶에 너무도 큰 해악으로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 아동의 노동착취, 미성년자 성매매 등과 같은 유해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탈피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성인의 청소년 악용이 아닌 긍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포장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이들의 내면적 문제를 들여다보거나 생각의 범주로 이끌어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금기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힘든 생활의 여정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소극적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지금까지의 사회적 인식부재가 갖는 점을 개선하려는 구체적 행위는 가정, 사회,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구체적 대응을 주문하려 했던 부분을 들 수 있다.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일부의 청소년지원(대부분 청소년보호나 격리적 관점의 문제인식이었지만)을 넘어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구체성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성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청소년기본법」이전에는 사실상 청소년을 입법의 대상으로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자원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여러 법적 관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사회적 격리나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나들지 못해야 하며 이들 공간에서 주어진 방향에 따라 체계적 성과를 얻는 것이 성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관점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 한계와 탈피 등을 조망하게 되는 자구적 노력 등이 겹쳐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변화가 수반되었다. 결국 지난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적 흐름에서 「청소년기본법」도 수용된 발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기본법」이 추구하는 맥락적 흐름은 점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고양시키고 스스로 주체적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방향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는 어떠한 규제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성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스스로도 학습효과로 인한 주체적 삶의 지향이 어렵다는 시각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는 문제점은 상쇄되지 못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계에서 청소년의 규제일변도의 가치를 바꾸어낸 점은 「청소년기본법」이 가진 상당한 사회변혁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청소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관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시에 해당 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시행착오는 진정한 청소년의 지원과 지도의 방향성에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의 자성의 판단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즉 청소년이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대전제는 동의하면서 함축적인 의미로 미래의 청소년육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청소년기본법」의 내재된 의미로 제시하였다.

실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격차가 너무 커 투자가 유보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현재적 삶을 조망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지금의 삶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종국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러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권리를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청소년에게는 근본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우려가 큰 대상들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미 수 십 년 동안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성, 학교를 벗어난 이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문제,

성적 혼란에 신음하는 이들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한성, 쉽고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간적 배려 등은 청소년들의 삶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이를 개선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통과 고민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적 의미가 수용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컸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제기된 「청소년기본법」은 아마도 이러한 청소년의 제기된 문제를 일소에 제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주변인의 생성과 지원, 또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참여와 권리의 필요성 등을 깨닫게 해 주는 말 그대로 청소년중심, 청소년의 변화수반 등을 목표로 하는 핵심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기본법」이 「헌법」의 의미를 준용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본다면 청소년을 위한 이념적 접근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는 인간존중과 참여, 자유, 행복한 삶 등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과의 관계 분야에서는 해당법률의 태생적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법의 제정은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의 일부 중 청소년활동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부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는 곧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복지라는 본원적 측면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파생 법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상중심인 청소년에 대한 법률 구성체계가 갖는 기본적 한계점으로 기능적으로 구분된 타법률에서 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청소년관련법들이 제정되고 그 내용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소년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을 주로 다루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주로 다룬다.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는 타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독립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 탄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헌법과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도록 한 다음에는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 하위법률에 대해 이념과 개념, 핵심내용을 정하고 이를 위임하는 형태를 가져야한다. 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법률상에 포함하고, 해당 역할과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에 규정한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설치되어야한다.

둘째는 하위법률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해야한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활동의 범위, 청소년활동시설분야, 청소년활동지도자분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분야,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청소년활동 검증체계, 청소년활동전달 체계, 청소년활동 안전체계 등으로 구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청소년에 대한 복지 범위, 청소년 우선분야, 청소년 생존권분야, 청소년복지 대상별 지원 분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긴급지원체계, 청소년보호지원체계 등으로 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이란 인간으로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 임무를 부여받아 해당 내용을 정한 것이 「청소년기본법」이라고 본다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위임받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해야 한다.

○ ————— IV. 청소년관계법 정비현황 분석

- 1. 「청소년기본법」 현황분석
- 2. 「청소년활동진흥법」
현황분석
- 3.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황분석

1. 「청소년기본법」 현황분석

1) 「청소년기본법」 개정발의사항

하나의 법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온전한 법체계를 구현해가기가 어려운 점은 항상 사회변화나 변동의 폭이 커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는 최적의 법적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화하고 이전과 다른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법의 실제 수용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를 법의 내용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정비를 위해 제시된 각종 실제적 과정이나 입법내용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적절히 파악해 낼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입법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느 곳이나에 따라서 그리고 입법의 내용이 가결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개정과정이 많다고 하는 것이 법이 올바르거나 미흡하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체계의 3법체제로 나누어진 이후 2019년 7월 기준 총 57건의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고 일부는 개정되어 입법화되기도

20) IV장 집필자 : 「청소년기본법」 권일남 교수, 「청소년활동진흥법」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하였으나 상당수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또는 철회되는 등 입법화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화과정을 거쳐 「청소년기본법」이 구체화되고 동시에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의미를 통한 참여적 의미를 잘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법률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취지와 적합하지 않는 내용도 상당수 존재한다.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이후 입법화과정을 거치면서 상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2004년 이후 「청소년기본법」 입법화내용(57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 상태
202144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의원	2019-07-11			회부
202034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2019-05-10			소관위 접수
201883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19-02-26			소관위 접수
201876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	2019-02-22			소관위 접수
20157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의원	2018-09-27	2018-11-29	수정가결	공포
201457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	2018-07-26			소관위 접수
20141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의원	2018-06-29			소관위 접수
20112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8-01-03	2018-03-30	원안가결	공포
200953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	2017-09-21			소관위 접수
20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의원	2017-08-23			소관위 접수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 상태
200848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의원	2017-08-11			소관위 접수
200618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의원	2017-03-15	2017-11-24	수정가결	공포
20007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0인)	의원	2016-07-06			소관위 접수
20003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의원	2016-06-17	2016-12-01	수정가결	공포
19185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6-02-02	2016-02-04	원안가결	
19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	2015-10-19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19153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0인)	의원	2015-05-28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19150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	2015-05-08	2016-02-04	대안반영 폐기	
19150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5-05-06	2015-05-29	원안가결	
191493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1인)	의원	2015-04-29	2016-02-04	대안반영 폐기	
191469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은의원 등 12인)	의원	2015-04-13	2016-02-04	대안반영 폐기	
191441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3인)	의원	2015-03-24	2015-05-29	대안반영 폐기	
191403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3인)	의원	2015-02-24	2015-05-29	대안반영 폐기	
19134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의원	2014-12-31	2015-05-29	대안반영 폐기	
191146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4-08-25	2015-01-12	수정가결	
190952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4-02-27	2014-02-28	원안가결	
190879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3-12-26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 상태
190766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3-11-08	2014-03-26	폐기	
190696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의원	2013-09-25	2014-02-28	대안반영 폐기	
190663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09-02	2014-02-28	대안반영 폐기	
190422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3인)	의원	2013-03-22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19033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의원	2013-01-14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19028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의원	2012-11-27	2016-05-29	임기만료 폐기	
190277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2-11-23	2013-04-30	수정가결	
181445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1-12-30	2011-12-30	원안가결	
181320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의원등 10인)	의원	2011-09-14	2011-12-30	대안반영 폐기	
181180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의원	2011-05-17	2012-01-06	폐기	
181168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1-04-29	2011-04-29	원안가결	
181117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의원	2011-03-15	2011-06-03	폐기	
181093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2인)	의원	2011-02-25	2011-06-03	폐기	
181029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4인)	의원	2010-12-10	2011-06-03	폐기	
181023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3인)	의원	2010-12-09	2011-12-30	대안반영 폐기	
18102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0인)	의원	2010-12-08	2011-04-29	대안반영 폐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 상태
181016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3인)	의원	2010-12-07	2011-06-03	폐기	
181013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2인)	의원	2010-12-03	2011-12-30	대안반영 폐기	
180829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위원장	2010-04-28	2010-04-28	원안가결	
180809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0인)	의원	2010-04-06	2010-04-28	대안반영 폐기	
1803036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12-12	2011-06-03	폐기	
180269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의원등 18인)	의원	2008-11-28	2010-04-28	대안반영 폐기	
180140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의원	2008-10-08	2008-11-28	철회	
180035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의원	2008-07-21	2011-04-29	대안반영 폐기	
180009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9인)	의원	2008-06-27	2011-06-03	폐기	
17750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7-09-28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17258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근식의원등 21인)	의원	2005-09-07	2005-12-08	수정가결	
17240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근식의원등 21인)	의원	2005-08-16	2005-09-07	철회	
17170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5인)	의원	2005-04-26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17134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5-02-04	2005-03-02	수정가결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 7. 11 인출

2)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2004년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구분되어 명실 공히 기본법적 우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청소년기본법」적 의미발현을 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법체계의 보완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협력요인이 많아지면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된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그림 IV-1에서와 같이 의원발의내용을 정리해 보면 10가지의 영역으로 대략적인 범주화를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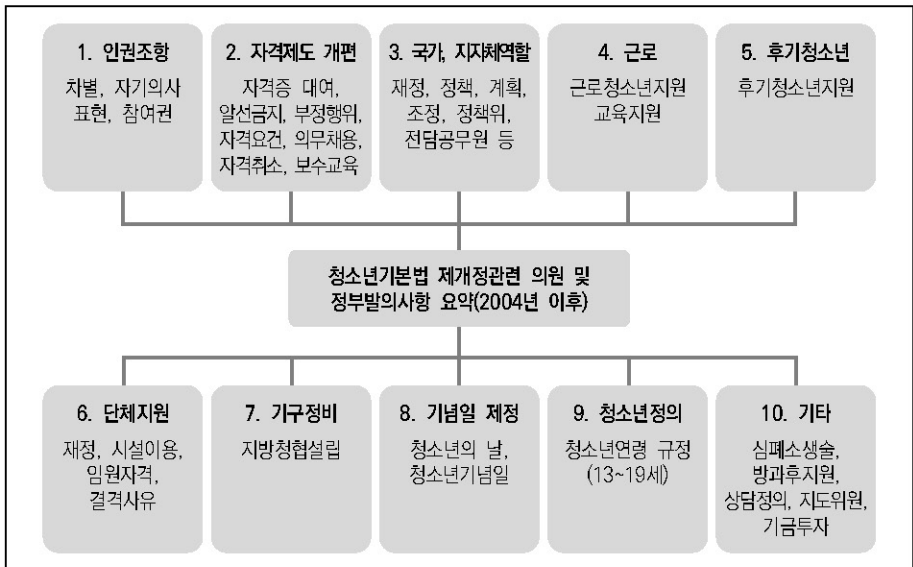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기본법」 개정발의내용의 범주 요약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정에서 어떤 내용은 해당 법체계의 의미와 잘 결부되어서 실제로 타당한 점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실행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도 적지 않아서 기본법의 취지나 의미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다소 연출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관련 의원입법의 경우 상당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의 설립취지나 기본이념을 토대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즉 청소년지도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정,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개선, 청소년정책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필요성,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와 교육지원, 후기청소년의 지원방안 제시 등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요소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 설립 취지와 매우 적절한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적용보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내용에 더욱 타당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의 설립취지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당 법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경향만을 제시하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실행법에 제시될 내용을 기본법상에 포괄적으로 제시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반면 청소년의 기본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청소년 이기에 사회적 약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대우를 인정받고 동시에 모든 대상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도 다수 보인다.

3)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구성

청소년기본법은 총 10개의 장 66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3장 삭제, 제4장

청소년시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6장 청소년단체,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이며 각 장의 법률조항은 <표Ⅳ-2>와 같다(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

표 Ⅳ-2 「청소년기본법」의 구성

장	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 가정의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6조 청소년의 달
제3장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삭제 제16조의4 삭제 제16조의5 삭제 제16조의6 삭제 제16조의7 삭제 제16조의8 삭제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장	조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 수익사업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삭제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제42조의5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6조의2 삭제	

장	조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삭제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제57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제60조 포상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 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부칙	

* 출처 :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을 재구성

4)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방향성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관점은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적절한 이념추구가 「헌법」과 기타 우리 사회적 통념에 적절한지 그리고 해당 규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면서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은 제정 초기에는 지금의 청소년에 대한 분명한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기보다는 당시의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시대적 여건에서 갖추었던 제반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보완이라는 점이 더 타당성 있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상호 대립적 관점보다는 여가와 문화향유라는 시급히 필요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출발하였으므로 제정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당시와 그 주 대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었다.

지금도 당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청소년은 곧 학생이었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적 범주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야 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곧 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을 제공해 주자는 차원이 매우 강조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청소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인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적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 전제를 실현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라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맥락으로 진전되게 된다.

이전의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의 의미를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청소년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해 내기 위한 제반 조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주변 인적 요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였던바 실제로 실행법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본질적 의미의 기본법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실행법이든 아님 기본법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든 간에 말 그대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의 보안을 위한 차원의 출발을 강조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에는 과거의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강조한 요소가 바탕이 되어 있기에 「청소년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기준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온전한 역할을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년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대 원칙과 전제의 출발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지향점으로서 청소년인권

「청소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철학에서 출발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발로로 청소년들의 삶이 자기주도적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림 IV-2에서와 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수용해 나가는 출발점인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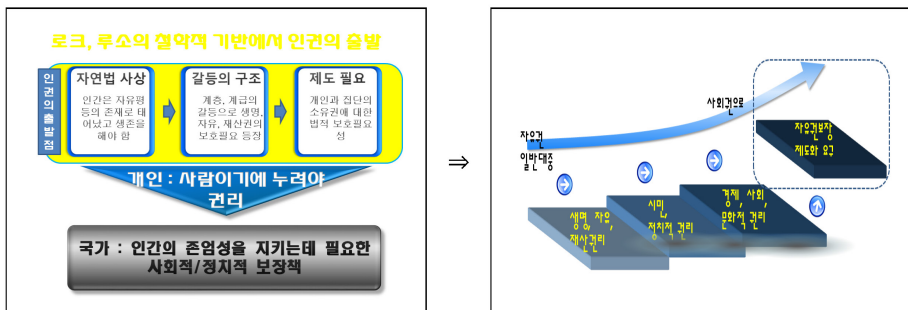


그림 IV-2 인권의 출발점인식

오늘의 인권보장에 대한 개념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인간의 권리나 시민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였거나 대부분 왕권에 따른 인간의 존재는 계급적 구조 속에서 제한된 권리를 최소한으로 누리던 존재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자연법적 사상을 실정법에서 보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절대왕정에 대한 불만의식은 시민의식의 배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개인, 생명, 자유, 재산 등 자신의 권리와 함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발생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인권과 법의 상호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IV-2에서와 같이 인권이 개인적인 측면의 자유권에서 점차 사회적 관점으로 발전되는 이유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극대화되었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기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이전에 천부적으로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초실정법적인 효력을 갖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천부적 권리를 누구나 타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면서 생존권적 자유권은 점차 제약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를 조정하는 어떠한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기본법체계속에서 담보해내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법은 통상 개괄적인 법률사항에 속하거나 법 형식으로서의 체계성을 버리고 정책의 표현으로서의 체계성에 비중을 두어 구성되므로 정부에 고유의 행정입법

사항도 기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기본법은 국민적 합의를 의제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으로서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법의 기능에 대한 일반론적 이해를 보면 ①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 ②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 ③ 행정의 통제기능, ④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⑤ 국민에 대한 전달기능, 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 등 크게 6가지로 구성된 부분과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결부시켜 구성하고 적절한 의미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N-3 기본법의 의미와 「청소년기본법」의 방향성 관계

그럼 IV-3에서와 같은 의미를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의미를 보면 6가지 관점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대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의 관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생존권에서부터 사회권에 이르기까지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목적이나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이를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적 의미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내는지를 분석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언급 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내어야 한다.

둘째,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의 관점이다.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라는 대 전제는 곧 사회적 약자이기에 제도와 정책적인 보호와 보장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본법」의 중심 내용과 주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권과 권리 및 참여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점검해 주어야 한다.

셋째, 행정의 통제기능에 대한 접근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국가 법률과 행정지원 체계 속에서 얼마나 균형적 자세와 지원을 이루고 있는지의 검토가 이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행정구성에 따라 독립적 행정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적 노력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혹여나 청소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이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적어도 지방자치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운영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성 등을 적절히 연합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차원이다. 하나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류에 따라서 추진되었다가 일정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꾸준히 정책지원을 이루어나가는 노력이 보장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의 점검을 해내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부처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협력과 통제적 기능을 수반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에 대한 전달기능의 추진이다. 「청소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만 정책홍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다는 점은 청소년을 둘러싼 집단적 환경에서 다수가 권력의 분점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청소년에게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자기성장의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부모, 교사, 지도자 또는 일반 시민에게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고의 전환, 인식의 개선, 지원의 배가 등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관점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지방분권의 추진기능이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곧 중요한 지원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의 필요성이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표가 되지 않는다는 단편적 시각으로 청소년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이 매우 취약하다. 곧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권리와 인권의 옹호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할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한 강제적 압력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방안

또한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관점에서 현재의 「청소년 기본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부족할 경우 보완해보는 작업이 전개되어질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기본법」의 인권과 타 인권의 관계성

「청소년기본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의 의미를 명시한 결과 인권적 의미로 접근하고자 할 때 명목상의 논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인권 선언과 같은 포괄적 인권과 같은 의미와 「청소년기본법」상의 인권의미의 중복성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게 되는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인권의 출발점은 아동권리 협약이나 UN인권선언의 의미가 강조하는 바가 곧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영역을 근간으로 하여 출발하였고 이를 수반하고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은 아동의 영역에서는 인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과 규정의 차이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고 이를 기본법의 전개방향으로 이행하고자 했을 때 자칫 일부의 사람들은 「청소년기본법」을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의 전개의미에 대한 지향점을 인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복지적 관점과 직접 서비스 지원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아동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상에서는 주로 아동복지와 학대금지, 보호 조치와 사회보장서비스, 후견인, 안전교육, 방과후 교육,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핵심요소로 담고 있다.

물론 「아동복지법」처럼 아동의 인권이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책무를 주장 하거나 인간다운 삶의 기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주체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가정과 사회가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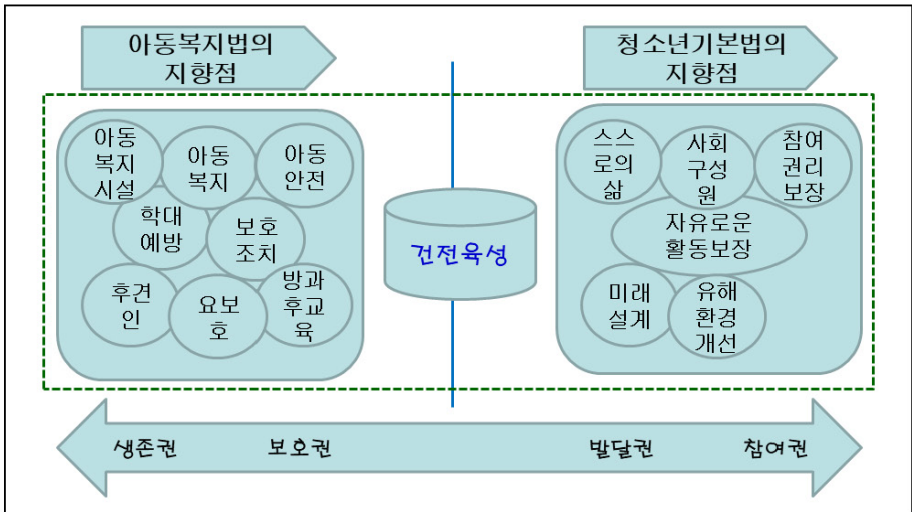


그림 IV-4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성

하지만 그림 IV-4에서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을 집약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보면 아동의 생존과 보호적 관점에서 대상을 요보호적 시각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제한적 관점으로 법률의 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복지법」은 주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명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규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존재부터 아동과 다른 논의의 출발점을 보인다. 아동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대상으로서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하며 현실적 사회참여를 적극 추동하게 함으로써 아동과는 다른 확산적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상에서는 아동의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보장하되 그러한 조건을 근간으로 하여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는 문제를 없애고 더욱 활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나 사회복지의 관점과는 엄연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사회복지법」을 함께 고려한다고 해도 역시 인권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는 것처럼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는 대상에게 국한된 인권의 설명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등과 같은 유사법률의 내용과 전혀 다른 접근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별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관계자들의 대상을 연령으로 규정하고 인권포함을 주장함은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며 오히려 대상의 발전 지향적 인권의 보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 시각에서의 인권과 권리 즉 청소년의 사회참여나 제도 및 규정의 참여를 보장하게 하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자신의 잠재적 역량과 미처 드러나지 못했던 당시대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인류와의 협업과 공동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함이 「청소년기본법」의 내재된 중요한 철학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규정하고 더욱 강조해 줌으로써 「청소년기본법」의 이념과 비전의 방향이 인권적 요소로 설명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현황분석

1)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발의사항 및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2004년 2월 9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주요개정 연혁과 사유를 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내용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내용
법률 제11837호 2013.5.28	사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제한, 관할기관 신고의무, 종합안전점검 필요 - 19세 미만 청소년활동 주최자 계획신고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부적합자 참여제한, 인터넷공개, 보험가입 의무화, 위반자 과태료부과
법률 제12329호 2014.1.21	사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병대 캠프 사고후 안전사고 관리 부분 개선 필요 - 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 숙박형 등 대규모 수련활동, 위험한 체험 활동의 경우 사전 인증제 도입 - 청소년활동 중 성범죄, 위험사고 발생시 해당 프로그램 또는 시설의 운영 일시 제한 - 허가받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 수련활동 위탁금지 - 수련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종합평가공개, 최저등급3회이상시 허가또는 등록 취소)
법률 제 13182호 2015.2.23	사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공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구성 제도화, 인증위원회에 안전 관련 전문가격이나 지식소유자를 위원으로 1명이상 포함
법률 제14068호 2016.3.2	사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업무를 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으로 명확화함(컨설팅 교육, 수련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근거 마련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내용
법률 제14705호 2017.3.2	사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안전 위생점검'으로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 기간에 의견 회신토록하여 미의견시 의견없음으로 간주도록함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 개정사유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개정 사유가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과 관련하여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이 강화되는 것, 둘째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안전 검정이나 제한 등이 주요 개정 사안이었다.

이러한 법 개정의 결과 지금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본래의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보다 오히려 청소년활동자체를 감시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 구성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총 8개의 장 72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장의 법률조항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

장	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2 정관 제6조의3 임원 제6조의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5 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6 보조금 등 제6조의7 「민법」의 준용 제6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의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9조의6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조의7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 안전교육 제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장	조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8조의4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 시정명령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 청문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 보험 가입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 삭제 <2016.5.29>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 삭제 <2010.5.17> 제43조 삭제 <2010.5.17> 제44조 삭제 <2010.5.17>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삭제 <2010.5.17>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 수용 및 사용

장	조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59조 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7장 보칙	제66조 조세 감면 등 제67조 감독 제68조 수수료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부칙	

* 출처 : "청소년활동 진흥법, <http://www.law.go.kr/>"을 재구성

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 방향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에 대한 조항들이 필요에 의해 추가 및 삭제가 반복된 결과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법률의 목적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정책적 효과로는 첫째, 주5일 수업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활동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정책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종류에 청소년특화시설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을 구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셋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활동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과 지방센터의 설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사업의 제도화와 청소년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제공과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기록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 및 활동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하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인증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셋째,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을 청소년활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관리하고, 청소년수련 및 단체 등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넷째, 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수련시설의 고유목적 사업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까지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기존의 여가 생활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활동이 사회적 서비스(지원)를 넘어 청소년활동을 통해 삶(생활)의 의미 있는 도전과제를 찾고 스스로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향후 진로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역량 개발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청소년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청소년활동이나 기존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거나 추가적인 활동으로써의 청소년활동의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청소년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분야에서 통용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이나 용어적 한계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호환성(social compat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역량 개발 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상위개념으로써 또는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사회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더 큰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 성과 중심의 파편화된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화된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이벤트 중심의 가시적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단기적 처방이나 성과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을 통한 ‘놀 터’ 확대와 심심해하는 청소년을 위해 ‘놀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해 왔으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대응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할 찾거나 성공적인 성인으로 이행이라는 중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보다 길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 찾기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정책으로의 변화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학습과 체험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등을 중심으로 하되, 가족정책, 보건과 건강정책,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 청소년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비행과 교정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스스로 직접 집행 가능한 고유영역에 매달리고 싶은 자기 폐쇄성과 고립성의 유혹과 끊임없이 맞서며 새롭게 진화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청소년정책과 같은 사람중심, 대상중심의 정책이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과 같은 기능중심 정책과 나란히, 상호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으로 비켜나 자기 고유기능영역을 고집하면 할수록 정책적으로 주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철경외3인, 2008. p.71.)

3.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황분석

1)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발의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2월 9일에 개정된 이래로 법 16회 제·개정, 시행령 25회 내외 제·개정, 시행규칙 19회 제·개정 등 사회적 요구 또는 정부조직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소폭 또는 대폭 변화과정을 거쳤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순으로 살펴보면 표 IV-5²¹⁾와 같다.

표 IV-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개정 현황

번호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 내용	
1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주기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함. · '교육적 선도'의 명칭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 보호지원 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지 향상을 위해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나. '교육적 선도'의 명칭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 보호지원 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2	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체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908&chrClsCd=010202&lsRvsGubun=all>」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체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914&chrClsCd=010202&lsRvsGubun=all>」를 참조하기 바란다.

번호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 내용	
3	법률 제1444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 ·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p>가. 시책 수립시 청소년의 성별 특성 고려</p> <p>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가출한 경우,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출청소년 본인 의사에 반해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p>
4	법률 제14237호, 2016. 5. 29., 일부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
		주요내용	<p>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p> <p>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p>
5	법률 제13181호, 2015. 2. 3.,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로 맞춤
6	법률 제12700호, 2014. 5. 28., 타법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 지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주요내용	<p>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 마련</p> <p>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기본 계획 포함 의무</p> <p>라.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p> <p>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및 프로그램 마련·제공</p> <p>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p>
7	법률 제12536호, 2014. 3. 24.,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예의 출연근거 마련

번호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 내용	
8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9	법률 제11836호, 2013. 5. 28.,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준 및 그 결정절차 명확화
10	법률 제11290호, 2012. 2. 1., 전부개정	이유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위기청소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역할, 국가의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 역할 등 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유형별로 보호 및 지원 실시 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청소년복지시설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규정
11	법률 제10297호, 2010. 5. 17.,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 관철 도모
12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번호	제정·개정 연월일	세부 내용	
13	법률 제8852호, 2008. 2. 29., 법개정	이유	· 정부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주요내용	· 청소년관련 정부조직 재배치
14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15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16	법률 제7164호, 2004. 2. 9., 제정	이유	·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주요내용	가.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 등의 절차에 청소년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보장 조치 시행 나.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다.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고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 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 실시 마. 교육적 선도 실시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재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의 흐름을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 2004년 2월 9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 하고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 보장 조치, 청소년우대, 청소년증,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육적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 (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청소년 업무를 담당 → (ㄷ) 청소년위원회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상담 외의 긴급구조와 그 외의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 → (ㄹ)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소년담당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 (ㅎ)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유형별 보호 및 지원 등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종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설립근거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관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정하는 등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 → (ㄱ) 청소년복지시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 (ㅇ) 법체계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 → (ㄱ)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ㄱ)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지원시설로 규정, → (ㄹ) 청소년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청소년 성별 특성 고려,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퇴소 시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 → (ㄷ)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 (ㄴ)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요약컨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개정과정은 주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부조직법 개정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청소년복지 지원 내용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이며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총 10개의 장 45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10개의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다(<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원은 「헌법」 제34조 제4항과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이다(박진규, 2004; 이용교, 2004). 「헌법」 제 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는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

2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http://www.law.go.kr>).

각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실태조사를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에서는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을 다루고 있다.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에서는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은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으로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은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17조 삭제 <2014.5.28.>,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서는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을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서는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을 ‘제9장 보칙’에서는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감독, 제40조 예산의 보조, 제41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을 ‘제10장 벌칙’에서는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부칙이 명시되어 있다(표 IV-6, 표 IV-7 참조).

표 IV-6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요약

개념	주요 내용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청소년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정의)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p> </div>
위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정의)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의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청소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념	주요 내용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시설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재구성

표 IV-7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장	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17조 삭제 (2014.5.28)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장	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
제9장 보칙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감독 제40조 예산의 보조 제41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부칙	

*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을 재구성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전문가 의견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는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학계·현장 전문가(교수·연구원·공무원)이며 각각 2시간 이내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중요사항을 정리·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세부내용(안)은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1) 개요 및 실제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A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개정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아마 그 때가 2003년인가 될 거예요. 이 무렵에 기본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복지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뭐 청소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으로 개정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뭘 제정을 두 가지나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은 국회에서 준비하는 행정부에, 쉽게 말해서 골라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활동진흥법과 복지지원법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청소년 준비하는 쪽에서도 활동진흥은 주로 청소년학과 교수님들의 관심사니까,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진출 같은 거 고려해서. 그래서 활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법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쉼터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당시 부처에서도 강하게, 꼭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 하면 세 개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절실성이 좀 컸어요. 그 때 저는 복지지원법을 꼭 제정해야 된다. 다만 복지지원법의 제정을 당시 교육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이라든지, 또 뭐 직업 훈련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이미 하고 있는 쉼터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 인하지만, 이런 데 이런 데 하는 건 우린 다 반대한다. 그래서… 당시 청소년 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세 개를 다 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이걸 살릴 것인지, 아니면 활동진흥법 위주로만 갈 것인지. 저는 여러 차례 법을 연구해보고 또 제정하는 데 관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정하는 것은 어렵는데 개정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그 때 당시 초안 작업을 했어요. 그때 원래 구성했던 내용의 아마도 거의 반 이상을 날렸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이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이런 법제정 과정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는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이 법률 간 조정으로 인해 내용이 축소된 부분 또한 강조되었다.

“(중간 전면 개정 때 내용이 빠진 이유는) 그 때 당시 아동 청소년 업무를 복지부로 다 보냈어요. 그랬을 때, 복지부에도 아동복지법이 있고 또 우리 이 쪽에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또 활동진흥법이 있고, 또 복지지원법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아동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활동 지원법, 아동청소년복지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갈 때의, 그 때의 기초는 뭐였냐 하면 UN아동 권리협약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요보호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복지지원법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기초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무산되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대폭 개정을 한 번 할 때 아마도 인권과 관련된 것은 기본법으로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건강 진단은 지금도 복지 쪽에 남아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때 한 번 좀 이렇게 법 간의 조정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B 교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이 중기 청소년(13세-18세)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연령 중 19세-24세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복지지원법은 느낌ियो,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 지금 우리가 기본법에 의한 9세에서 24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 쪽에 치우친 느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뭐 9, 10, 11, 12 뭐 이런 쪽, 1318을 제외한 전기 청소년하고 후기 청소년을 복지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조금 없다는 느낌. 그 정도의 연령대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연령대를 다 포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언뜻 봤을 때,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적에는 너무 법이 후기하고 전기는 좀 없고 중기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기 청소년한테 가야 되는 어떤 복지지원, 사실은 우리가 1318 지나가면 대학생 연령 대거든요. 그들 연령대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건데, 인간의 생의 단계를 보면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겠지만 전 그게 제일 많이 사실 걱정, 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한 9살, 10살 애네들한테는 어떤 복지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떠오르질 않고, 우리가 뭘 하고 있지 그런 게 잘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C 박사는 아동·청소년 법률 간 지원 범위나 내용이 다수 중복된 점을 한계점으로 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해서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는 점은 좋은데 이 법률들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각각의 영역들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 조금씩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년이 19세 미만이지만 실제 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인 법도 있고 19세 미만인 법도 있고,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인 법도 있고 막 이런데… 보면 대상은 동일해요. 보면 20세 이상만 다르다 뿐이지 대상은 거의 고등학생까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어떤 부처의 법이냐에 따라서 지원 범위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점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법이 각각 개념 정의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적용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나 보호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법이 어떤 부처의 법이냐, 그리고 그 법 내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지금 현행법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시면 청소년기본계획이나 아동기본계획 이런 것들 다 보시면 흐름은 거의 유사해요. 대상만 다르게 뭔가 법률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부분, 보호와 관련된 부분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관련 센터들도 거의 유사한 역할들을 하는 센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동일한 건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법상으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C 박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점을 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예방과 복지에 관한 규정들도 더 많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규정들도 더 거기에 구체화된 내용들이 담기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된 것도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해주는 것도 시행령으로 딱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운영이 구체화 된다든지 그래서 좀 구체성을 갖는 면에서는 점점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반적 실효성, 구체성, 체계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목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복지지원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열거는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 구동되고 있나,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대다수인 게 제일 한계점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복지지원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체계성이 조금 부족하단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 1조의 목적 부분이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률들을 보면 이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뭐 이렇게 목적이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청소년복지 향상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 우리 건드려, 이렇게만 기술을 해놓고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지 부분을 지원할지를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되거든요, 목적 개념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롭게 정비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방향성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동복지법과의 관계에 있어 D 교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일반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모두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복지법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법안들이 뭐 있긴 하지만 뭐 실종 아동, 빈곤 아동,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입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약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반해서 청소년은 그래도 일반 청소년들도 있고 활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법이 그 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 저는 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쪽이.”

아동복지 전문가인 D교수는 최근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보다는 「청소년기본법」과의 관련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이 「청소년기본법」과의 역할·기능상의 중복, 혼돈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청년기본법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가 아닌 청소년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청년을 아울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현재 아동복지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아동인권, 권리 등에 대한 아동기본법적 성격의 내용도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청년기본법의 성격으로 통합되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기본법은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여가부가 조금 그게 main player가 돼서 그런 걸 해도 좋지 않겠냐, 라는 거죠. 딴 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쪽의 설득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님 그걸 넘겨주든지.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은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지금 부처가 다르잖아요. 청년기본법은 계류 중이네. 그러니까 잘됐네. 같이 합쳐서 하면. 재정 안은 이미 왔고 그래서 우산 씌우는 작업을 하고... 청년기본법도 계류 중이니까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뭔가 하나 법 만들자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우산을 하나 만들자. 아까 전에 young people 이렇게 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기본법을 하나, 우산이 될만한 걸 만들자. 잘됐잖아요. 청년기본법 계류 중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청년기본법하고 같이 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류 중이니까. 그런데 소관 부처가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끝내 기재부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동까지를 포괄할 수 없다면 뭐 청년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해서라도 만들면지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라면…” “만약에 법령이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까지 포함한 기본법 만드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동은 여기고, 청소년은 뭐, 연령 구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우산을 하나 만든다, 라는 거죠. 뭐 그 안에 보호, 복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내용.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큰 우산 같은 걸 하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죠.”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핵심 서비스, 추진체계인 CYS-Net이 그 의도와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보기엔 그게 이전 제일 문제인 거죠. CYS-NET에서. 원래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없고 애들이 거기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냥 다 퍼져 있으니깐 같이 모아서 사례관리 하겠다,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내용인거죠. 특별지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줄 수 있는 게 많으면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청소년전담공무원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담공무원도 없는 상황에서,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는 있는데 뭐 잘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사문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복지지원 센터만 움직이고 있고 복지지원전담공무원 없고…” “그게 이제 손발이 되는 조직인데 그 각각 지자체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그게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다. 튼실하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여가부가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으니까.” “찾아가는 상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하라 그래도 그게 되겠어요? 그냥 앉아 있죠. 사람을 많이 바꿔야 됐는데 사람을 못 바꾼 거야. 그러니까 기관은 기관대로 불만이 많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새롭게 뽑을 때는 약간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반발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뭐 돌 맞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담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복지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안의 일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로 뽑아야하지 되죠. 그런데 상담만 하신 분은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걸 해야 된다, 라고 생각도 안하시고… 지원센터를 뽑을 때, 오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상담사 몇에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늘리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싫어하시겠죠.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의 추동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상담은 여기처럼 잘하는 곳이 없어요, 청소년 상담. 그래도 다른 데 보단 나아요. 그래도 국가공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젠 그 분들이 상담 백그라운드만 갖고 있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움직여야 될 유인이 없다구요.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해야 될 유인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지자체 수만큼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러면서 CYS-NET을 움직인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문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관도 그런 성격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특별지원… 예를 들어서 저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나는, 학생이나 청소년이 어 이거 말도 안된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놓고… 나같은 뭐 행정 소송을 하든지 뭐 위헌 소송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애. 지금은 말만 되어 있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학자인 E교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대부분 이양함으로써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느낌은 뭐냐 하면 총칙에 개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핵심이 그림 가장 청소년 우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3장의 건강보장하고. 이게 추구하는 목적인거죠? 법으로 전체로 봐서 느끼는 거는 이게 추구하는 목적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가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4장이 청소년통합지원이라는 게 지금… 그런데 통합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가서 위기청소년지원은 아마 위기청소년이라는 거를 하나의 특성으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가장 큰 게, 이게 보이면 위기청소년 지원도 그렇고 이거 제가 봐도 위기청소년 지원도 많이 활용 안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하위에 필요한 상담복지개발원 이런 기관들.

그러면 기관들 뒤에 드는 거는 뭐 관련 부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4장이나 5장 같은 경우가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제가 없다. 라고 그냥 느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맡겨 버렸잖아요. 할 리가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뭐 이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런 걸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 개선방안

A 교수는 아동·청소년 시설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며 아동복지법상 양육 시설에 편중된 지원과 권한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청소년 복지는 아동복지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할게요. 아동복지하면 가장 전통적인 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동이 양육시설로 가면 자동으로 시설장이 후견인이 돼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면, 안돼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으로 가면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동이 매우 취약한 거죠. 그 다음에 양육시설로 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 되고 그 다음에 퇴원하면 자립지원정착금 주고 또 주거 지원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이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면 지원이 시설 당 한 달에 한 30만원 밖에 안돼요,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쉼터의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동양육시설에 가는 경우랑 청소년복지 시설에 있는 경우랑 지원이 달라요. 그러면 안되요. 어딜 가나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최근 복지 영역에서 특히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립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시설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느냐, 어떠한 법체계 하의 시설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수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퇴소 이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여기(양육시설)는 퇴소 이후에도 최소한 5년은 관심이 있어요. 가정 위탁은 실제로 말하면 18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느냐. 여기(양육시설)는 고아일 거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아가 10%도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있거나 이런데 그 친구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양육시설)가 주로 영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도 적지 않아요. 특히 학대받는 아동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쉼터로 빠져 나간다 그러면 생계급여 안돼요. 의료급여도 아무 것도 안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18세가 돼도, 예를 들면 자립형 쉼터에 있었다, 종장기 쉼터에, 그러면 18세 되면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 물론 밥은 먹여주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대학 갈 때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국가 장학금을 주거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기가 이 상황을 다 안다면 그러면 이리(양육시설) 들어가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가 양육시설이에요.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특히 고등학생 쯤 됐다 그러면 여기(양육시설)는 절대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죠.” “바로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런 거일수록 아동청소년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도 되고 대학교 입학도 되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다 해주는데 이런 데로 가면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 체계가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자립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농후하죠.”

관련하여 A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 보다는 체계, 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있나 하면 아동복지 법에 자립지원 내용이 있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도 제대로 차별 받지 않고...”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 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며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복지 분야에서 일하면 처우를, 기준이 100이 라면 첫 해에는 80%, 두 번째 해에는 85%, 세 번째 해에는 90%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는 없애 버렸어요. 무조건 없애 버렸어. 그래서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동 생활가정도 처우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늘 청소년 분야, 여성 분야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또 처우가 다르게 돼요. 이 분야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같은 청소년분야라도 상담복지센터는 제대로 처우해주는데 다른 데는 안 해주잖아요.” “(청소년복지법의 시설들이 사회복지법 상으로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직 연결이 안되는 건가요?) 안되는 거죠.”

A 교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시 청소년복지 시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어쨌든 메인 중의 메인인 쉼터예요. 어쨌든 청소년쉼터 협의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쉼터와 관련되어서 많은 전문성이 있는 분을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은 쉼터 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 많아요. (쉼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쉼터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좋겠고…”

또한 현재 대면·전화 등의 서비스 제공 방식의 활용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 기술,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지금 많은 서비스가 너무 대면 서비스나 전화로 하는 서비스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표 어떻게 사셨어요? (인터넷으로 샀죠) 그렇지? 전화로 산 게 아니죠. 웹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자기 카드 번호 누르고 땡 하면 끝이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몇 개 누르면 끝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 서비스나 청소년 각종 활동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찾아가거나 전화가 오거나. (요즘은 다 상담도

웹 상담으로 한다고) 그런데 웹 상담의 상담수는 PC 상담, PC 통신 상담 식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글을 올려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글을 해주거나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서비스 내용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하는 쌍방향 온라인, 오프라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료만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와 디렉토리를 제공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 예를 들면 내가 19세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요.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가면 월급도 받고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접을 받는 방법으로 군대를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상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전화로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카톡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곤란하죠. 차라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군대에 가는 방법은 1번, 현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현역으로 가는 방법 중에서는 네가 학사 장교로 가는 방법도 있고, 기술병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병은 이런, 이런 게 있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디렉토리를 짚 만들어가지고 이 디렉토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지식인은 어때요, 자기가 궁금한 걸 치면 누군가가 답을 올려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모범답안만을 짚 정리해 가지고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고등학교를 좀 공짜로 다니는 방법이 없을까? 교육 급여라는 게 있어요.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 자기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60% 이하는 고교 학비 지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교육청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알려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고) 그런데 대학생은 말이죠, 대학생은 이것의 한 70% 이하면 국가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있죠, 국가장학재단. 국가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게 520만원까지 줘요, 장학금을. 언제까지? 8학기까지. 그런데 이 장학금은 70% 이하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200% 이하에게 다 줘요. 이 사람에게는 67만 5천원까지

줘요. 그럼 200%는 얼마나. 1인당 1억 1천만원이에요.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67만 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하에도 세자녀 가정은 67만 5천원이 아니라 450만원까지 줘요, 각각의 자녀에게. (이 정보를 매뉴얼화해서) 그렇죠.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도 고려되어야 해요.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는 프랑스의 정보문화센터라고 있어요. 프랑스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걸 뭐 정보 센터라고도 부르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정보 센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제일 먼저 가면 로비 같은 데에 구인 구직 스티커들이 짝 있어요. 어디에서 사람을 구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담하고 싶다, 하면 은행 창구처럼 창구가 있어 가지고 번호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상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상담의 내용은 계속 정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요, 백과사전처럼. 그럼 책이 한 열 권쯤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의 가짓수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짝 정리를 해서 매 년, 매 년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자기들이 계속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그걸 총 정리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 같은 데다가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기술병으로 가는 방법이 스무 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기술병 통해서는 나중에 나오면 그 분야에 취업하는 기술병도 많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데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 알음 알음으로 가르쳐 주거나 가족 중에 누구 좀 그런 분야에 있으면, 야 이왕이면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래도 좀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덕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죠.”(복지로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문제는 복지로에서 그걸 하는데 복지로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복지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백 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일하는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한 번도 자기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한계가 있어요.”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 추진원은 상담복지개발원을 위주로 한 서비스이나 이러한 상담 중심 서비스가 다양한 청소년복지 노력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처음에는 상담센터였잖아요? 아니면 상담소. 그랬다가 이걸 상담지원센터라고 했죠. 이름을 바꿨죠. 그러다가 상담복지센터로 또 바뀐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CYS-NET을 하려고 보니 상담원들은 계속 말로만 하려고 하고… 말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병원을 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다 못해 돈이라도 준다든지… 이러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복지사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상담사)이 메인이고 이 사람(복지사)이 서브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배겨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은 20년도 근무하고, 30년도 근무하잖아요. 급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메인이라고 봐야죠. 자원 연계나 이런 것보다는 말로 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복지서비스를 상담의 시각에서 보려는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졌어요.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정 전에 충분한 개입 서비스의 마련과 목적, 실천 방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추진체계, 추진방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교육적 지원인가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교육적 지원이라는 말이, 교육적 지원인가 특별 지원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교육적 선도?) 네, 교육적 선도. 교육적 선도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걸 다분히 당시의 000연구원에서 청소년 연구하는 팀의 박사가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한 거예요. 왜 이걸 집어넣었나 하면 청소년들을 예를 들면 보호처분을 해. 그러면 이 보호처분 중에서는 일부는 강제력이 있는 거지만 일부는 그냥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력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일단 보호체계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해 버리면, 말은 애네 들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법 쪽으로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법 처분을 받기 전에 아이들을 뭔가 케어 했으면 좋겠어서 넣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교육적 선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뭐랄까 선도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걸 지원인가로 바꿨죠. (예, 회복적 지원인가 예방적 지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다 바꿨어. 그런데 아직도 별 내용이 없어요.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형사 처벌로 가기 전에, 보호 처분으로 가기 전에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별 실천은 없을 거예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것도 차라리 보호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보호하고 복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모르지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복지보다는 보호 쪽이 더 맞지 않을까. 비행이나 이런 거, 회복적인 이런 것들이 그게 복지일까? 아니면 보호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복시설 있잖아요. 그게 보호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차라리 이 참에 보호의 개념을 지금, 오랫동안 지금 보호법이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그 네 개 이외의 다른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개로만 맞춰서 하나까… 그래서 이게 복지일까? 보호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호 법에는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쪽에 와 있는 것 보단 저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람들의 이해도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법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법실천 강화,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조항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런 거는 이제 법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인데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법 조항도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없어서 그럼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정말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걸 잘... 그러니까 법이 촘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뒤가, 아귀가 딱딱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들을 법제화해서) 하나씩 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조항으로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뒤가 없는 거야.”
“또 저는 법이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다고 그러는데 좀 이런 복지에 관한 법은 더 촘촘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2장 청소년 우대에 관한 사항을 능력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고 대상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우대증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가 뭐야 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시행령 1조 2보면 면제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18세로 해놨어요. 이거를 그냥 9세에서 24세로 하고 두 번째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한다 뭐 이런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4세로 하는 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아예 24세로, 기본법하고 똑같이) 네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증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밖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예 초중등부 말고 대학...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24세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내용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조항에 명시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건강검진은 사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학교밖 법 쪽에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복지 전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는 어쨌든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물론 거기서 대상을 꼭 집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 법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그 쪽은 좀 그 쪽에 가서 그 법이 좀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실 청소년 중에서 학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것보다 저 쪽에 가서, 학교밖 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의무적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학교밖 아이들이 건강검진 잘 안하려고 하잖아요. 자퇴자 파악도 잘 안되고 파악된 애들도 귀찮고... 50인 사람은 건강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하라고 하면 고맙다 하겠지만 애네들은 제일 그래도 건강할 때잖아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잘 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애를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거를 억지로 억지로 막 이렇게, 양쪽이 성과가 나니까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의도에 비해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애네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에다 더 법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의도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했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좀 여기서 다루주는 게 맞는데 있으면 오히려 그 쪽에 가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서 전부 다 다룰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법도 위상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적어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주면, 그러면서 사실 일반 청소년일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의 것을 거기다가 좀 애네들한테 특별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청소년일 때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안하지만 애가 학교밖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는, 받아야 될 것들을 거기에 주로 넣는 거죠."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건강검진 자체만이 아닌 그 이후의 follow-up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다.

"follow-up도 있어야죠. 예를 들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심각한 병이 있다거나 했을 적에 이제 개를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단순한 학교밖이나, 그래도 부모가 관심이 있고 학교밖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험이라도 해 주거나, 민약에

그런 보험이 없는 애들은. (어떤 보험이요?) 건강 보험, 지역 건강 보험.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가정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어떤 심터라든지 아니면 수련관이든지 아예 기관에 개네들을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아예. 예를 들면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그럼 애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적에는 그런 어떤 공공 기관에서 애네들을 어떻게든 해서 보험을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면 그게 낫지.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다음 next는 우리가 없잖아요. (돈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험금을 내 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 요즘에 우리나라 보험이 웬만하게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면 특별히 특별 지원을 해서 받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서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에 정신 건강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보다 심화된 정신 건강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기는 한데... 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이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파트가, 신체 건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 대학에 보면 상담실에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상태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가정에서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게 해 줄게.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더 억눌리고 막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했던 말이죠. 정신 건강적인 측면이 저는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정신 건강적인 측면이 상담적인 것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상담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제가 상담실장을 한 4년 했는데 그 때 필요한 게 뭐였냐 하면, 전문상담원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해야 되는 상태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막 졸인다고 해야 하나? 애가 언제 막 사고를 낼지 모르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안나긴 했지만, 나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너무 심한

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어 이거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나봐.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정신 보건 진짜 중요해요.”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CYS-Net)의 낮은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고민되어 법체계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된다고 다들...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엔 완벽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데가 가끔 있어요. 잘 되는 데가 가끔 있고 대부분은 잘 안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못해요. 거기다 완벽해서 손댈 수가 없어, 이게. 고칠, 손 볼 데가 없어요, 이게. 서류상으로나 겉으로 봐서는 뭐 특별히 내가 여기저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이게 뭐 잘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데가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나 현행 지원 내용이 많지 않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별지원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중요한 청소년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없다는 거지, 그 지역에는. (이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랑은 또 조금 다른 건가요?) 여기 보면, 특별지원하면 그거(기초생활수급)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게(기초생활수급)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죠. 겹칠 수 있어요. 겹칠 수 있는데, 겹쳐도 우리가 보장을 많이 안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나오면, 가끔 신문 같은 데 나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뭐 어디서 몇 만원, 어디서 몇 만원 받잖아요. 우리 밥값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충분히 살기에,

정말 아주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살 만큼 준다 그러면 나는 중복되는 걸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중복되어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나는 들고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급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어려운 사람은 많거든요. 오히려 사각지대가 여기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사각지대… 그런데 그 사각지대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하고 급성은 또 달라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물망이 터지는 거지.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된다고 자꾸 넘기고, 넘기고 하게 되면 결국엔 총총하지 않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 강남에 40평 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는 내가 강남의 40평 대, 50평 대 아파트에 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었지만… 사각지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당신들도 자격이 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15조의 서비스 신청 권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여기 보면, 여기 15조에 신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갔는데, 그냥 문득 생각했는데 이웃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만 하게 되면 또 발견을 못 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는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요. 보호자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호자가 아닌데 내가 친척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신청하는 게 친척이 없고. 그런데 내가 이웃이라는 표현 더 이상 못하는 게, 주변에서 애를 아는 사람인데…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넣는 순간 이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Everybody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될 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친척 정도를 또 더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 신고의무자를 조금 확대하면… 확대해보자.” “교원 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있어.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말고, 예를 들면 방과후 뭐 방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죠. 안보이잖아요. 방과후 교실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웃이 안되면 애를 만날 수 있는 누군가라도 여기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과후 교사. 진짜 저 사람 없다. 종교, 종교 기관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 포함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 친척, 종교기관 종사자, 방과후 교실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해주면, 어쨌든 애네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면… (쉽터 선생님들도 이거에 따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지도자.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여서 이걸 괜찮은 것 같아요. 방카는 되는데, 방과후 교실 교사, 학교에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방카 그게 어려울 거야. 그런데 더 많이 만나잖아요. 넣어 줘야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너무 청소년 업무로 한정돼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한정하지 않아야… 만약에 이웃을 안 넣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가지고 애 좀 어떻게 봐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경찰도, 경찰공무원이야 그냥 공무원. 공무원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다 빼고 그냥 공무원으로 하면, 청소년 업무라는 말 빼고 공무원이면, 확대하는 쪽으로.”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16조 1항에 상담 외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할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훈련 같은 거 그렇게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 복귀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도 이 앞에서 얘기 했잖아요. 가정하고 사회 복귀 얘기 하면서 상담만 자주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얘기.”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18조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중도입국 청소년인데 나는 초점이 2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국제 결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예요. 이게 다문화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애네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한 쪽은 부모가 일반 한국 사람이고 이 쪽보다는 오히려 이 두 번째에 들어 와야지 이게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해, 한국에 와서 교육, 약간의 뭐… 외모에 차이가 있는 정도, 이걸 또 다른 데서 해결을 하니까 애보다는 이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관련하여 22조 ‘이하 상담원’ 이 아닌 ‘이하 상담 복지원’으로 표현하여 복지 내용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22조 이하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이하 상담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에서 조차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것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하를 어떻게 청소년상담원으로 해요, 이것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줄이고 그냥 썼으면 좋겠다.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꼭 줄여야 된다면 상담복지원. 그게 낫지 이걸 아닌 것 같아요.”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별 정확한 설치 기준을 제시 하여 수요에 따른 시설 확충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31조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쉼터 있고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 별로 없죠. 회복시설도 그렇고 치료재활센터도 없잖아요. (치료

재활센터가 디딤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하나 더 생긴다고, 대구 쪽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예 옆에다가 설치 기준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문화의 집, 수련관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법에서 조금 압박을 주면... 사실은 문화의 집도 설치 기준 강화 안됐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있으니까 확장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 쉼터도 그렇고 자립지원관 이런 것도 그렇고 청소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청소년의 비율이 있으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처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조금 이 옆에다가. 많은 지역에다가. 괜히 또 저 쪽 엄한 지역에, 정말 밭에다가 그런 데 하지 말고. 애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런 거는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대도시에 일자리가 있지 무슨 읍면 지역에 일자리가 있겠어요. 치료재활센터는 어떻게 어디다 세워도 상관 없지만 자립지원관, 쉼터 이런 거, 회복지원시설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고런 거 기준을 해줘야죠. 설치 기준 하는데 이거는 정말 논이나 밭에다 세우지 말고, 산 속에도 세우지 말고, 예를 들면 대도시,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세워야 된다. 이거는 오케이, 네 마음대로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예를 들면 뭐 가출 청소년 비율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요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이런 거, 자립지원관 저기 서울에, 있긴 있어요. 인천에 있고 서울시에도 지금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국립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청에서 해요. 인천, 서울 하는데 그거를 중앙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청소년이 많았다가 그 지역에 청소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게 하고 굉장히 좀 flexible 하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자립지원관 하는 데 가봤거든요, 오픈 안한 데. 그냥 빌라 얻어서 해요. 빌라 얻어 가지고 하나는 사무실같이 쓰고 하나는 방을 하나씩 줘요. 그래 가지고 방 세 개고 큰 방은 둘이 쓰고 작은 방은 하나씩 써요. (수련관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생기지도 못하고 애들도 안가고 주민도 싫어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그런 집이에요, 빌라예요.”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중장기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 기관 확대 및 자립 지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짧혀졌으면 좋겠어요, 기간.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혜택 받은 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혜택 받지 못한 애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게 어쨌든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애네들을 하다 못해 지원해주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돈을 받아요. 한 달에 10만원이고 얼마고. 그럼 이걸 모으다가 나중에 나갈 때 주는 거야. 돈을 받아요. 보통 자립지원관 애들은 이제 나이도 있고 일을 하는 애니까. 알바라도 하면 한 달에 10만원은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애네들이 나중에 나갈 때 시드머니가 되니까 애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걸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데… 방을 구하면, 한 달에 3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한 15만원은 지원해주는 이런 식도, 자립지원관이 너무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거(치료재활센터)는 확대가 안돼.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터도 yes and no야. 어떤 애들은 있는데, 중장기는 가능한데 단기는 좀 어려워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되는 청소년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식으로의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히려 요 기초생활보장법, 나 이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가만히 보면 기초생활, 그런 얘기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 중에는 일부러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애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애는 거기서 받아서 누리면서 그 이상 안하려고 하는 거죠. 멀리 봤을 때는 개네들한테도 손해예요, 사실은. 그런 애들 많아요, 있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 내가 뭐 하러 일을 해? 일 안해도 난 그 정도는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9장 보칙 37조 비밀 누설의 금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칙이요, 보시면 37조에 비밀 누설의 금지. 그래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라고만 했어.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없어. 그래서 안 되는데 누설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디 뒤에 있는 벌칙에 있어요, 그게. 벌칙에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일 년 이하에 벌금이야. 아니면 징역, 그 다음에 징역, 벌금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가 걸어야 될 게 저기 자격증 정지 같은 걸 걸었으면 좋겠어. 아니 돈 하고 그거만 하면 안되잖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상담사가 됐든 지도사가 됐든 자격증 정지와 같은 것 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37조에서 뒤에 벌칙이 나오긴 하는데 벌칙에다 이걸 넣어야 될 지 이거를 아니면 시행령 이 쪽에다가 넣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했으면 좋겠고 45조에 과태료가 있어요. 너무 싸. 때가 어느 편데 500만원이야. 300만원 이하 뭐 이런 거야. 이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9장 보칙과 관련하여 효율적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 개인정보 공유를 허가하고 원활히 하되 비밀 누설 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개인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애를 도와주려고 필요한 거지 애를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져야 된다고 이게. 비밀 누설이나 이런 게 세져야 된다고. 이게 1년 이하 징역 뭐 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자료가 넘어 와야지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본인도 한 얘기 여기서 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되잖아. 싫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 애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나는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본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이거는 자격 정지, 내용에 따라서 자격증 정지부터 자격증을 없애는 것까지, 취소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런 게 약하잖아요.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자격증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이랬을 적에 최고는 징역, 동시에 갈 수도 있다. 자기 자격증도 취소되고 그 다음에 징역도 살 수 있다. 이런 아주 센 걸… (중요한 정보는) 공유를 해야지. 그래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애도 힘들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애네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이 나는 쓸 데 없이 딴 데서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처벌받을 일도 없고, 우린 상관도 안하고… 그런데 또 다시 조사해야 돼. 이름이 뭐고, 이거 다시 조사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말이 점점 좀 줄어들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질 않아요. 한 번, 처음에 정보를 얻을 때 그 사람이 꼼꼼하게, 상세하게 한 번 딱 끝내는 거야. 그래야지 애가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될 수 있을 지 없을지 몰라요. 이런 거를 바꾸는 건 가능해. 자격증 취소 이런 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쪽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쪽 지도사, 사회복지사 이런 데 넣어오겠지만 그러면 뭐 의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다 그런 권한은 주되 그 사람의 어떤 그 비밀 누설 시의 어떤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법학을 전공한 소년법 전문가 C박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적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법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체계를 봤을 때 총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이 청소년우대예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건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떤 영역들로 나가서 할 지. 그런데 그게 아주 선행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들을 제일 먼저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각각 규정에 조금씩 묻어나 있긴 해요. 뒤에 뭐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있는데 이 2장에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해서 어떤 책무가 있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먼저 실시가 되고 다른 법률들은 그 다음에 인제 각각의 영역들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 보면 복지지원법 체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막 끼워 넣기로 가다 보니까…”

관련하여 2장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 상세를 상세히 규정하고 → 일반/위기/특별 청소년 영역별 지원 내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가 이 법을 다시 만든다면 2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그 4장인가에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에 넣겠어요. 거기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영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할 지. 복지지원, 뭐 생활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 영역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왜 기본계획에는 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딱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 특별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이 되면...”

“통합지원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YS-NET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에 하부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지원인데 그 지원이 영역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건강지원이라든지, 뭐 생활지원이라든지 학업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영역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3장이라든지 이렇게 뒤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씩 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우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 보장에 대한 사항이 열거되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이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장에서 통합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단체나) 시설에 대한 부분. 그렇게 가면 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도 딱딱딱 뭔가 체계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방적, 회복적 지원하실 때 CYS-NET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거면 그게 앞에 국가의 책무 그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한 그냥 연구기관이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보면 회복지원이나 예방적지원 부분은 어떠한 강제력도 있잖아요. 보호자한테 의무적으로 하거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뭔가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임무 부분으로 가야지만 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잖아요.”

제2장 청소년 우대 등의 ‘우대’라는 용어는 → ‘배려’라는 용어로 용어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제 2장이 청소년 우대? 뭘 우대하지? 사실 요즘에 우대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배려. 장애인도 요즘에 우대라고 안하고 배려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좀 순화해서 쓰거든요. 윈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원래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에서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으로 용어를 좀 다르게 쓰거든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실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은 사실은 실효성 문제가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13조 2항에 보시면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거 강제거든요. 의무 규정이거든요. 사실 의무로 할 수 있는 근거,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를 명문화 해놓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구동이 전혀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머지 내용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혀 없어요, 언급이.” “특별지원 지자체에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너네 지자체에서 이런 특별지원 대상해라. 그걸 실적으로 잡고 카운트를 하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마치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의 기존 지원 서비스 중복 제시로 차별화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특별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이 특별지원 대상이 사실은 위기청소년이라고만 해놓고 특별지원은 사실은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나… 너무 또 여기는 열어놨어요. 청소년 활동지원, 직업훈련지원, 학업지원은 사실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또 여기는 너무 펼쳐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면 이 법에 따라서, 규정 때문에 진행된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양한 서비스 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체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용 중복되게. 예를 들면 생활지원… 법무부 꺼는 여기 직업훈련 지원,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벤치마킹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혜를 받는 아동의 입장

에서는 뭐 지원해주는 부처는 많은데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혜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누락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가 많이 지원해준다고 서로 얘기는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령 체계인 거죠.”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 보면 이 14조의 내용이 지금 시행령 7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대상이 어마 무시하게 많아요. 초중등교육법 상의 대상, 보면 보건복지부의 대상, 이렇게 되게 많이, 특히 뭐 소년 사법 대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소송 비용 지원해주는 것까지 있는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가부에서 소송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열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구동되거나 구현되지 못할 규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지원법의 특화된 영역으로서의 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실 지금 여가부가 제일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저는 사실 16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가출 예방 보호 지원. 이거 아웃리치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별로 안하고 있잖아요. 오는 애들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되게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대검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들 받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 대상을 인계받는 형태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그 뭔가의 노하우 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제일 살아남으려면 사실 16조의 역할을 제일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밖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강조된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가부가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게 학교밖 아이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청소년 문제의 가장 출발점이자

가장 심각성을 제일 띄고 있는 곳이 바로 가출 영역이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 비행 시작 시점이 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비행 친구 사귀고 성매매,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다 이렇게 되는 진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의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계 규정은 딱 한 규정으로 끝나요, 그냥. 하나의 규정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청소년대책 만들 때, 그걸 제일 주장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특화해라. 그게 학교밖이다. 학교밖 애들 아웃리치 적극적으로 가고 그 아웃리치 할 수 있는 상담사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보면 석사 과정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일하다가 다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특화해라, 라고 되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한 센터에서 1년에 뭐 열 몇 명 아웃리치 된대요. 개가 여러 번 오면 여러 번 상담 실적이 잡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센터에 가출 청소년으로 자기가 아웃리치해서 데리고 오는 애들은 몇 명 안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고 싶지만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역을 개발해야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특화된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대 모드로 가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예방·회복지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이 더 세세하게,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 더 촘촘히 세세하게 규정들을 마련해야지만 뒤에 꺼하고 연결돼서 죽죽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의 규정만으로는 전 좀 사후지원, 필요한 지원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경우 지자체 상담 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거를 의무 지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대상들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민간 상담 센터나 이런 데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안되는 영역들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경찰이 협조하겠다 해서 훈방 대상자들은 이렇게 연계 받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사안이 상담 센터에 아이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면지 뭐 이렇게 돼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큰 파장이 일어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어떠한 관리

주체도 없잖아요, 지금. 인계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책임을 고스란히 상담 센터가 져야 되는 부분. 상담이 지자체에, 관련 기관들에 인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나 상담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탈, 비행 저지르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는 데가 그런 상담 센터 이런 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다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또 한다? 애들한테 재비행 예방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이제 특화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자체한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사회복귀적응을 위한 활동들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는 일반청소년들 돌보기도 너무 빠듯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무척대고 그냥 보낸다고 이게 제대로 구동될까.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지자체에서 돕겠다고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성인 될 때까지. 사후관리 서비스 하겠다면. 6개월은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할 때 기본 원칙이 6개월이거든요. 지자체가 이 아이들 잘 관리할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 법무부의 비행예방정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고. 통고하면서 이제 수강 명령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끔 명령을 내려요, 법원 단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강제성도 없는) 이걸 지자체에 시키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법무부가 지금 가져 왔거든요. 비행예방정책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비행예방정책 하고도 이게 중복돼요, 대부분.”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지원후견인 서비스 조항(21조)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차라리 저는 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21조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보호지원후견인. 사실 일탈, 비행청소년이나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 대부분 보호자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대신해줄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눈이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세부 규정은 령에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더라구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작 메인으로 뒤야 될 내용들은 되게 프트머리에, 되게 그냥 선언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실제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은 엄청 길게 장황하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 법이 왜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가족관계 회복이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눈이 돼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돼야 된다, 라고 했지 사실은 상담 뭐 이렇게 센터, 수련 이런 것들은 애들이 학교에서부터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서비스가 끝났으나 여전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저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과 관련된 부분, 여성, 여성과 관련된 부분, 성적 지향 부분. 이런 것들은 못 건들이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이거를 전체로 가족단위로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건 쉽잖아요, 여가부가.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 지역 단위로 들어갔을 때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에 노출돼 있는. 학교의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법 단계에서 끝나고 온 대상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다시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단계에 오는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가부가 주력해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후관리 부분은 발굴하면 좋은데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어요.” “쉼터의 노하우가 되게 크잖아요, 이걸요. 그런데 이 쉼터를 특화할 수 있는 쉼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 재활 치료 끝나서 이제 그 쪽 보건복지부 영역의 서비스가 끝난 대상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소년 사법 단계에서도, 소년 사법 단계에서 소년원 출원한 애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뭐 6개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은 거의 지자체에서 방치되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쉼터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6호 처분 시설이든 1호 처분 시설 아이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할 대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사실 여가부에서 주력해서 해 주면 특별이나 예방·회복적지원 이 쪽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돼 있죠.” “대상 발굴도 쉽잖아요. 그 쪽에서 넘겨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한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4항 보호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이 내용이 누락된 부분 또한 지적되었다.

“19조에 있는 거요. 그래서 보니까 19조 관련해서 법 4항에 보면 선정 기준 및 이런 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없어요. (2019년 3월에 들어가서) 아, 그랬구나. 시행령도 못 만들었구나.”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특화된 쉼터 개발 및 서비스 배정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사실은 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대상 애들이 지금 많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절실하게 쉼터가 필요한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숫자가 차서…) 그쵸. 그리고 대상들도 받기 까다로운 대상들이니까 인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여성개발원 거기서 중심이 돼서 그 박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구를. 그걸 특화하는 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합 체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장애와 관련된 특화 쉼터, 뭐에 대한 특화 쉼터,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특화 쉼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기도 안에서 그거를 큰 프리미엄을 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이제 딱 왔을 때, 그 대상이 왔을 때 애를 어디로 보낼 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 메인 센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번에 자문 한 번 갔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가부가 이걸 해주면 좋잖아요, 여가부가. 경기도가 할 게 아니라 여가부가 어떤 대상이 어 여기서 끝나서 딱 왔어, 애를 어디 보내지? 어 우리 쉼터 여기에 이게 특화돼 있어, 여기로 보내 줄게. 그러니까 서비스 수혜자가 될 사람들에게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움직이는 쉼터가 아니라 애들의 기호에 맞는 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쉼터는 되게 잘 되는데 안되고 있는 쉼터는 진짜 어려운 이런 거니까 이게 좀 골고루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이제

쉽터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이제는 좀 질적인 향상이 됐으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 법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복지시설을 그냥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렇게 하는,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가지 말고 각각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요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쉽터에 지원서비스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거를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여가부가 해주면 진짜 잘하는 거겠죠.”

아동·청소년 복지전문가인 D교수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그 내용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체계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의미가 있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개정될 때 제가 관여를 했는데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법은 너무너무 좋죠. 막 의미가 있지.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걸 보면 현실에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있는 건데 작동하지 않는. 이거를 움직이려면 저는 이제 여기 안에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많고 이래야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리더십을 갖거나. 그런데 상담복지지원센터가 리더십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자기네들도 survive하기 힘든데 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전담공무원도 없고.” “이거 뭐 법령 정비하는 작업이 뭐가 필요해. 법령 구조는 잘 돼 있다구요.” “복지지원법 내용이 제가 보기엔 나쁜 내용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 그 자체로는. 그런데 작동하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게 맞죠. 작동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많거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인력이 있거나 이런 건데 지금 아무 것도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뭐 정 안되면 주든지. 그게 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인지 법하고 상관없이 다른 쪽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젠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A교수에 이어 D교수 또한 「아동복지법」과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또 다시 지적되었으며 관련하여 사실상 18세까지 아동·청소년 연령이 중복되는 두 개의 법(「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서로 다른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만들어지고 구동됨으로써 생기는 격차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아동복지법을 따르는 게 애들한테는 더 받을게 많기는 하죠.” 양육 시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쉼터를 나온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여기도 20세 넘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 그리고 보호는 종료됐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그러니까 각각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거나.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서비스 격차가 크거든요. 이 쪽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립지원관은 너무 협소한 내용이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립 수당을 받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받고. 그런데 애네들은 아무것도 못 받잖아, 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해당하는 쉼터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거지원도 안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안돼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면 나 같으면 쉼터는 절대 안 가지. 곧 죽어도 아동복지시설에 붙어 있지. (애들이 쉼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보같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 정보만 정확하게 알면 조금 힘들더라도 2년 버티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립수당도 나오고 자립정착금도 나오고 지금 이런 주거지원금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양날의 검인 게 약간 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면 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든 양육 시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거의 18세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들어가 가지고 2년 버티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자립 정착금도 있고 자립 수당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배치가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부모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받아주면 안 되죠, 원래는. 분리시키지 말아야 될 아이들까지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양육시설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받아야지 되는 게 맞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양육시설이 아니라 치료시설이 돼야지 되는 건데 이 쪽도 치료시설 하기에는 인력이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부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 측면에서는, 그 부처의 밑에 있는 시설에 있고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법학자인 E 교수 또한 청소년관련 법령과 아동관련 법령의 관할 부처 이원화와 관련 법령 분리로 중복 및 연계부족이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 이원적으로 나뉘어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관할이 다르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보여 졌거든요.”
“우리나라는 크게 아동하고 청소년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담당 부처가 달라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관할로 되어 있는데 아동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연계성이 없는 형태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연계가 안돼서 흠결된 부분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봐요.”

또한 E교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성이 다르거든요. 소년법은 형사법이잖아요.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많이 규정들을 안 두는 게… 보충적인 거잖아요. 가장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형법도 그렇고 그걸 실현하는 게 소송법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 특별한, 소년에 대한 특별한 게 소년법이기 때문에 규정을 방대하게 안 만드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행정법이나 이런, 이게 인제 복지니까 이걸 되게 자세하구요, 독일도 양이 훨씬 달라요. 굉장히 자세하고, 형사법은 문장도 짧아요. 근데 이 복지법 이런 거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넣어도 제가 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들은. 특징이 달라서 그래요. 형사법이 그래요, 형사법이 짧아요. 명확하게 하고 짧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들은 그럼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또 여지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여지도 남겨두고… 그런데 복지나 이런 거는 자세한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학자인 E 교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물론 청소년관련 모든 법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국(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동일한 명칭의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법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체계 추진을 보다 체계화, 효율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법전 8권에 ‘청소년청’이라는 국가 기관이 모든 지역 단위로 다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로. 다 동일한 명칭이에요. 애네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이라는 개념인데, 물론 재정 지원은 중앙에서 반, 지자체에서 반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동일한 명칭의 그냥 ‘청소년청’이에요. ‘청소년청’이 각 시군구, 우리 형태로 보면 시군구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시군구에 다 동일하면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이 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동일한 국가에서의 지원 형태가 다 간다는 거예요. 지자체에다 맡겨 놓으면 형태도 다 다를 수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나타나고… 저는 이것을 컨셉을 또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면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인복지도 지역불균형이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생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풍습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화나 뭐를 기준으로 세워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통합도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별로의 뭐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서 이것을 중앙 부처에서 그냥, 여가부든 어디든 중앙 부처에서 이걸 통합지원 체계를 가지고 청이든 뭐 형태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소년청’이라는 걸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데 다 보내니까 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법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앙에서 딱 컨트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소년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범죄소년의 범죄성보다 청소년성을 강조하고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독일법의 사례를 인용하여 소년법과 아동청소년관련법 간의 정보공유, 연계의무, 통지의무 등을 보다 명문화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서비스 간의 연계과정에서 정보단절로 인해 불필요한 상담, 조사 등을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뭐가 문제가 제가 되냐 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드는 생각이, 청소년복지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법무부에 있는 소년법하고는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1호 처분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더라고요. 31조 4호에 보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6호 처분이고. 단어 그거 하나 들어간. 그러니까 결국에 소년법 상에 있는 보호처분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법 상에 있는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는 시설을 그냥 소년법에서 이용만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는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을 하는데 국가에 있는 시설들 중에 이용하겠다, 라는 컨셉에서 간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했던 사회법전 8권에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이 자체에서 굉장히 소년법하고 연계성이 커요. 그러니까 범죄소년이잖아요. 범죄소년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법에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보고자 하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거, 형사처벌 안하는 보호처분인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 그러면 관련 규정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컨대 요거할 때는 통보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양 쪽에다가. 복지법에. 그래서 뭐 요런 시설에서는 애가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통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소년법에서 보면 이런 보호 처분도 나중에 변경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지하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6호 처분을 보내서 아동복지법을 보냈고, 1호 처분해서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보냈고 한 다음에 요 복지지원시설에서 애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뭐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니. 못 찾았어요. 있어요? 소년법에... 못 본 것 같은데. 보호처분 시설 장이 보고를, 의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판결문에서 이행 그런 걸 하나?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집행 형태로 가는 건가... 법률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하위 뭐가 있나요? 소년법에도 보내는 것만 있고 그 시설에서, 법 자체에는 없어요. 매뉴얼에만 있고 법적 근거는 없는 거구만요.”

공무원 G는 현재 한 개의 조문으로 처리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 체계화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본법도 아닌데 구체적인 어떤 지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뭐 교육적 선도라든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사실 되게 큰 폭지의 법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조문의 하나로 처리가 돼 버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법안이어야, 법안의 모습이라면 하나의 장이나 절로, 장 정도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화시켜야 되고 더 좀 풍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여기 안에 위기청소년이라는 모든 개념으로 뭉뚱그려져 버려서 더 담아져야 되는데 못 담겨 있다. 유형별로 별도의 장이나 절을 만들어서 새로 이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이나 지원 체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복지지원법이 좀… 게다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안에 복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 네, 특별지원 하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 자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요새 또 굉장히 자립이 핫이슈인데 여기 지금 자립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요, 이 복지지원법에는. 자립에 대한 규정을 아동복지법도 거기 이제 확대 문제가 생기면 확대 관련된 어떤 한 장이 생겨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누가 컨트롤 하고 누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갔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이 위기청소년이라는 그, 통쳐 버려서 세부적인 어떤 유형별, 문제 유형별로 새로운 그런 대응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립과 같으면, 아동복지법도 지금 자립을 굉장히 강조해서 분법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립이 되게 핫이슈인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오히려 저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 자립과 관련된 내용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장의 범주 간 균형을 고려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는 5장, 이게 사실은 복지지원법의 핵심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라는 게 새로이 작년엔 개정이 돼 가지고 들어온 왔는데 이게 그렇게 내용이... 전혀 뭐 앞에 위기청소년 지원과 뒤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과 교육적 선도가 5장, 6장으로 각각 한 장 씩인데 사실 내용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한 장씩 구성될 수가 없어요. 위기청소년 지원이 훨씬 중요하고 커야죠. 교육적 선로도 결국은 위기청소년 지원의 한 유형일 뿐인 건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는 이 장 자체가 되게 그거 한 거죠. 부실하게 뭉뚱그려져 있다. 게다가 건강지원이랑, 난데없이 건강지원이랑 위기청소년 지원이 동급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기는 난데없이 건강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나머지 뒤에서는 갑자기 또 모든 포괄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건강은 위기청소년 지원의 하나의, 그런데 이걸 또 위기 청소년 지원도 아니야. 일반적인 건강…”

청소년건강지원 이외에 심리·정서 지원 등 보편적 지원 내용이 보강될 필요성 또한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인데 건강 보장 내용만 있어요, 건강진단. 이게 그렇게 청소년한테, 우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유일한 거의 그거잖아요, 독특한 내용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 보장이 들어갈 거면 청소년의 건강 보장 외에 청소년의 뭐 경제 보장이라든지 청소년의 뭐 정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위기청소년, 그러니까 건강지원은 보편적인 청소년 지원이라면 보편적인 청소년 지원할 게 건강지원 밖에 없느냐. 그러면 뭐 복지지원 쪽에서 할 만한 게… 아님 뭐 진짜로 모두 다 정서적, 모두 다 상담을 받게 도와줄 수 있다면 건강지원 해주는 것처럼 상담서비스에 대해선 다… 기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고치는 차원이라면 뭐 건강, 신체적인 건강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서지원까지도 좀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법 지원 대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다.

“다른 법은 명확해요, 대상이. 아동복지법은 급여 대상, 빈곤 아동, 뭐 누구는 어떤 아이들,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요, 법에 다 카테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정해지지 않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지지원법에서의 위기청소년이, 하다 보니까 다른 법에서 1차적으로 다 하고 있는… 저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 아이들도 관련된 법이 있어요. 학교폭력특별법이 있고, 뭐 빈곤 아동도 법이 있고, 또 뭐 청소년보호법이 또 있고, 학교밖청소년, 학교밖도 따로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를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또는 저위기·고위기별, 또는 생애주기별 등으로 범주화를 확정된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을 구성하고 각각의 지원과정, 단계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저는 위기청소년이라고 합쳐 있는 것보다는 위기청소년의 어떤, 생애주기별로 구분을 하든지, 뭐 발견부터 실제 보호했을 때 자립,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차별화해서 법체계를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뭘로 할 거냐, 이 사람들이 무슨 생애주기별로 할 건지 아니면 애네들의 유형별로, 애네들이 고위기냐 저위기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친구들의 사회적 배경, 위기청소년이나 뭐 아니면 이제 나이가 차서 자립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정은 있지만 뭐 위기냐, 가정이 없지만 아예 가출해서 가정이란 분리된 애들이나 이런 식의 유형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연구가, 그래서 연구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더 단계화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공무원 E는 제1장 총칙의 구체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거 봐요. 목적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법이 어딴어. 목적이 청소년의 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해서 뭐 보호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게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 나 이런 목적은 처음 보네요, 또 진짜.”

(3) 추후과제

미래지향적 법 정비를 위한 추후과제로 A 교수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생활을 반영한 전문적 자립지원 서비스 가능 시스템이 마련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담당 요원의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렇듯 국가의 정책도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이 어떤가, 자립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이 내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자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지원법은 자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말하는 양육시설의 경우는 자립 담당자가 있어요. 자립지원 요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년 간 사후 지도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고 나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쉼터에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 친구가 자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쉼터에 갔을 수도 있고. 쉼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제대로 서비스 안하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 쉼터에 왔던 친구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 들어올 때 마치 영수증에 정보이용동의서 쓰도록 하듯이 너 이 서비스 받는 데 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하다. 할 때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에 동의하느냐, 누가 뭐 반대한다 그러겠어요. 동의한다 그러면 그 때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단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들, 사후 지도 같은 것을 강조하고 그 직원의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에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없어요.” “두 번째, 청소년의 경우 요즘 자립을 강조하는데 자립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어지는데 쉼터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챙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준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복지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개정해 가지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 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이 서비스가 헌법 상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주는가. 수준 유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든 청소년복지든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방향이.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수당도 주고 취직하면 무슨 공제도 해주고 행복주택도 주고 이러는데 그 청년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어떤 서비스,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거죠. 서비스 기준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에 맞아야 된다.”

정보화 기술의 확산 및 발달에 발맞춰 웹 기반 정보화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신설하여야 한다고도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웹 기반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면 정보화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야 해요.” 이런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예요. 활동진흥법에… 자원봉사센터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정보센터. 그걸 지금 활동 무슨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도, 상담복지센터도, 어느 곳이든 쉽게 말해서 웹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웹 기반 서비스는 지금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웹 기반 서비스를 그대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어요. 이 쪽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좀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프랑스의 사례가 있으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대상을 24세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추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다른 법에서 인제 그들은 다르겠지. 왜냐하면 또 이거를 너무 또 늘려 놓으면 성인이라 그러면서 투표하고 참여하고 다 한다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9세에서 24세를 바꾸지 않는 한 24세까지만 가지고 가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24세면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을 돌려야지 여기까지 늘리면 여기 있는 애들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컴퓨터 요즘 20대도 많이 온다는 거. 그래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여가부에 전화까지 온 거예요. 애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24세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24세라는 나이도, 우리가 법으로 24세를 했지만 24세 하고 한 달 차이의 25세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내 성적 지향 배려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는 이제 지금 아동권리협약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의 법체계 영역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 성적 지향 분야예요. 성 소수자라든지 다른 성의, 제 3의 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쉼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3의 영역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강이… 지금 그래서 소년원 쪽에서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의, 민감한 상황이라든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가이드나 매뉴얼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각 쉼터에서는. 아이들은 실제로 인터뷰해 보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의 규정들은 이런데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순 검진이 아닌 환경권 접근을 통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건강권과 관련된 얘기도 단순히 뭐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환경권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아동권리협약도 오번에 권고사항들이 온 거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아이들 교실 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슴기 살균제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여기에서도 영역 중에 건강권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강권의 접근이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담기면 내용이 좀 더 발전적으로, 다른 부처의 법 보다는 발전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법을 관할하는 부서가 통합되어 “(가칭)아동·청소년가족부” 등으로 구성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통합이) 어렵죠. 부처가 통합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그래서 뭐 아동청소년 가족부 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좀 분리돼서 여가부가 좀… 내가 보기엔 여성은 위원회로 남고 여기서 다 가져가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여성부를

때고 가족, 청소년 요 쪽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아동청소년가족부. 이게 제가 제일 원하는 그림인데…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유럽 쪽 나라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궁극적인 그림은 아동청소년가족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면 좋겠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불편한 구조가 어느 순간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상태가 계속 되는데 이런 불편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제 움직인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합쳐질 것 같은데 그게 뭐 언제 어느 순간 될 거라고, 갑자기 오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 변화들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이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어디든지 해야 되고.” “부처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 계속 수세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E 교수는 독일의 아동·청소년법 통합 사례를 들어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통합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각지대 해소, 중복 부분 해소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독일이 이제 독일 사회법전을 만들면서, 개네가 사회국가잖아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국가인데 그러면서 사회복지는 1권부터 뭐 2권, 3권 막 이렇게, 사회복지 1권은 총칙 규정이고요 개별적으로 어느 영역 이렇게 쪽 나가거든요. 그런데 8권이 아동청소년 파트예요. 그리고 12권이 장애인 파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회법전을 하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딱딱 나눈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애네도 보니까 6,70년대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별개로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회법전 만들면서 90년 인가에, 제가 자료 정리했는데, 요걸로 통합시켜서 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 놨더라고요.” “애네(독일)도 하다 보니까 20년 걸렸더라고요, 통합하는데. 법. 따로 따로 있어서 90년에 만든 게 60년대부터 얘기 나와서 90년에 통합시켰더라고요. 60년대 후반에 나오기 시작해서 법 만들고 통합법 지원 만들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구요.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법으로 통합된 건 90년.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있었겠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독일 사회법전 같은 경우는 하나로 법이 합쳐 있으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있어서 연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령을) 구분은 해요. 구분은 하는데 같은, 예컨대 지원이나

뭐 이런 거에서 공유를 해요.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동복지법 보니까 18세 미만 자라고 해서 또 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 준용해서 보니까 9세 이상 24세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9세에서 18세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9세에서 18세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보는 거고,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보는 건데 독일은 어쨌든 14세로 나누더라고요, 아동을. 개네가 초등학교까지, 대충 1년을 더 다니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를 아동이라고 하고, 중학교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런 개념. 우리나라 사회개념 하고도 사실은 맞잖아요. 독일 그렇게 해놓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24세까지 최대한 가게 되는데 독일은 27세까지 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도 성인은 18세 부터인데 복지지원의 청소년 개념에서는 27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18세 이상은 청소년이란 말은 안쓰고 성년인데 뭐 젊은 성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필요하면 그 청소년 때 지원했던 것들 계속 지원, 같은 지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킷, 차일드부터 같은 쪽 27세까지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체계적인 것 같다, 라는. 법에서도.”

또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되기 위해 청소년을 보호 중심의 ‘단순한 복지수혜자’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인정하는 ‘능동적 자원’, ‘지원의 객체’로 보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내용과 구조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자료에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호 중심,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보호, 청소년보호법 뭐 이런 보호. 그 다음에는 복지. 복지 다음에는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렇더라고요. 보호나 복지까지는 청소년 자체의 주체성을 인정 안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거는 애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애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뭘 하면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고, 부모한테 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지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 마을 자원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이 원체 이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한 방향으로, 뭐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노인 돌봄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이 지역 안에서 모든 게 커뮤니티 지역사회 안에서 돌아가는 거. 지역사회에서 이 청소년복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좀 담기면 좋겠어요. 결국엔 선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한데… 결국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안전망이라는 게 결국은 이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지역사회 자원을 공동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그걸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통합지원체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에 대한, 되게 뭐랄까 음… 법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필수 연계 기관이 뭐다, 이렇게만 나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청소년안전망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애네들의 건강한 성장을 모두 다 마을이 지원한다 라는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 — V. 외국의 청소년 관련법 사례

- 1. 독일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 2. 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 3. 일본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1. 독일의 청소년관련법 사례²³⁾

1) 개요

(1) 청소년정책의 근본

독일의 청소년 관련 법령은 독일헌법의 3개 규정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독일헌법 제6조에 규정된 가족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제20조와 제28조에 규정된 사회국가이다.

독일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그것의 실행을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독일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²⁴⁾

독일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헌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 헌법질서는 헌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모든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헌법적 질서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질서라고

23) V장1절 집필자 :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24) Konrad Hesse, 2001, 통일 독일헌법원론. p.285.

말해진다.²⁵⁾ 사회적 법치국가 혹은 사회국가의 원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평등의 현실적 전제조건들이 확보되는 것을 요구한다.²⁶⁾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데, 먼저 물질적인 최저보장이 요구되고,²⁷⁾ 그 외에 물질적 여건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보장까지 포함된다.²⁸⁾

사회국가인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는 크게 2가지(최저보장급여와 추가보장급여)로 구분되는데, 첫째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장의 급여에는 전쟁피해자부조, 망명신청자지원급여, 기초보장급여가 있는데, 기초보장급여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사회부조가 있다.²⁹⁾ 둘째, 추가보장의 급여에는 아동·청소년지원, 취업훈련지원, 부모수당, 장애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양육비 선지급, 모성수당, 전쟁피해자 지원이 있다.³⁰⁾

독일헌법의 가족보호규정과 사회국가규정에 근거한 독일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청소년의 양육은 부모가 일차적으로 담당하는데, 청소년의 양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의 청소년지원이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³¹⁾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한다.³²⁾

25) Konrad Hesse, 2001, 통일 독일헌법원론. p.118.

26) Hilgendorf, dtv-Atlas Recht 1(Band 1), 2003,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S. 97.

27) Hilgendorf, dtv-Atlas Recht 1(Band 1), 2003,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S. 97.

28) Degenhart, 2015, 독일헌법총론. p.348.

29)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5.

30)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5.

31)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p.31.

32)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p.32.

독일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구분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동일한 범주에서 보호한다.³³⁾ 1세를 기준으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고, 3세를 기준으로 유아와 아동을 구분하고, 14세를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18세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성년을 구분하면서도, 27세 미만의 성년자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국가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2) 청소년지원의 주체

① 부모

독일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양과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독일헌법 제6조 제2항). 독일민법 제1589조 이하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친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친권은 한편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신상에 관한 친권),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재산을 보유하고, 증대시키고, 경우에 따라 재산을 이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재산에 관한 친권).³⁴⁾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상에 관한 친권의 행사방식은 민법에 몇 개의 일반규정만이 있을 뿐 친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교육방식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점차로 자기책임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고, 교육문제는 자녀와 대화하여야 하는데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독일민법 제1626조 제2항). 신체적 체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 기타 비인격적 조치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독일민법 제1631조 제2항). 다만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 친권자의 임무이기는 하나,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임무를 친권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이 친권자를 지원하거나 통제하기도 한다.³⁵⁾

33)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62.

34)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

② 가정법원

청소년지원의 주체로서 친권자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는 먼저 가정법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과 관련해서 통제적 기능을 행사한다.³⁶⁾ 특히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나 재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러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독일민법 제1666조, 제1666a조, 제1667조). 자녀의 복지나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 가정법원이 친권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³⁷⁾

첫째,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복지의 위태화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지속적 발달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우려가 존재하거나 자녀의 재산에 대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복지의 위태화가 친권의 남용(예를 들어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 수술에 대한 동의거부, 범죄로 유인 등), 방임, 기타 부모의 과오나 제3자 행위의 결과이어야 한다.

셋째, 부모에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나 능력이 결여되어야 한다.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위험방지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고, 가정법원은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친권을 일부 또는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최우선 임무는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제하고, 청소년복지에 관한 인식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개입을 하는 것이다.³⁸⁾

③ 청소년청(Jugendamt)

청소년지원의 국가기관으로는 가정법원 외에 청소년청이 중요하다. 청소년지원의 최우선 임무는 사회 교육적 제안과 급부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을

35)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6.

36)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8.

37)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9.

38)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8.

지원하는 것이다.³⁹⁾ 청소년지원의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8권에 있다. 사회법전 제8권을 이루고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Sozialgesetzbuch, VIII. Kinder-und Jugendhilfe)이 독일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지원 혹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법이다.⁴⁰⁾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민간기관이나 종교기관도 함께 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인 청소년청(Jugendamt)을 지방자치단체지역에 설치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민간 복지기관을 지원한다.⁴¹⁾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대한 통제에 주요한 기능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청은 급부제공에 주요한 기능을 두고 있다.

청소년청에 의한 지원은 사회 교육적 급부제공이라는 임무와 복지적·통제적 임무로 나뉜다. 청소년기관이 이중적 지위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조에서 볼 수 있듯이 급부(Leistungen)와 그 밖의 과제(Aufgaben)으로 구분되어 규정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²⁾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39) Meier/Bannenberg/Hö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14.

40)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청소년복지에 관한 협의의 「청소년 기본법」인 반면, 광의의 「청소년 기본법」은 민법 중 가족법·입양중재법(Adoptionsvermittlungsgesetz, AdVermiG)·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등이 포함된다(김명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45.).

41) 김명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63.

42) Meier/Bannenberg/Hö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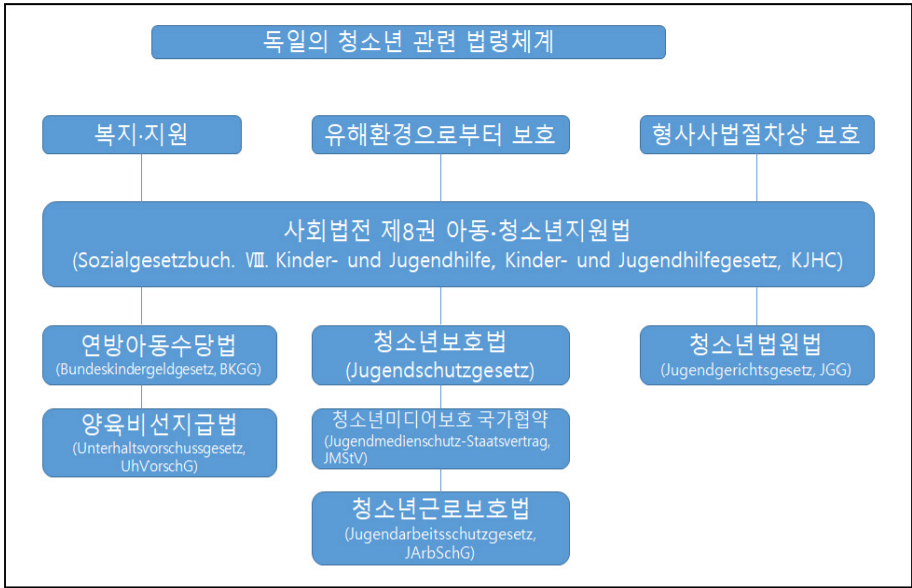


그림 V-1 독일 청소년관련법 체계

2) 세부 법령 주요 내용

(1)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C)

① 의미와 제정과정

1990. 6. 26. 제정된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99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동·청소년지원법은 현재 독일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지원 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법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 복지급부에 대한 법적 청구권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며,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인 사회국가적 급부의 표준에 따라 보장되도록 한다.⁴³⁾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청소년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18년 청소년청(Jugendam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⁴⁴⁾ 청소년복지에 관한 시초 법률인 독일제국청소년복지법(das deutsche Reichsgesetz für Jugendwohlfahrt,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RJWG)이 1922. 7. 9. 제정되어 1924. 4. 1. 시행되었다. 독일제국청소년복지법은 바이마르 시대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는데, 질서유지의 정책적 측면과 공적 부조의 성격을 포함하였고, 청소년청(Jugendamt)에 독립적인 사회 교육적 역할을 부여하였다.⁴⁵⁾ 독일제국청소년복지법에 수반되어 1923. 2. 16. (우리의 소년법에 해당하는)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이 시행되었다.

독일제국청소년복지법은 1961년 전면 개정되어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이 1990년까지 그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복지법은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청소년을 구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만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고, 수급대상인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⁴⁶⁾

독일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상호간의 관련성 없이 개별적 법률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1960년대 후반 심각하게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편찬사업의 계기가 되었고, 독일연방정부는 1969년 사회법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독일연방정부가 밝힌 사회법전 편찬사업의 지침은 기존의 사회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에서 사회보장법 상호간의 내적 조화와 통일을 꾀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단순화하는데 있었다.⁴⁷⁾

43)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43.

44) 최종선, 2014,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희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p.306.

45)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43.

46)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편과 시사점. p.106.

1971년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법전 편찬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1975년 사회법전 제1권으로 사회법총칙이 제정되었다. 1980년 사회법 제8권에 청소년지원법을 편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입법되지 못하였다. 청소년지원은 사회보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사회·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이었다.⁴⁸⁾ 1990년에 이르러 ‘청소년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독일 사회법전 제8권에 함께 통일적으로 편입되었다. 청소년지원은 급여의 보충성 및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부조와 유사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지원제도가 사회법전에 편입되는 논거가 되었다.⁴⁹⁾ 사회법전 제8권을 구성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990. 6. 26. 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청소년복지법이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청소년을 구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만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던 것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수행주체로 보고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단순한 빈곤구제에서 나아가 폭넓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식의 전환이 반영되었다.⁵⁰⁾ 청소년이 스스로 발달과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지원 관련법의 중요한 임무로 보는 시각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⁵¹⁾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자기계발을 지원받을 권리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발달하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 제1항).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라는 기관을 통해 한편으로 청소년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이 관련된

47)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p.28.

48)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p.29.

49)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p.237.

50)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편과 시사점. p.107.

51)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편과 시사점. p.107.

'각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복지급여(지원기관)

㉞ 대상

㉠ 일반 청소년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에 대한 급여제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급여의 이행을 담당할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관의 사회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⁵²⁾ 청소년지원의 급부는 공공 청소년지원단체 및 민간 청소년지원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아동·청소년지원법 제3조 제2항), 구체적인 급부의 이행은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⁵³⁾

청소년복지급여의 대상은 아동(Kind, 14세 미만의 자), 청소년(Jugend, 14세 이상 18세 미만), 성년(Volljähriger,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Junge Menschen, 27세 미만)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청소년지원을 미성년자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7세 미만의 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18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취급하지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을 최대 27세 미만의 성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에게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사업(Jugendarbeit)이 제공되는데, 청소년사업의 중점분야는 학교 밖 교육, 스포츠, 오락, 사교, 국제교류, 휴양, 상담 등이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 이러한 청소년사업은 27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적절한 범위에서 제공되기도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 제4항).

52)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0.

53)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0.

그 외에도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에게는 사회적 불이익을 보상하거나 개인적인 제약을 극복하도록 상당정도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제공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이 청소년사회사업으로서 학교 또는 직업 양육조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주거가 제공될 수도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 제3항).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즉 18세 이상에서 27세 미만까지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격적 발달을 위한 지원과 자기책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지원이 제공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1항 제1문). 지원은 원칙적으로 21세까지 제공되지만, 개별적으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제공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1항 제2문).

㉞ 장애 청소년

양육지원 청구권과 달리 정신적 장애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권리는 청소년에게 직접 부여되는데, 정신적 건강의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35a조 제1항). 지원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외래형태, 탁아 시설이나 부분입원시설, 적합한 위탁인에게, 종일시설에서 수행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35a조 제2항). 그 밖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법전 제12권에 의한 적응지원이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⁵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양육지원은 교육과 돌봄이라는 2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구분하여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3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청에서 베이비시터를 소개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54)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6.

지원법 제31조). 이것은 청소년(아동)에 대한 지원형태의 하나로서 사회 교육적 가족지원에 해당하며 청소년청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장애 아동과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유치원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㉔ 외국국적 청소년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 제1항은 모든 청년(*allen jungen Menschen*)에게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적용되도록 세계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청소년지원을 인권(*Menschenrecht*)처럼 표현하고 있다.⁵⁵⁾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6조에서는 외국인은 법률에 근거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6조 제2항)고 하여 재정적인 이유와 법정치적 이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급여를 제한한다.⁵⁶⁾

외국인이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독일에 일상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둘째는 독일에서의 일상적 거주가 합법적이거나 관용(*Duldung*)에 근거해야 한다.⁵⁷⁾

합법적인 거주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 유럽연합이주법(*EU-Freizügigkeitsgesetz*), 망명법(*Asylgesetz*)에 근거한 거주를 말한다.⁵⁸⁾ 체류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거주는 체류법 제4조에서 체류허가가 인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장기체류를 위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체류법 제6조), 일시적인 체류허가장을 받은 경우(체류법 제7조), 영구적인 체류허가인 정착허가장(*Niederlassungserlaubnis*)을 받은 경우(체류법 제9조), 유럽연합 영주허가장(*Erlaubnis*

55)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89.

56)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89.

57)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92.

58)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93.

zum Daueraufenthalt-EU)을 받은 경우(체류법 제9a조)가 포함된다.⁵⁹⁾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자녀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특이한 점은 합법적인 거주 이외에 체류법 등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주도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공을 위한 정당한 거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관용(Duldung)이라는 의미는 출국의무가 존재하지만 출국의무가 추방절차를 통해 집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⁶⁰⁾ 체류법 제60a조에서는 추방의 임시유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용(Duldung)이라고도 표기하고 있다. 체류법에 의하면, 국제법상의 이유,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독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특정한 외국인의 추방을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고(제60a조 제1항), 추방의 유예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된다(제60a조 제4항). 이때 추방유예의 증명서를 관용(Duldung)이라고 표현한다.

(4) 급여종류

청소년지원기관의 급여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장인 제11부터 제41조에 청소년지원의 급여(Leistungen der Jugendhilfe)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의 급여는 다시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Jugendarbeit), 청소년사회활동(Jugendsozialarbeit),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보호(erzieherischer Kinder- und Jugendschutz)이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 제15조)이다.⁶¹⁾

둘째, 가정에서의 양육지원(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이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에서 제21조).

59)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93.

60) Peter-Christian Kunkel, Jugendhilferecht, 9. Aufl., 2018, Nomos, S. 94.

61) 독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용어가 보육(Betreuung), 교육(Bildung), 양육(Erziehung)으로 구별되어 사용된다(유수연, 2012,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p.5.).

셋째,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지원(Förderung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이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2조에서 제26조).

넷째, 양육지원, 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 및 21세 이하의 젊은 성년에 대한 지원(Hilfe zur Erziehung,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이다(제27조에서 제41조).

㉠ 청소년활동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은 법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조치이다.⁶²⁾ 일반적 지원조치로는 첫째,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 청소년활동(Jugendarbeit)이 있다. 청소년 활동지원의 대상은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이고, 청소년활동의 중점은 학교 외에서의 일반적 청소년교육, 운동이나 놀이 등에서의 청소년활동, 근로·학교·가정과 관련된 청소년활동, 국제적 청소년활동, 휴양활동, 상담이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 제3항). 둘째,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2조에 청소년단체 후원(Förderung der Jugendverbände)이 있다. 청소년단체와 그룹의 독자적인 활동에 대해서 민간활동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셋째,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에 청소년사회활동(Jugendsozialarbeit)이 있다. 사회적 불이익의 조정이나 개인적 피해 극복을 위해서 상당한 후원이 요구되는 27세 미만의 청년에게 사회 교육적 지원이 제공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 제1항). 넷째,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4조에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보호(erzieherischer Kinder-und Jugendschutz)가 있다. 27세 미만의 청년에게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비판력·결정능력·자기책임감·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조치가 제공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 제15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지원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개별 주법에 유보되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5조).

62)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p.237.

㉠ 가정에서의 양육지원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에서 제21조에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헌법 제6조 제2항에는 아동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그것의 실행을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⁶³⁾

가정에서의 양육지원의 방식을 보면,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에게 결혼, 동거, 자녀와의 공동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가정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그 외에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임신 중인 부모에게 동거와 부모로서의 양육능력과 관계능력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 제3항).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 주법에 위임되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 제4항).

한편 동거, 별거, 이혼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정에서의 양육지원으로 제공된다. 부모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의 영역에서 상담을 청구할 권리가 제공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7조 제1항). 별거와 이혼의 경우에 부모는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하에서 부모의 보호와 책임수행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합의는 가정법원의 절차에서 조정이나 사법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7조 제2항). 가정법원은 미성년의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 별거와 이혼에 있어서 청소년지원의 제공을 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에 해당 부모와 자녀의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게 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7조 제3항).

그 외에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는 민법상의 부양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담과 지원을 청구할 수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18조 제1항),

63)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전형적인 가정 중심의 양육은 여성적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수단 중심적이며 부부 일방에 불합리한 설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2.).

자녀도 21세까지 부양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담과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8조 제4항).

㉔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지원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양육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탁아시설(Tageseinrichtung)은 아동이 하루 종일이나 일부를 거주하면서 집단으로 지원을 받는 시설을 말하고, 아동위탁시설(Kindertagespflege)은 위탁관리인의 집이나 보호권자의 집에서 적합한 위탁관리인에 의해서 위탁관리 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2조 제1항).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지원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1세 이상 3세 미만의 아동은 탁아시설이나 아동위탁관리시설에 다닐 권리가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4조 제2항).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은 탁아시설에 다닐 권리가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4조 제3항). 의무교육연령(14세 미만)의 아동은 필요에 따라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4조 제4항).

㉕ 양육지원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에 규정된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규정된 권리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이다.⁶⁴⁾ 청소년의 복지에 부합하는 양육이 보장되지 못하고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지원이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호권자는 청소년의 양육에 있어서 양육지원을 청구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 제1항). 양육지원 청구권은 보호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양육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되는데, 공적인 사회적 급부가 필요한 경우인지와 청소년이 보호권자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가 검토된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혹은 제3자의 비금전적 도움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양육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⁶⁵⁾

64)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4.

65)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4.

양육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개별적인 양육상의 필요에 따라 지원되고, 제공되는 방식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8조에서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 제2항). 구체적인 양육지원의 방식을 보면, ① 양육상담(Erziehungsberatung, 제28조)이다. 교육자, 심리치료사 등 전문인력들을 참여시켜 양육문제를 지원한다. ② 사회적 집단활동(Soziale Gruppenarbeit, 제29조)이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 집단활동에 의해 사회적 학습을 지원한다. ③ 사회 교육적 가정지원(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 제31조)이다. 가족과의 생활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자립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④ 집단에서의 주간 양육(Erziehung in einer Tagesgruppe, 제32조)이다. 청소년에게 주간에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장기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⑤ 종일부양(Vollzeitpflege, 제33조)이다. 청소년을 종일형태로 위탁가정에 장기간 위탁한다. ⑥ 기숙사양육, 기타 보호주거(Heimerziehung, sonstige betreute Wohnform, 제34조)이다. 기숙사나 보호주거에서 종일양육이 지원된다. ⑦ 집중적인 사회 교육적 개별보육(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제35조)이다. 예를 들어 주거부정, 마약, 매춘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현저한 개별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장기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⁶⁶⁾ 이러한 양육지원은 일반적으로 21세까지 제공되는데, 가정지원(제31조)과 집단에서의 주간 양육(제32조)을 제외한 양육지원은 21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청소년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청소년지원이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의 필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⁶⁷⁾

이와 같은 양육지원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급여로 이해된다.⁶⁸⁾ 그러나 청소년이나 양육권자가 이러한 양육지원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이나 재산에 위해가

66) Meier/Bannenber/Höfl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0.

67) 김영미, 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66.

68) Meier/Bannenber/Höfl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8 RN. 5.

있는데 부모가 그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가정법원이 취해야 한다(독일민법 제1666조 제1항). 특히 청소년지원기관의 지원과 같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가정법원이 취할 조치에 속한다(독일민법 제1666조 제3항 제1호). 공공의 지원에 의해서도 그 위험에 대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허용된다(독일민법 제1666a조 제1항). 가정법원판사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모든 조치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법원판사는 청소년법원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단지 시설위탁양육과 양육보조만을 명할 수 있다.⁶⁹⁾

㉔ 양육지원과 청소년법원법과의 관계

독일에서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소송절차의 특수성을 규정한 법률인 청소년법원법이 있는데, 청소년법원법은 우리의 소년법에 대응되는 법률이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범죄행위를 한 청소년이지만,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양육지원의 대상은 범죄를 행한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적절하고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이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 전체이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양육지원은 청소년법원법에서 취하는 제재(보호처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⁷⁰⁾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양육지원은 상당수가 청소년법원법에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육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법원법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3가지 유형을 예정하고 있는데, 첫째 양육처분(Erziehungsmaßregeln)이고, 둘째, (양육처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훈육처분(Zuchtmitteln), 셋째, 청소년형벌(Jugendstrafe)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5조). 청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은 준수사항의 부과(Erteilung von Weisungen)와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 신청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청소년법원법 제9조). 청소년의 생활

69)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8 RN. 5.

70)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3.

방식을 규율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촉진 및 보장하는 명령과 금지가 준수사항인데(박진애, 2017.10., p.11), 판사는 준수사항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의 거주(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1조에 규정된 사회 교육적 가정지원에 대응된다. 또한 청소년법원의 판사는 일정한 사람(보호조력자)의 보호와 감독을 받을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이것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0조에 규정된 교육 보조인 및 보호보조자에 대응된다. 그 외에 청소년법원의 판사는 사회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이것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종일양육과 기숙사양육에 대응된다.

특히 청소년법원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법원은 청소년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청소년법원법 제38조 제3항), 청소년법원의 판사는 청소년청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시설형태 또는 24시간 운영시설형태 등으로 양육지원을 부과할 수 있다(청소년법원법 제12조). 또한 청소년이 준수사항과 부담명령을 준수하는 여부를 감독하는 것도 청소년청에게 부여된 임무이다(청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아동·청소년지원법 제52조).

㉞ 다른 사회적 복지지원과 관계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지원은 최후의 사회적 급여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사회적 급여, 예를 들어 학교나 다른 사회적 담당자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지원이 후순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교육적 관점에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평가된다.⁷¹⁾

사회적 안전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은 원칙적으로 공공지원과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27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지원이 우선하고, 사회부조에 의한 급여는 보충적으로

71)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48.

고려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0조 제4항). 다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급부는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사회부조에 의한 급부를 우선하고 청소년지원이 보충적이라는 것이 독일행정법원의 입장이다.⁷²⁾

③ 각종절차참여 (감독기관)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급여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청소년청에게 청소년이 관련된 ‘각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감독기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장에서 청소년지원의 급여(Leistungen der Jugendhilfe)를 규정한 다음, 제3장에서 청소년지원의 기타 임무(Andere Aufgaben der Jugendhilfe)가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의 기타 임부는 청소년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승인된 민간기관의 참여가 인정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76조).

㉠ 보호조치

먼저 청소년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규정되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조에서 제42f조). 청소년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긴급한 위협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권자가 반대하지 않거나 가정법원이 적시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청소년청은 청소년을 보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조 제1항). 청소년청에게 후견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데, 청소년청은 급여기관이 동시에 아동복지가 위험한 경우에 보호권자에 대한 제도적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⁷³⁾

72)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49.

73)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7.

(나) 사법절차에서의 협력

청소년청은 사법절차에서 협력의 의무가 있다. 먼저 가정법원 절차에서의 협력 의무가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50조), 아동입양절차에서 상담 및 고지의무가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51조), 독일민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조력자, 위탁인 또는 후견인이 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55조 제1항).

청소년청은 청소년형사절차와 관련해서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서 협력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52조). 예를 들어 교육처분이 이미 개시되어 기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청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와 같이 청소년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일정한 급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청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지원급여가 고려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52조 제2항). 청소년 형사절차에서 청소년청의 협력은 청소년범죄의 영역에서 있어서 처벌과 양육이라는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④ 사회데이터 보호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규정을 직접 두고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61조에서 제68조).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모든 공사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62조 제1항), 정보는 당사자에게서 수집해야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62조 제2항). 수집된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저장될 수 있고(아동·청소년지원법 제63조 제1항), 공적인 청소년지원을 위해 수집된 다른 정보 들은 직접적인 사건관련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통합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63조 제2항). 개인적 또는 양육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 청소년지원 실행자에게 맡겨진 정보는 맡긴 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65조 제1항).

⑤ 비용부담

청소년지원을 위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지방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를 통해 지원되고, 재원은 청소년지원을 담당하는 관할기관의 행정 및 시설투자에 소요되며, 민간 복지기관의 재정보조금으로 제공된다.⁷⁴⁾

한편 아동·청소년지원법 제91조에서 제94조에는 수용급부 및 임시조치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전일제 수용과 임시조치 및 부분수용을 위한 비용의 분담금이 징수되는데(아동·청소년지원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청소년 지원의 담당기관이 지원비용을 담당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91조 제5항). 다만 국가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부담이 전환될 수 있다. 전일제 수용과 임시조치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신의 수입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도 자신의 수입에서 비용을 부담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92조 제1항). 청소년지원비용을 부담한 국가기관은 비용을 부담하는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진 청구권을 자신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95조 제1항).

(2) 기타 청소년관련 법률

①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1926년 ‘저속문서와 외설문서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제국법률(Reichsgesetz zur Bewahrung der Jugend vor Schund- und Schmutzschriften)’이 청소년보호법의 시초이다.⁷⁵⁾ 1953년 ‘청소년유해문서 반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74)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p.50.

75)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p.73.

Schriften : GJS)'이 신설되었고, 1985년 '공공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 : JÖSchG)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공공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유해 문서 및 미디어의 배포에 관한 법률'이 2002년 통합되어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 JuSchG)이 제정되었다.⁷⁶⁾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된 독일청소년보호법의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미디어분야에서의 청소년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과 미디어로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미디어(제3장 제1절)와 전자미디어(제3장 제2절)로 구분한다. 일반미디어는 형태별로 영화(독일청소년보호법 제11조), 영상물 또는 게임물(독일청소년보호법 제12조), 전자화상게임물(독일청소년보호법 제13조)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연령등급표시제도(독일청소년보호법 제14조)와 청소년유해 미디어목록제도(독일청소년보호법 제15조)를 통하여 유해물을 규제하고 있다.⁷⁷⁾

전자미디어에 대해서는 각 주에 유보되어 있는데(독일청소년보호법 제16조), 독일의 전체 16개주 모두가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소위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을 체결하였다.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 제13조에 따르면, 독일청소년보호법 제3장의 청소년보호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⁷⁸⁾

우리의 법률체제는, 예를 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전기통신기본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과 같이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서 각 미디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단일한 청소년보호법에서 각종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의

76)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p.74.

77)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p.75.

78)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p.76.

보호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유해미디어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대응에 장점이 있다.⁷⁹⁾

②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장급여와 최저보장에 속하지 않는 추가보장급여가 있다. 최저보장급여는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독자적인 아동양육비 지원체제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추가보장급여 중 부양아동 양육비용지원은 아동을 수급권자로 하므로 아동양육비 지원체제로 볼 수 있다.⁸⁰⁾

추가보장으로서 부양아동 양육비용지원은 바우처 형태와 현금급여 형태가 있다. 첫째, 보증을 제공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우처의 기본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생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양육비 지원체계(목시적 바우처 형태)는 ① 의무교육과정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취업훈련 지원, ② 장애자녀의 치료·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원, ③ 6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④ 양육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이용 비용 지원이 있다.⁸¹⁾ 이것은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아동양육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현금급여 형태에 아동수당과 양육비선지급이 있다.⁸²⁾ 가정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독일정부의 가정정책의 핵심인데,⁸³⁾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이다. 독일에서 1955년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은 당시

79)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p.92.

80)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8.

81)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6.

82)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5.

83) 국회도서관, 2012, 주요국의 영유아보육법. p.27.

셋째 아동부터 대상이었던 것이, 1961년에는 둘째 아동, 1975년에는 첫째 아동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⁸⁴⁾

현행 독일의 연방아동수당법은 1995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수당(Kindergeld)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18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첫째 고용관계가 없이 구직자등록이 된 만 21세 미만의 사람(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제1호)과 둘째, 대학교육을 마친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25세 미만의 사람이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2항). 2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25세 이후까지도 대상이 된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제3호).

2011년 말에 아동수당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이 있었는데, 아동수당 대상에 있어서 소득제한이 폐지된 것이다.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해서도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다.⁸⁵⁾ 아동수당금액은 첫째와 둘째 아동은 매달 204유로이고, 셋째 아동은 매달 210유로, 넷째 이상의 아동은 매달 235유로이다(연방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장애아동과 25세 미만의 대학생에 대한 아동수당액은 매달 204유로이다(연방아동수당법 제6조 제2항).

아동수당 외에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이 존재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외에 아동보조금을 지급하는데(연방아동수당법 제6a조 제1항), 개별 아동에 대해서 최대 140유로까지 지급가능하다(연방아동수당법 제6a조 제2항). 아동보조금은(실업급여 II를 지급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근로동기를 고취하여 저소득 가정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⁸⁶⁾

84)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7.

85) 김영미, 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67.

86) 김영미, 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67.

③ 양육비선지급법(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eistungen, Unterhaltsvorschussgesetz, UhVorschG)

독일에서 1970년대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 아동부양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선지급제도가 탄생하였다.⁸⁷⁾ 양육비선지급법은 198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에 있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출 비용 지원의 특징을 갖는다. 한 부모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지원법은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대한 특별법이다.⁸⁸⁾

양육비선지급권은 12세 미만이고, 한 부모와 동거하고, 동거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주어진다(양육비선지급법 제1조 제1항). 선 지급되는 양육비는 민법상 미성년아동의 최저부양비(민법 제1612a조)에 상응된다(양육비선지급법 제2조 제1항).

④ 청소년근로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

독일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데, 1974. 4. 12. 제정된 청소년근로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이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근로보호법 제1조 제1항), 그 중 15세 미만의 아동(Kind)과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r)으로 구분하는데 전일제 학업의무가 있는 청소년은 아동으로 간주한다(청소년근로보호법 제2조). 청소년근로보호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일정한 고용금지를 규정하고(제5조에서 제7조),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용·근로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에서 제46조).

87)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독일사례를 중심으로. p.49.

88) 김영미, 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69.

⑤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독일의 청소년법원법은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소송 절차의 특수성을 규정한 법률이고, 한국의 소년법에 대응되는 법률이다. 독일에서는 청소년형법(Jugendstrafrecht)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청소년법원법 제2조). 법률에 청소년형법의 특별한 개념정의는 없다. 다만 청소년법원법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⁸⁹⁾ 청소년이 행한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는 일반 형법에 따르고(청소년법원법 제4조), 청소년범죄라는 특유한 법률규정은 없다.

청소년법원법은 청소년법원에서의 소송심리에 교육적, 사회보호적 관점을 반영 시키는 제도⁹⁰⁾로서 법률의 목적상 교육적 사고가 우선시 된다(청소년법원법 제2조). 청소년법원법상 청소년(Jugendlicher)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는 청년(Heranzwachsender)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청소년법원법 제1조 제2항).

독일 청소년법원법은 1953년 8월 4일에 제정되었는데, 1960년대까지 청소년 형법은 교육보다는 처벌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정 논의는 청소년형법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으로 통일하여 대체하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⁹¹⁾ 교육강의, 대체 교육, 작업장 등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법원의 기존처분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근로자복지협회의 개혁안이 1970년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으로의 통일적 개선안은 청소년범죄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부딪혔고 중범죄 및 19세에서 21세의 청년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재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⁹²⁾ 이후 청소년범죄자와 일반청소년을

89) 박진애, 2017.10,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I. p.2.

90)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p.238.

91) 박진애, 2017.10,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I. p.6. ;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2 RN. 15.

통일적인 기준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과 청소년법원법을 모두 존치시키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양 법률에 수용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⁹³⁾ 이러한 노력은 1990년 제정된 아동·청소년 지원법에서 결실이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과 달리 국가의 급부행정법으로서 청소년들의 변화된 생활 상태를 감안하여 학교 밖의 청소년사업, 청소년보호, 청소년사회복지, 구체적인 교육지원 등에 적절한 법적 제도를 제공하고, 청소년법원법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⁹⁴⁾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처분이 명해질 수 있고(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1항), 교육처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훈육처분이나 형벌이 부과된다(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교육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 제1항), 청소년법원법은 범죄를 행한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지원법상의 청소년청은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소년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협력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52조).

청소년법원법 제38조에는 청소년법원의 지원(Jugendgerichtshilfe)이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법원의 지원은 청소년청에 의해서 수행된다(청소년법원법 제38조 제1항). 청소년법원의 지원은 피의자의 인격, 성장과정 및 환경에 대한 청소년청의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청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청소년법원은 처분으로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소년청의 보고를 청문하여야 한다(청소년법원법 제38조 제3항).

92)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2 RN. 15.

93)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2 RN. 15.

94) 박진애, 2017.10,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I. p.2.;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2 RN. 15.

3) 청소년관련 법령 간의 관계

독일의 청소년정책의 핵심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인데,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⁹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의 청소년 정책들은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고,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청이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⁹⁶⁾ 아동·청소년지원법이 독일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지원 혹은 청소년 복지에 대한 기본법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이 협의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면, 광의의 아동·청소년 지원법에는 그 외에 민법의 가족법, 청소년법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광의의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형법, 가족법의 공통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성장하여 살아가야 할 사회의 복지와 청소년의 복지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사회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⁹⁷⁾

협의의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민법의 가족법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작용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적 청소년보호’과 ‘법률적 청소년보호’로 구분된다.⁹⁸⁾

‘교육적 청소년보호’라는 것은 청소년과 부모, 기타 교육권자들이 청소년을 위협한 영향, 예를 들어 알코올남용, 마약남용, 게임중독, 사이버집단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지원 급여를 말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14조).⁹⁹⁾ 교육적 청소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95)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p.31.

96)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p.32.

97)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6.

98)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8.

99)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9.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적 청소년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는 청소년지원기관의 재량사항이다.

반면 ‘법률적 청소년보호’라는 것은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청소년을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말하는데, 개별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증명될 필요가 없고, 청소년이 청소년지원기관에 구체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일반적으로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행동방식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적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진다.¹⁰⁰⁾

법률적 청소년지원은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근로보호법, 형법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대표적인 법률적 청소년지원조치로는 ① 청소년근로보호가 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이 금지되고(근로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근로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② 청소년매체보호가 있다.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전하는 매체(잡지, DVD, 온라인 등), 예를 들어 외설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전쟁을 찬양하거나 폭력·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매체는 청소년에게 접근될 수 없게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1조 이하). ③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보호이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해로운 장소, 예를 들어 술집,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된다(청소년보호법 제3조 이하). ④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이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나 교육의무의 태만(형법 제171조), 성적 학대(형법 제174조, 제176조 이하, 제182조), 유기(형법 제221조 제2항)나 신체적 학대(형법 제225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¹⁰¹⁾

한편 청소년범죄자와 일반청소년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법원법이 병존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00)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30.

101)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30.

적절하고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교육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소년법원법은 범죄를 행한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지원법상의 청소년청은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소년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협력의무가 있고, 청소년법원의 지원은 청소년청에 의해서 수행된다. 청소년법원의 지원은 피의자의 인격, 성장과정 및 환경에 대한 청소년청의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청소년법원법과 아동·청소년지원법, 민법의 가족법은 결합되어 적용될 수 있지만, 각 법률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차이가 있다. 청소년법원법이 적용되는 연령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이어서(청소년법원법 제1조 제2항),¹⁰²⁾ 그 외 연령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법원법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⁰³⁾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시사점

첫째,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 인식과 지역시행기관의 통일이다. 우리의 중앙부처 명칭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독일의 연방정부부처명칭에 청소년(Jugend)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독일에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고, 그 아래 6개의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6번째 부서(Abteilung 5)¹⁰⁴⁾가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한다. 한편 우리의 각 지역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의 각 지역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라는 명칭의 기관이 「청소년 기본법」인 아동·청소년

102) 다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성인은 Heranwachsende(청년)이라고 하여 청소년법원법이 일부 적용되기도 한다.

103) Meier/Bannenberg/Höffler, Jugendstrafrecht, 2018, C.H.Beck, § 4 RN. 26.

104) 첫 번째 부서는 ‘Abteilung 2’라고 하여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고, 그와 대등하게 5개의 Abteilung이 존재한다[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lob/100814/eba44d0c71a4b2064035d5c0d1c6d431/pdf-organigramm-data.pdf>), 2019. 7. 12. 접속]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을 수행한다. 독일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중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청소년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통일된 명칭의 청소년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청소년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둘째, 아동 담당기관과 청소년 담당기관의 통일 및 「청소년 기본법」의 실효성이다. 우리의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에 대한 기본법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 기본법」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여 담당 중앙부처가 이원화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기본법 하위에 (특히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 다수의 개별적인 법률이 존재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청소년지원관련 기본법이 사회법전에 편입되어 일관된 복지체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독일사회법전 제8권을 이루는 청소년지원관련 기본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9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지원법에는 다양한 급여제공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제공을 위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계성 및 청소년과 초기 성년의 연계성이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에 대한 기본법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담당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독일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법률상 18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취급하지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최대 27세 미만의 성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27세 미만의 청년(Junge Menschen)에게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사업(Jugendarbeit)과 사회적 불이익을 보상하거나 개인적인 제약을 극복하도록 상당정도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제공된다.

넷째,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체성의 인정이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나 보장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교육 및 고용조치까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섯째, 장애 청소년과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청소년지원의 대상을 세상의 모든 청소년으로 상정하고, 장애인과 외국인을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사고가 「청소년 기본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범죄를 행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법원법에서 별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청소년법원법의 제재는 「청소년 기본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지원법상의 청소년청은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소년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여섯째, 청소년정보에 대한 관리이다.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수집의 방식 및 수집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이 청소년 관련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2. 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¹⁰⁵⁾

1) 개요

(1) 청소년관련 법령의 구조

미국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관할하는 연방기관은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과 가족 행정(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의 하위 부서인 “가족과 청소년 서비스 국(families and youth services bureau)”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¹⁰⁶⁾.



* 출처 : 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인출일 : 2019.7.2.)

그림 V-2 미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할 부서

105) V장 2절 집필자 : 박선영교수(한세대학교)

106)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cf.hhs.gov/>.(검색 : 2019년 7월 2일)

청소년 관련 법령의 용어도 청소년(youth)로 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용어인 child(아동)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년의 연령은 법령에 따라 10세~18세 혹은 21세나 23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방기관과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¹⁰⁷⁾ 청소년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관련된 명확한 법령(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밖 지원법)이 제정된 반면, 미국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안 중심의 법령이 제정되고 이 과정에서 큰 법령 안의 세부적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 지원과 처우를 다루거나 혹은 아동청소년 관련 단독 법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본 절에서는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령으로 30개의 연방법을 검토하였다. 청소년과 관련된 연방법령을 검토하여 표 V-1과 같이 교육, 복지, 착취와 위기보호, 소년 사법, 업무 조율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¹⁰⁸⁾. 각 법령을 관할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으며, 주된 부서는 보건복지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 농업부, 국방부 등이 청소년 관련 법령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V-1 청소년 관련 연방 법령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제정 연도	관할 부서
1	교육	교육지원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 Act)	2015년	교육부
		장애자 교육지원	장애자 교육법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1975년	교육부
		중퇴자 교육지원	국가방위 인가법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1961년	국방부

107) 각 관련부처 홈페이지 참조 및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7D>

108) 각 30개의 법령에 관해서는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내용을 다시 다루었다.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제정 연도	관할 부서
1	교육	학교안전	총기없는 학교존 법(Gun-Free School Zone Act) & 총기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s Act)	1990년 2002년	교육부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1994년	교육부
2	복지	요보호 아동부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B	1935년	보건 복지부
		위탁돌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le E	1935년	보건 복지부
			가족우선 예방 서비스법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 Act)	2018년	보건 복지부
		양육지원	손자 양육 조부모 지원법 (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	2018년	보건 복지부
		취업지원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1964년	노동부
			청소년 환경보호단 법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1970년	농업부
			인력혁신 및 기회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2014년	노동부
		봉사활동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1990년	보건 복지부
		건강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2000년	보건 복지부
			건강 및 기아없는 아동법 (Health, Hunger-free Kids act)	2010년	농업부
노동	노동규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1938년	노동부		
3	착취와 위기 보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년	보건 복지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정의법 (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2015년	법무부
			아동인터넷 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015년	법무부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제정 연도	관할 부서	
3	착취와 위기 보호	성착취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년	법무부	
		보호법 (PROTECTION,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2003년	법무부	
		아동보호와 안전법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년	법무부	
		국제 메건법 (International Megan's law)	2015년	법무부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과 가족강화법 (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Act)	2014년	법무부	
		성학대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안전 스포츠 승인법 (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2017년	법무부	
	가출, 미아, 노숙 청소년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1974년	법무부	
		실종, 착취, 가출 아동보호법 (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1999년	법무부	
4	소년 사법	비행 청소년 처우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년	법무부
5	업무 조율	청소년 업무 조율 및 통합	미국 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	1990년	보건 복지부
		연방청소년 조정법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6년	보건 복지부	

(2) 내용 요약 및 특성

5개 영역 30개 법령의 내용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청소년기는 교육의 시기이므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교육지원을 다루는 법령과 구체적으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법이 주된 법령이며, 이 외에 총기와 마약으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국방부는 퇴학자 및 비행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⁰⁹⁾.

표 V-2 교육 관련 연방 법령

교육	교육지원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 Act)	2015년	교육부
	장애자 교육지원	장애자 교육법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1975년	교육부
	중퇴자 교육지원	국가방위 인가법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1961년	국방부
	학교안전	총기없는 학교존 법(Gun-Free School Zone Act) & 총기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s Act)	1990년, 2002년	교육부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1994년	교육부

② 복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은 교육과 함께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보장법의 하부 챕터로서 요보호 아동부조, 위탁돌봄이 청소년 양육의 주된 법령이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109)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3일.

<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7D>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조부모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었다¹¹⁰⁾.

청소년이 성인단계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취업과 직업에 관해 지원하는 전통적인 법령과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한 법령도 제정되었다. 미국 국민이 봉사 활동을 통해 미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법령 안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봉사의 주체와 봉사 서비스의 수혜자 둘 다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과 식사에 대한 법령과 청소년의 노동을 규제하는 법안도 청소년 지원의 주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¹¹⁾.

표 V-3 복지 관련 연방 법령

복지	요보호 아동부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B	1935년	보건복지부
	위탁돌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le E	1935년	보건복지부
		가족우선 예방 서비스법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 Act)	2018년	보건복지부
	양육지원	손자 양육 조부모 지원법(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	2018년	보건복지부
	취업지원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1964년	노동부
		청소년 환경보호단 법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1970년	농업부
		인력혁신 및 기회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2014년	노동부
	봉사활동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1990년	보건복지부
	건강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2000년	보건복지부
		건강 및 기아없는 아동법 (Health, Hunger-free Kids act)	2010년	농업부
노동	노동규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1938년	노동부	

110)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 2019년 7월 12일, <https://www.acf.hhs.gov/>

111)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3일, <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7D>

③ 착취 및 위기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1974년부터 법령의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인터넷을 통한 착취와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 규제, 보호, 예방을 담은 다수의 법들이 제정되었다(Fernandes-Alcantara, 2018).

표 V-4 착취와 위기보호 관련 연방 법령

착취와 위기 보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년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정의법 (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2015년	법무부
		아동인터넷 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015년	법무부
		성착취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년	법무부
		보호법 (PROTECTION,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2003년	법무부
		아동보호와 안전법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년	법무부
		국제 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	2015년	법무부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과 가족강화법(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Act)	2014년	법무부
		성학대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안전 스포츠 승인법 (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2017년	법무부
		가출, 미아, 노숙 청소년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1974년
실종, 착취, 가출 아동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1999년		법무부	

④ 소년사법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우와 비행예방을 다루는 법인 “소년사법과 비행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은 1974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다수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켰다¹¹²⁾.

⑤ 청소년 업무 조율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기는 하지만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농업부 등 관련 부서들이 실행하는 법령과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포괄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두 번의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Fernandes-Alcantara, 2018).

표 V-5 업무조율 관련 연방 법령

업무 조율	청소년 업무 조율 및 통합	미국 청소년법 (Young Americans Act)	1990년	보건복지부
		연방청소년 조정법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6년	보건복지부

2) 세부 법령 주요 내용

(1) 교육

①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 Act)¹¹³⁾

동 법은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법령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112)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일 2019년 7월 4일. <https://ojjdp.ojp.gov/research-and-statistics>

113)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5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177>

이는 1965년에 각각 제정된 초등 및 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과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2002년에 제정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를 대체하는 법령이다.

1965년에 제정된 초등 및 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은 완전한 교육적 기회가 국가의 첫 번째 목표임을 명시하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 도서관 책 지원, 교과서 지원, 특수교육 센터 지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해에 제정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은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학진학 장려, 학업 중단자의 재입학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2002년에 제정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학업성취도를 달성기 위해 학교가 연례평가를 실시하고, 성취율이 낮고, 졸업률이 낮은 학생들을 가진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켜서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낙오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학업 중단률이 낮아지고 대학진학률이 계속 증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 Act)은 유치원~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연방 교육 법령이며 저소득층, 집 없는 아동 청소년, 이민자, 영어능력 떨어지는 아동청소년, 방임/소년시설/위기 청소년/학업 중단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주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학업 중단률이 2배 이상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법에서 실시했던 방임, 비행,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지속하여서, 교육청은 소년사범 시스템에 있던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위탁돌봄 아동들이 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숙 청소년이 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학교폭력과 처벌(퇴학이나 정학)로 인해 학교를 떠나게 되는 학생들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자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각 주 정부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은 혼욕할 때 퇴학과 정학을 내리지 않도록 훈련받도록 하였다.

②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¹¹⁴⁾

1975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개정된 동법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주된 법령이다.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립학교는 신체 및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학생들과의 분리 교육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해서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때만 하도록 하였다. 한 끼의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또한 각 학교는 부모와 함께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1세까지 학령기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공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추가의 비용 없이 무료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04년에는 기존의 법보다 개인의 컨디션이 아닌 개인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자 개정되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 개발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의 전이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였으며, 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114)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7일.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bill/1350>

③ 국가방위 인가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¹¹⁵⁾

1961년 국방부의 연 예산과 비용을 규정하는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법에 의거해서 국방부는 학업중단자와 퇴학당한 학생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인 Youth ChalleN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인으로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가치, 기술, 교육, 자기훈련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의 삶을 교정하고 개입한다.” 2015년 현재 29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비고용되었으며,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용을 안하는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20주간 합숙훈련, 12개월 사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합숙기간 동안에 검정고시, 삶의 기술, 직업훈련, 리더십 훈련, 체력단련, 사회봉사 활동이 이루어진다.

④ 총기없는 학교존 법(Gun-Free School Zone Act) & 총기없는 학교법 (Gun-Free Schools Act)

학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외부인과 학생이 총기를 소유하여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된 법령의 내용이다. 1990년에 제정된 총기없는 학교존 법(Gun-Free School Zone Act)는 공립 및 사립, 대안학교의 1000미터 근방까지가 스쿨 존으로 지정하고 스쿨 존에서 장전되고 불안정한 총기류를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총기없는 학교법 (Gun-Free Schools Act)는 학교에서 총기를 소유한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토록 하는 법안으로 학교를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115)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500>

⑤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1994년에 안전하고 규율이 잡힌, 마약 없는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법령이다. 학교 내 마약과 폭력 예방과 근절이 목표이며, 연방자금이 학교 안전과 함께 학업 중단자, 비행청소년, 10대 부모를 위한 지원에도 쓰인다. 마약이나 무기 소지로 퇴학당하면 이러한 학생에게 다른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는 퇴학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또한 주 정부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아동청소년의 마약사용과 폭력사용을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Fernandes-Alcantara, 2018).

- 1~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마약 및 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 건강교육, 조기 개입, 멘코링, 교정교화 회부, 관련 활동 등을 포함
- 학업능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 학교직원, 부모, 경찰,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전문적 훈련 제공
- 집과 학교사이의 구역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법집행 강화, 지역 순찰 등
- 마약과 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

(2) 복지

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B¹¹⁶⁾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가장 포괄적인 연방법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노인연금, 실업수당, 요보호 아동부조가 주요 골자이며, 동법을 실행할

116)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860>

사회보장행정처(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가 수립되었다.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4장 아동부조(Title IV : child aid)로 B의 아동과 가족지원(Child and Family Services)과 위탁돌봄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E의 위탁돌봄 및 입양 원조 연방지원(Federal Payments for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이다.

Title IV-B 아동과 가족서비스는 크게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1935년부터 1996년까지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및 무소득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는 인센티브가, 일을 하는 여성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1996년에 좀 더 제한적인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program으로 바뀌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동 법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촉진할 것, 아동학대/방임/착취를 예방할 것,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거나 시기적절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통해 위기 가정을 지원할 것, 위탁돌봄과 입양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촉진할 것, 자격을 갖춘 아동지원 기관을 만들기 위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것, 입양을 지원할 것,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할 것, 법원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②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E¹¹⁷⁾

사회보장법 4장의 title IV-E 역시 아동복지의 중요 사안들을 다룬다. 방임, 학대받은 아동, 기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아동들을 돌보기

117)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860>

위해 필요한 의식주 지원에 대한 정부가 자금지원을 한다. 위탁 아동의 돌봄에 대한 비용지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 비용, 위탁돌봄 운영자와 직원에 대한 훈련, 위탁부모와 입양부모 모집, 입양지원과 아동복지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9년 개정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위탁 청소년이 18세에 도달하고 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입양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는 “age out” 이라고 부르며, 1999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23세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③ 가족우선 예방 서비스법(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 Act)¹¹⁸⁾

2018년 제정된 동법은 위탁시설의 자격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아동복지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위탁 돌봄에 있어서 집단적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을 강조하고 있다. 위탁시설로 인가받은 곳은 반드시 트라우마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등록되거나 자격증을 받은 간호직원과 기타 의료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배치한 후 30일 이내에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격리되면 최대한 친족위탁이나 가족위탁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동 법은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가족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있고, 가능한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남용 서비스치료 서비스, 가정 내 부모 양육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최대 1년까지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위탁돌봄 후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주정부는 최대 15개월까지 가족 재결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18)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253/text?q=%7B%22search%22%3A%5B%22family+first+prevention+services+act%22%5D%7D&r=1>

④ 손자 양육 조부모 지원법

(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¹¹⁹⁾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매년 2백 60만명의 아동청소년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현상을 토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향후 조부모 양육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조부모와 친척은 아동청소년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동 법에 의해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이 설립되어서 3년간 활동을 하게 되며,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와 기타 친척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원회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높은 친척, 건강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연방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의 활동을 조율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건강, 교육, 영양 및 기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최선의 사례와 자료들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홍보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과정을 개발해서 대중들이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진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내에, 이후 2년마다 조부모를 위한 정보, 자료, 사례들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⑤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1964년에 제정된 법령으로서 저소득 청소년과 기타 저소득 개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1964년 실시된 가난과의 전쟁 정책에서 행해지는 노력들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조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의 지역사회 기관들이 형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4대 목표는 가난을 끝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119)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091?q=%7B%22search%22%3A%5B%22Supporting+Grandparents+Raising+Grandchildren+Act%22%5D%7D&r=2>

가난한 자와 실업자를 위한 안전망을 증가, 노인의 재정적 필요와 건강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노동부 장관이 밝힌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로는 첫째, 직업제공과 직업 훈련, 특히 가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난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도록 지원, 둘째, 가난한 특정 지역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Fernandes-Alcantara, 2018).

동 법에 의해 구축된 핵심적인 11개 프로그램 가운데 5개 프로그램은 특히 취약 계층 청소년의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The Job Corps : 16~21세 청소년을 위해 독립된 거주 센터에서 취업, 기본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 Neighborhood Youth Corps : 16~21세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직업훈련 제공
- Work Study :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 Adult Basic Education : 영어능력이 뒤떨어지는 18세 이상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높임
- Voluntary Assistance for Needy Children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자발적 도움을 주는 것을 고무시키는 센터설립

⑥ 청소년 환경보호단 법(Youth Conservation Corps Act)

1970년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농업과 내무부(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the Interior)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땅에서 (예를 들어 국립공원 등) 매년 여름 4~10주간, 15~18세의 청소년들이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보호를 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대부분이 비 주거 프로그램이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 프로그램을 주거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천연

자원, 문화자원, 역사 자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수리한다. 예를 들어 역사 유적지 보호, 펜스 구축, 경계 표지판 만들기, 야생생물 연구 보조, 인류학적 연구 보조, 다리 건설, 기차 길 건설, 캠프장 관리, 환경교육 계획 및 지도, 서식지 관리 등의 업무를 실행한다. 참여자는 연방의 최저 시급을 받는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관련 부서에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한다(Fernandes- Alcantara, 2018).

⑦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2014년에 제정된 동 법률은 기존의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ivities Act(1973), Job Training Partnership Act(1982), Workforce Investment Act(1998), Youth Build Transfer Act (2006년) 등의 개정을 거쳤다. 연방정부의 주된 노동력 개발 법령이며, 연방정부의 노동력 개발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율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법령 안에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용과 취업지원이 담겨져 있다(Fernandes-Alcantara, 2018).

1973년 제정법에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이윤추구 기관이 아닌 공공분야 기관과 단체에서 12~24개월간 일자리 제공하여 이곳에서 습득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하였다. 1982년 법령에서는 청소년과 기술이 없는 성인들을 준비시켜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및 기타 고용에 방해되는 심각한 요인을 가진 개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4~21세의 청소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학력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직장 경험 제공, 저소득층 고 3 학생의 취업으로의 전이 단계 지원 및 고등학교 중퇴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22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여름 동안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여름 청소년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을 제공하였다 (Fernandes-Alcantara, 2018).

1998년 법령에서는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전국에 273개 센터를 통해 16세~24세 실업 청소년/청년들, 고등학교 중퇴자들에게 교육, 상담, 직업 기술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2주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집을 건설하면서 건설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건설을 하지 않는 주는 교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육이다. 상담이 제공 되어 분노조절, 가족책임, 다른 적응 기술들을 배운다. 청소년은 짐이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된다.

⑧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¹²⁰⁾

1990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자 제정되었다. 동 법에 근거해 1993년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이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AmeriCorps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튜터링과 멘토링, 방과후 학교 운영, 주거지원, 재난 대응, 환경정비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대응한다.
- Senior Corps : 55세 이상 장년층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한다.

120)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house-bill/2010>

⑨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¹²¹⁾

2000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최초에는 1967년에 제정되고 이후 개정되었다. 21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초점을 둔 법령으로서 연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특히 동법은 환경과 유전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연구중심 29개 대학에서 임신부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프로그램 들은 다음과 같다.

가. 탁아(Daycare)

탁아의 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탁아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표준들을 준수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조사, 아동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표준에 맞는 시설 개선, 불시 점검, 장애아동 돌봄 능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나. 학교 건강과 안전(School Health and Safety)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학교, 학생, 지역사회에게 포괄적인 교육, 정신건강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법집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 건강 시작 프로그램(Healthy Start Programs)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타겟 인구집단의 임신부와 영아가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자폐와 정신건강(Autism and Mental Health)

자폐에 대한 원인과 치료 연구, 정신건강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안 강구,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치료를 지원한다.

121)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4365>

마. 아동 건강돌봄(Children's Healthcare)

건강돌봄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훈련, 정서적, 행동적 질병을 가진 아동들이 적절하게 진단되고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 교육강화, 연구, 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바. 중독(Addiction)

불법적 제조실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독성 물질 취급자와 판매처를 폐쇄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청소년 반-마약 미디어 캠페인을 확대, 아동청소년에게 신종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 전국 아동연구(National Children's Study)

국립 아동건강과 발달원(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이 제시한 전국아동연구(National Children's Study)를 통해 환경적인 요소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10만 명의 아동을 21세까지 조사한다.

⑩ 건강 및 기아 없는 아동법(Health, Hunger-free Kids act)¹²²⁾

2010년에 기존의 학교점심법(National School Lunch Act)을 개정했으며, 학교 무료 점심과 아동영양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지원하고, 비만을 막기 위해 학교 급식의 새로운 영양 표준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자금 지원하였다. 또한 위탁돌봄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료 점심을 가능하게 하였다.

122)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bill/3307>

따라서 동 법은 미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학교 점심 프로그램의 새로운 영양 표준들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부가 자판기를 포함해서 점심시간에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권위부여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교 점심을 위한 새로운 표준들을 이행할 추가적 자금 지원
- 신선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는 지역 농가와 정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
- 농업부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의 영양적인 질을 증가시킬 자원 제공
- 학교의 wellness 정책을 위한 최소 기준 설정
- 한 끼 식사량을 줄임
- 야채, 과일, 곡물의 최소치 규정
- 소금, 설탕, 지방에 관한 최대치 규정
- 서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빈곤한 지역의 아동들이 무료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되는 아동 확대
-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취약지역 아동에 대한 식사 제공
- 학교에서의 식수 접근을 강화
- 해당 교육청에서 3년마다 한번 씩 영양 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감사
- 부모들이 아동청소년의 식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학교 음식의 리콜 절차를 개선
- 학교 점심 제공자를 위한 훈련 제공

⑪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¹²³⁾

1938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개정되었다. 고용과 노동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이며, 아동청소년의 고용과 노동착취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아동은 교육의 기회가 보장받아야 하며, 건강과 안전에 해를 주는 고용은 금지된다. 12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농업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되고 이외의 노동은 금지되며,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아동청소년이 수행하기엔 너무 위험한 직업들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 노동에 관한 조항은 노동부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이 관할한다.

최저임금,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등을 제정. 착취적인 아동 노동력을 금지하였다. 아동노동에 관한 규정(child labor provisions)은 청소년이 일을 할 때, 그 일은 안전하고 그들의 건강, 안녕, 교육적 기회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예외는 있다. 14세 이하, 14~15세, 16~17세, 18세 별로 할 수 있는 일과 노동시간이 정해져있다. 또한 공원, 레스토랑, 식품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제시하였다.

(3) 착취 및 위기 보호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아동학대와 방임을 다루는 핵심적인 연방법이며, 최초에는 1974년에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8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자 재승인 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Reauthorization Act)을 통해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아동학대나 방임을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의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123)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congressional-record-index/114th-congress/2nd-session/fair-labor-standards-act/234333>

동법은 각 주에 연방자금을 지원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평가, 조사, 기소, 치료활동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비영리 재단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연구, 평가, 기술적 지원, 데이터 수집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립하고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동법에 의거해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4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Fernandes-Alcantara, 2018).

가. 주 보조금(State Grants)

의무신고, 접수, 선별, 조사, 위기진단, 사례관리와 훈련을 포함하는 아동보호 서비스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다.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과 선별, 신고를 추적하는 기술적 시스템, 지역사회 서비스 회부, 사례관리자 훈련, 조기개입 서비스 회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패널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하며, 국가 아동학대와 방임 데이터 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NCANDS)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아동학대 관련 재량적 활동(Child Abuse Discretionary Activities)

연구, 공공 및 사립 기관과의 계약, 기술적 지원 등이다.

다. 아동정의 법 보조금(Children’s Justice Act Grants)

아동학대와 방임, 특히 성적학대,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학대 조사와 진단, 기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라. 지역사회기반 아동학대 예방 보조금(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Grants)

주지사에 의해 지정된 각 주의 선도적 단체에게 주어진다. 선도적 단체는 공공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일 수 있으며, 선도적 단체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간 조직에 자금을 배포한다(Fernandes-Alcantara, 2018).

② 인신매매 피해자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¹²⁴⁾

2015년 제정된 법령으로서 2000년에 제정된 기존의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¹²⁵⁾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였다.

동법은 각 주가 인신매매 근절, 아동학대 조사와 기소, 아동포르노 피해자 지원, 국내 아동 인신매매 근절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를 식별하고 아동 인신매매 법령을 이해하도록, 인신매매 피해아동을 구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최초 신고자, 건강돌봄 및 아동복지 공무원, 소년사법 관련자, 검사, 사법부를 특수하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과 최초신고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4)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9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78>

125) 동 법에서는 “18세 이하의 상업적 성매매는 어떠한 강압의 형태가 관여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로 정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자발과 비 자발, 강압의 여부에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도록 하였다(Dysart, 2014).

- 위탁가정이나 아동돌봄 기관에서 아동이 실종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도 이를 고지받아야 한다.
- 가출과 노숙 청소년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 대한 훈련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미성년자 성착취로 인정하는 주에 있는 지원자, 그런 청소년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청소년 피해자를 다이버전으로 하는 주 등에게 연방자금 지원의 우선권을 준다.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알려지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고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주 법을 집행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가 요구하는 계획을 반드시 개발한다.
- 아동보호 기관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시킨다.

③ 아동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¹²⁶⁾

2000년에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설스럽고 유해한 콘텐츠에 접속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방법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도서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의무화 하였다.

보호조치는 반드시 (a) 외설스럽고 (b) 아동 포르노, 혹은 (c)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사진들에 인터넷 접속을 막거나 걸러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학교나 도서관들은 제안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의

126)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9일.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4600>

공청회나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타당하게 공지해야 한다. 동 법을 준수해야 하는 학교들은 두 개의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 첫째, 그들의 인터넷 안전 정책들은 반드시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the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학교와 도서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
- 미성년자들이 전자우편, 채팅방, 다른 형태의 전자적 소통을 사용할 때 미성년자 안전을 보호
- 온라인상에서 해킹이나 다른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한 승인되지 못하는 접속
- 미성년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미 승인된 폭로, 사용, 유포
- 미성년자들이 그들에게 해로운 자료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들

④ 성착취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¹²⁷⁾

1998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아동 성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 포르노물의 소유와 배포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 성착취 전과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사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안으로 담고 있다.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적인 성적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다.

127)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bill/105th-congress/house-bill/3494>

-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 (1) 성적행동이나 성매매에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이나 주를 넘어 이동시키는 행위 (2)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외국이나 주를 넘나 들도록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3) 미성년자를 불법적인 성적활동에 끌어들이고자 이동시키는 것, (4)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와의 불법적 성적 행동을 위해 미성년자를 이동시키면 구금 최고형의 두 배로 처벌한다.
- 아동 포르노물을 국내 혹은 외국으로 보내고 유통시키고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 컴퓨터 사용도 포함된다.
- 전과자 처벌을 강화한다.
- 아동 포르노물 소유한 것도 처벌한다.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전과자는 2배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외설적인 자료를 보내는 것 금지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는 구금한다.
- 미성년자 대상 특정 범죄는 민사 및 형사상의 벌금을 징수한다.
- 전자통신 서비스 회사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 미성년자 피해자가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성범죄의 숫자를 확대한다.
- 법무부 장관이 아동관련 성범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영장을 발부 시에 전자통신 제공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록 관리자는 관련사항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한다.

⑤ 보호법(PROTECTION,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¹²⁸⁾

2003년에 제정된 동 법은 가상현실 아동 포르노를 포함해서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의 배포와 소지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전과기록을 가진 자에

128)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108/plaws/publ21/PLAW-108publ21.htm>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아동포르노그래피 방지법(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추가하였다. 첫째, 아동이 성적으로 등장하는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생성 이미지나 그림 모두 금지. 둘째, 미성년자를 성적인 행동에 끌어들이는 인상을 주는 이미지가 광고되고, 홍보되고, 제시되고, 묘사되고, 배포되는 것 금지.

따라서 (1) 책, 잡지, 정기간행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및 기타 아동 포르노 이미지 3장 이상의 자료 (2) 미성년자 성착취를 묘사하는 것을 메일, 운반, 배달, 컴퓨터 전송 등이 금지 된다.

또한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의 정의를 확대해서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도 금지 대상이 되었다.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도 시각적 묘사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미성년자이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얼굴, 유사점, 기타 두드러진 특징들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기소된 경우 의무적 종신형(예외있음)
- 자발적으로 응하는 기관에서 범죄기록 조사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 아동학대나 납치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도청할 수 있는 권한
- 아동납치나 학대에 대한 법적 한계를 제거
- 아동과 관련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전 석방 금지
- 국가 AMBER Alert 코디네이터 지정
- Suzanne 법 실행 : 경찰이 18~21세의 실종자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을 제거
- 명백히 묘사되는 이미지가 아동이라고 인식되는 컴퓨터에서 생산해내는 아동 포르노 금지

- 외설스럽게 묘사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 그림, 조각, 사진 금지.
- 소유는 최소 5년, 배포는 최소 10년
-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성적행동을 한 미국인은 최대 30년 구금형 및 벌금형
- 법무부 장관은 257 문서보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을 공표해야만 한다.
- 인터넷 아동 포르노로 알려진 컴퓨터로 생성된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아동 포르노를 묘사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금지한다.
-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석방을 하는 종신형 가능케 함

⑥ 아동보호와 안전법(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¹²⁹⁾

일명 Adam Walsh 법이라고도 불리는 동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성범죄자의 감독과 관리와 관련한 가장 포괄적입 법령이다. 기존의 성범죄자 관리와 신상을 다룬 Jacob Wetterling Act(1994년 제정), Megan's Law(1996sus 제정) 법령보다 성범죄자 관리와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 강화하였다.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 구축의 주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였다.

1. 개정된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 제공
2. 아동과 성관련 연방 법령을 개정
3.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자금지원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실시
5. 성범죄자 등록과 고지에 부합하는 법집행력 개선
6. 아동이 공격당하거나 확대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 제공

129)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bill/109th-congress/house-bill/4472>

법령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법무장관은 동 법의 조항들을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과 규정들을 발행할 책임이 있음
- 각 주마다 성범죄자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표준화할 것
- 특정 유형의 소년사범도 신상 공개할 것
- 성범죄자 분류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시할 것
- 3년 내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는 법집행 자금 10% 삭감함
- 각 주는 성범죄자 등록에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외모 묘사, 범죄유형, 범죄경력(체포, 기소, 교도소, 석방 상태 등), 최근 사진, 지문과 손바닥, DNA 샘플, 유효한 운전면허나 신분증 복사본,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기타 정보
- 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등록하는 정보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3단계 범죄자는 3개월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각 주는 최소 2, 3단계 범죄자는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동 법은 성범죄자 관리와 신상공개에 관련된 조항 외에도 아동을 성착취와 학대/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건강복지부는 위탁돌봄이나 입양을 승인하기 전에 범죄기록조사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학대와 방임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국가등록을 만들 것을 명시하였다.

⑦ 국제 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¹³⁰⁾

2015년에 제정된 동법은 1996년에 제정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인 Megan 법을 해외로도 확대하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관리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여권에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이며

130)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515>

관리대상자 이다“라는 사실을 표시한다. 외국 정부에 이를 알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대상 성범죄자는 해외여행 21일 전에 경찰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내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여행하는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⑧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과 가족강화법(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Act)¹³¹⁾

2014년에 제정된 동 법은 위탁부모, 입양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 관련해서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할 기존의 법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특히 동 법은 현재 혹은 이전에 위탁돌봄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의무화 하였다. 주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정부는 현재 아동복지 기관의 돌봄과 관리 하에 있는 아동 중에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아동을 찾아내고, 선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절차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한다.
- 주 정부는 위탁돌봄과 상관없이 26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 아동복지 기관은 아동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아동복지 기관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숫자를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 건강복지부는 이 숫자를 반드시 국회에 신고해서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131)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1일.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4980>

- 건강복지부는 국회에 아동 피해자의 숫자를 매년 보고해야하며, 위탁시설을 이탈한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왜 이탈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아동복지 시설은 실종된 아동을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아동은 국가 정보센터(the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와 국가 실종과 착취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등록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기관은 이탈 및 실종 아동을 찾아내고, 아동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법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the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Youth)”가 설립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자문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 기관, 건강과 정신건강 기관, 피해자 서비스, 주정부 및 지방정부 법원 등 다기관 협력을 조율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공적인 개입 정책수립과 이행, 행정적/법적 변화를 이끌어낸다(Fernandes-Alcantara, 2018).

동법은 위탁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위탁가정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주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 위탁부모가 아동청소년의 건강, 안전, 최고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풍성한 과외활동, 문화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지혜롭고 타당하게 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 자금지원을 받는 위탁가정과 아동복지 기관은 반드시 이 표준안을 따라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기관 직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 18세까지 위탁시설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나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성인이 되어 시설을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례계획 팀원 최소 2명과 함께 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⑨ 성학대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안전 스포츠 승인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¹³²⁾

아동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스포츠 단체(youth sports organization)”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7년에 제정되었다. “안전 스포츠 승인 법(Safe Sport Authorization Act)”으로도 알려진 동 법은 기존의 2개의 연방법 “1990 아동학대 피해자 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of 1990)”, “1978 아마추어 스포츠 법(Amateur Sports Act of 1978)”이 수정·통합된 법이다. 기존의 법에서 신고의무와 민사소송을 확대하였으며, “안전스포츠 센터(SafeSport Center)”를 동 법을 관할하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청소년 스포츠 단체는 지역리그, 교회, 학교, 캠프, 비영리 재단 등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들로서, 이 단체들은 신고의 의무, 예방훈련 실시, 예방정책 수립과 준수 등의 3대 의무를 가지게 된다. 3대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2)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534>

가. 신고 의무(Mandated Reporting)

미성년자나 아마추어 선수와 접촉하도록 승인된 성인은 아동학대를 24시간 내에 U.S Center for SafeSport, 지역이나 연방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안하면 연방법에 의해 처벌된다. 아동학대 행위로는 왕따(bullying), 희롱(harassment), 괴롭히기(hazing),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적 부당행위와 성학대(sexual misconduct and abuse) 등이다.

나. 예방훈련(Prevention Training)

예방적 교육 훈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훈련을 받는 집단은 성인과 미성년자 두 집단이다. 즉, 미성년자 아마추어 선수와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성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회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사후가 아닌 예방적 교육이며, 피해자 증상뿐만 아니라 가해자 성격도 초점을 맞춘 교육,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적절한 경계, 적절한 행동, 위반에 대한 대응과 절차 등이다.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으로 무작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예방정책(Prevention Policies)

모든 스포츠 조직은 학대를 막기 위한 기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내용은 미성년자와 아마추어 선수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1 : 1 접촉을 제한하는 타당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의무이다. 신체접촉, 프로그램 외 활동, 동료 선수에 의한 학대 예방 등의 정책과 절차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예방정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안전스포츠 센터(SafeSport Center)”는 법에 명시된 대로 각 단체들이 법에서 제시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 예방 교육과 훈련을 개발하고 신고를 접수하고, 연방 운영자금을 제공받아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⑩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¹³³⁾

최초의 법령은 1974년에 제정된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에 포함된 가출청소년법(Runaway Youth Act)”이었지만, 1977년에 집 없는 노숙 청소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1980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이 되었다. 노숙 청소년은 21세 이하의 친족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없고, 다른 대안적인 안전한 거주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되었다.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을 통해 센터 프로그램과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노숙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야만 하며, 임시 쉼터거주기간도 14일에서 21일로 증가되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진행 표준이 만들어지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의 견지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센터 및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가 의무화 되고, 입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동 법은 보건가족부의 “가족과 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이 운영하는 3개 기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자금을 지원한다. 3대 기본 영역은 거리기반 아웃리치, 센터운영, 16~22세의 청소년에게 장기적인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도기적 주거이다. 기본 지원 외에도 16~22세의 노숙 임신부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룹홈, 전국 가출안전전화(National Runaway Safeline), 연구를 통한 무료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노숙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연구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Homeless Youth and Families)”,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훈련과 기술적 지원센터(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등을 운영한다.

133)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9일.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571/text>

⑪ 실종, 착취, 가출 아동보호법

(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¹³⁴⁾

1999년에 제정된 동법은 1982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개정된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와 1974년에 제정된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납치, 성적학대,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해 체계화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반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쉼터 지원을 강화코자 하였다.

실종아동과 관련해서는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의거해 운영되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법무부가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본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할 것, 실종 및 착취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무료 혹은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동청소년의 가족과의 재결합을 지원할 것, 혁신적인 모델을 찾아서 배포할 것, 아동실종과 착취와 관련된 사건을 예방, 기소, 조사, 처리, 처우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것, 가족과 경찰을 지원해서 실종되고 착취된 아동을 신속히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또한 가출과 노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목적은 (1) 가출과 노숙 청소년에 관한 정확한 전국적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관을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3)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서비스 제공받은 청소년과 가족의 특성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서비스 기관은 거리기반, 가정기반, 약물남용 교육과 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등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였다.

134)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법령 참조.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9일.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senate-bill/249>

-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지역적인 배분을 고려한다.
- 임시주거 자금 지원
- 노숙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과 숫자를 묘사하는 통계적 요약물 담은 연례보고서를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해야 한다.
- 가출과 노숙 청소년의 건강, 교육, 고용, 주거에 관련된 사안들을 대응하는 보건 복지부의 활동을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함께 조율한다.
- 가정기반, 거리기반 서비스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할 자금을 제공한다.
- 건강복지부 장관은 성적학대로 인해 가정을 떠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숫자를 측정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들의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거리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 청소년들은 노숙이나 가출청소년이며 성적학대, 성매매, 성착취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활동에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선권을 준다.

(4) 소년사법

①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¹³⁵⁾

1974년에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법에 대한 처벌과 처우에 관한 국가 표준을 정하고 각 주 정부의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지원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동법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되고, 교정교화라는 국가적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135)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일 2019년 7월 1일. <https://ojjdp.ojp.gov/research-and-statistics>

소년사범에 대한 돌봄과 처우에 관한 이른바 “핵심보호(core protections)”로 알려진 일련의 보호장치를 따르는 주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다. 네 개의 핵심 장치는 지위위반자 비구금, 성인과 분리, 인종차별 금지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위위반자의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of Status Offenders) : 가출, 무단결석, 통행금지 위반 등의 지위위반자는 소년사범 시설이나 성인 구치소에 구금될 수 없다.

나. Sight and Sound : 성인과 소년사범은 분리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성인 시설에 수용될 경우 성인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한다. 소년사범, 지위위반자 등이 성인 수형자와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도 수용 되서는 안 된다.

다. 구치소 제거(Jail Removal) : 소년사범을 매우 제한된 환경 하에서 만을 제외하고 성인 구치소에 수용할 수 없다(1980년대 추가). 청소년들을 성인 시설에서 제거해야 한다.

라. 불균형적인 소수인종 구금(Disproportionate Minority Confinement) : 유색인종이 불균형적으로 소년사범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1992년 추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재판전 단계 청소년을 성인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줄이고, 법 시스템 속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처우를 받는 것을 좀 더 구조화하였다. 또한 구금의 대안을 강화하고, 트라우마-기반 처우를 지원, 증거에 기반 한 처우, 구금에서의 위험한 관행 제거, 임신부에 대한 억제 사용 제거, 구금된 청소년에 대한 환경 개선과 교육 서비스 개선, 인신매매 청소년 및 인디언 청소년 같이 특수한 처우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지원,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제력 강화, 책임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5) 청소년 업무 조율

① 미국 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

1990년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간의 연방 조율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개선된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 법에 의해 “아동청소년가족에 관한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설립되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복과 분열을 막고자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위원들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의무는 (1) 청소년의 특별한 필요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돕는다 (2) 연방정책, 프로그램, 기타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서비스의 중복을 찾아낸다 (3)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비스의 중복, 부서 간 협력 등에 관해 권고를 한다. 1994년 개정된 법에서 위원회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실행토록 하며, 단체와 기관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개선, 수정, 제거를 위한 권고를 하도록 명시되었다. 조율적인 업무 외에도 동법은 각 주 및 지방 단체들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 정신 및 신체건강, 교육기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방자금을 지원토록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② 연방청소년 조정법(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6년 청소년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동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대책위원회(White House Task Force for Disadvantaged Youth)”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동 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연방 청소년발달위원회(Federal Youth Development

Council)”가 설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의장을 맡게 되었다. 위원회는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는 연방기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방 기관을 돕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 임시 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ernandes-Alcantara, 2018).

- 청소년의 전체적인 안녕(well being)에 관한 다양한 연방기관에 의한 통계적 보고서와 최근의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
- 청소년과 청소년을 돌보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진단
- 연방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과 관련한 계획
- 연방 프로그램과 기관관의 의사소통, 훈련, 기술적 지원, 정보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이끌 권고안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한 권고안
- 위원회가 협력과 조율을 위해 실시한 조치들
- 기술적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한 대응 조치들
-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 및 기타 관련자들에 의한 의견과 권고

이후 2009년에 개정되어 백악관 내에 대통령 행정기관으로 “백악관 국가 청소년 정책 사무국(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Youth Policy)”가 설립되어 기존의 “연방 청소년발달 위원회(Federal Youth Development Council)”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사무국이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Fernandes-Alcantara, 2018).

- 국가 청소년정책(the National Youth Strategy)을 개발하고 조율하고, 공표하고 실행을 감독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연방 청소년 지원정책의 예산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내려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 청소년을 지원하는 연방 부서와 기관 간의 서비스를 조율한다.
-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비영리 단체, 비정부 기구, 지방정부, 주정부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 주정부의 Youth Services Coordinating Entities and state Youth Advisory Boards에게 기술적 지원과 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3) 청소년 관련 법령간의 관계

2018년 국회가 발행한 보고서 “취약한 청소년 : 배경과 정책(Vulnerable Youth : Background and Policies)”에 따르면 미국은 단일화된 연방 청소년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하며, 지난 세월동안 사회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조각이 합쳐진 형태라고 지적한다(Fernandes-Alcantara, 2018). 즉, 주 정부 마다 청소년 관련법이나 정책이 다양함은 물론, 연방 정부 내에서도 단일화된 창구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청소년 관련 법령은 성인을 포함하는 전체 법령 안에서 존재한다. 위 보고서의 연대별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법령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학대를 예방하는 법령이 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법령과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외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농업부, 국방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산발적이고 다양한 법령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련 부서간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수립, 법령 제정, 프로그램을 구축과 실행을 위한 노력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1990년 미국 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이 제정되어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을 목표로 하였으며, 아동청소년가족에 관한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설립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Fernandes-Alcantara, 2018).

이후 2006년에 연방청소년 조정법(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청소년발달위원회(Federal Youth Development Council)가 설립되었다. 이후 동법은 2009년에 개정되어 백악관 내에 대통령 행정기관으로 “백악관 국가 청소년정책 사무국(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Youth Policy)”가 설립되어 기존의 “연방 청소년발달 위원회(Federal Youth Development Council)”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부서간 실무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을 설립하였다. 실무그룹은 다수의 연방 부처와 기관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Fernandes-Alcantara, 2018).

- ① 정부기관, 사설단체, 비영리 단체 등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과 조율을 개선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기
- ② 청소년에 관한 연방 웹사이트 개발
- ③ 각 기관 및 단체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엄격한 표준들을 채택할 것
- ④ 사업결과, 실행에 따른 권고 사안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본 위원회는 2013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협력과 조율, 증거기반 혁신 정책 수립, 청소년참여와 파트너 십 등 3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ernandes-Alcantara, 2018).

- 협력과 조율(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 연방, 주, 지방 단위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 증거기반 혁신적 전략(Evidence-based and innovative strategies) :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입증된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Youth engagement and partnership) :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관련 청소년과 가족에게 이익을 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령으로 “지역사회 해결을 위한 백악관 위원회(The White House Council for Community Solutions)” 이 설립되어서 공공, 사립, 기타 영역에서의 리더들이 다기관 협력을 해야 하며, 이때 연방기관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16~24세 청소년들 중에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이른바 “단절 청소년(disconnected youth)”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Fernandes-Alcantara, 2018).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다양하고 산재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 및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을 피하며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V-6>과 같다.

표 V-6 청소년 관련 업무 조율과 협력을 위한 노력

연도	법령	위원회 활동
1990	Claude Pepper Young Americans Act	아동청소년가족에 관한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2006	Tom Osborne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연방 청소년발달위원회 (Federal Youth Development Council)
2008	부시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13459	청소년프로그램에 관한 부서 간 실무그룹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2009	Tom Osborne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개정	백악관 청소년 정책 (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Youth Policy)
2010	오바마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13560.90	지역사회 해결을 위한 백악관 위원회(The White House Council for Community Solutions)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시사점

미국의 청소년 관련 연방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법령 제정을 위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법령과 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령 제정을 위한 시사점

미국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하부 법령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단독 법도 제정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점도 존재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부서 간 협력을 위한 법령 제정, 관련 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유서 깊은 프로그램, 연구를 강화하는 법령,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다양한 법령 제정 등 네 가지 등을 들 수 있다.

① 부서 간 협력을 위한 법 제정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1990년 미국 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 2006년 연방청소년 조정법(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이 제정되었다(Fernandes-Alcantara, 2018). 동 법들에 의거해서 다기관과 민간단체가 모이는 위원회와 실무그룹이 설립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청소년 정책을 이끌고자 하였다.

② 관련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유서 깊은 프로그램 들

현재까지도 미국 내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1960년대와 70년대 가난과의 전쟁 정책을 통해 제정된 법령 하에 구축된 프로그램들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Job Corps는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1964년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근거한다. 농업부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는 청소년 환경보호단 법(Youth Conservation Corps Act)는 1970년에 제정된 동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국방부가 학업 중단자와 퇴학 당한 학생을 대상으로 22주간 운영하는 Youth Challenge Program은 1961년 제정된 국가방위 인가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에 의거한 프로그램이다. 각 정부 부처에서 부처의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과 함께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연구와 평가 강화

청소년 관련 법령 가운데 상당수의 법령은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정보구축, 정보공유, 평가를 강화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실종, 착취, 가출 아동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연방청소년 조정법(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등은 해당 주제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손자 양육 조부모 지원법(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는 정보를 구축하고 공유하며 이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은 국가아동연구(National children's study)를 통해 패널 유아들을 21세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요소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토록 하였다.

④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다양한 법령 제정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주되게 제정된 법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과 가해자 처벌, 예방에 관련된 법들이다. 일련의 법들은 인터넷을 통한 착취, 아동 포르노, 가출 청소년/노숙 청소년/위탁 청소년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착취, 스포츠를 통한 착취 등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를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성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착취 및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법령과 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령 가운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한 구체적인 법령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행청소년, 퇴학 청소년을 위한 국방부 운영의 국가방위 인가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과 동 프로그램

22주간의 합숙훈련과 12개월의 사후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자, 비행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과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획일적인 처우와 프로그램 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 해본다는 면에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

대표적인 교육법인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 Act)는 학업중단이 높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로 장에

학생, 이민자,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 소년시설 출원자 등이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 학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소년 시설 출원자들의 학교복귀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③ 조부모를 지원하는 법령

2018년에 제정된 손자 양육 조부모 지원법(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는 부모의 약물남용과 범죄로 인해 조부모가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게 되는 상황을 지원하는 법이다. 본 법은 부모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조부모가 아동청소년에게는 가장 적합한 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손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본 법령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위기가정 지원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령은 대규모의 위탁시설보다는 위탁가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보다도 원가정이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제정된 가족우선 예방 서비스법(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 Act)은 아동이 위탁으로 가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1년 간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친족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이 위탁돌봄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할 때 성공적인 결함을 위해 15개월까지 가족 재결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위탁양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가정 지원과 사후관리의 도입과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해외 아동청소년 보호 법령

1990년대 이후 제정된 일련의 법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를 국가가 관리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강력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자국 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15년에 국제 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가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여권에 해당 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여부가 명시되고, 성범죄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는 해외여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자국의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아동청소년들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대응을 보여주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스포츠 성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2017년 제정된 성학대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안전 스포츠 승인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는 아동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스포츠 단체(youth sports organization)”들이 지켜야할 3대 의무사항인 신고의무, 예방훈련, 예방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이 아동청소년기에 선수생활을 시작하는 점,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법의 도입과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일본의 청소년관련법 사례¹³⁶⁾

1) 개요

전후(戰後)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내각부 총리대신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青少年問題審議會)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소년문제심의회는 1966년(쇼와(昭和) 41년)에 발족되었으며, 총무청(總務庁) 산하에 설치되었다. 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1989년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간의 밀접한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책추진회의(青少年対策推進會議)와 과장급으로 구성된 각종 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總務庁青少年対策本部, 1998). 동(同) 위원회는 매년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소년대책추진요강(青少年対策推進要綱)을 발표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후(戰後)를 넘어서 : 청소년의 자립과 성인사회의 책임」이란 답신(答申)을 토대로 「청소년육성추진요강(青少年育成推進要綱)」을 명칭을 달리하여 새롭게 발표하였다. 본 요강의 주요내용은 비행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활동 촉진,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중앙조직 개편으로 인해 청소년문제심의회는 폐지되었으며, 그 기능은 내각부로 이관되었다. 그 이후 2003년 내각부 산하에 총리대신이 본부장을 맡고 모든 국무대신이 참여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青少年育成本部)」를 설치하였으며, 동 본부에서는 매년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推進大綱)」을 통해 그 해 청소년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법제도 보다는 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2009년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이

136) V장 3절 집필자 : 강명배교수(대구한의대학교)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요강, 대강 등과 같은 정책지침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법 제정 이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맥락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 법이 제정된 2009년 이전에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령과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 설정의 모호함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령의 명칭과 연령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으로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깍연금지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 등이 있다. 이들 법령에서는 청소년이란 명칭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아동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도 18세(아동매춘, 아동포르노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30세(아동청소년육성추진법)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령은 대략 육성, 보호, 고용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 육성, 보호 및 고용 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V-7 각종 법령 등에 따른 청소년 호칭 및 연령구분

법령 명칭	호칭 등	연령 구분
소년법	소년	20세미만의 자
형법	형사책임연령	만 14세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유아(乳兒)	1세 미만의 자
	유아(幼兒)	1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달할 때까지의 자
	소년(少年)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서 18세에 달할 때까지의 자
아동수당법	아동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있는 자
모자, 부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	20세미만의 자
학교교육법	학령아동	만 6세에 달한 날의 다음날 이후 첫 학년부터 만12세에 달한 날에 속한 학년이 종료할 때까지의 자
민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 자
	혼인연령	남 18세, 여 16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노동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의 자
	아동	15세에 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이 종료할 때까지의 자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35세미만. 단, 개별 시책, 사업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대략 '45세 미만' 의 자에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청소년고용대책기본방침(2016년 1월 후생노동성)에 규정되어 있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 자
미성년자음주금지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 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연소자	18세미만의 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미만의 자

법령 명칭	호칭 등	연령 구분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미만의 자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미만의 자

* 출처 : 内閣府, 2017, 아동·청소년백서(子供·若者白書 2017), p.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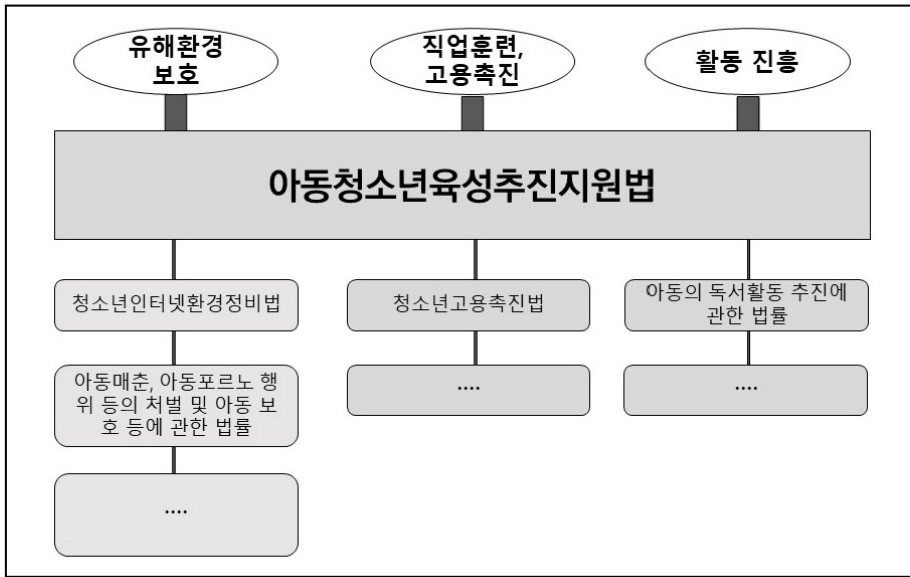


그림 V-3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체계

2) 세부 법령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육성추진지원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① 제정 배경, 의의 및 목적

내각부의 자료¹³⁷⁾에 따르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 이지메(いじめ), 소년에 의한 중대사건의 발생, 유해정보의 범람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 둘째, 니트,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발달장애 등 정신적 질환 등 아동 및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화, 셋째, 종래와 같이 개별 분야에서 종적(縱的) 대응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법은 일본국 헌법과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제1조), 이 법의 제정목적(제1조)은 아동 및 청소년육성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데 있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준비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동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에 설치 의무가 부과된 협의회를 말한다. 정리해보면,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여하한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법의 기본 이념(제2조)은 크게 7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지각하면서 자립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확립하며, 타인과 함께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137) 출처 :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2.pdf (검색일 : 2019년 6월 19일)

목적을 둔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하여 개인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며,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양호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넷째,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에 있어 가정, 학교, 직장, 지역 그 밖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 생활환경, 특성과 그밖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호한 사회환경(교육, 의료 및 고용 환경을 포함)의 정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려한다. 여섯째,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외에 각 관련분야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일곱째,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도 않고, 취업을 하지도 않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간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령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 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용어 정의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코도모(子ども)이라 함은 아동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유요아기(乳幼児期), 학동기(学童期) 및 사춘기(思春期)에 속한 자를 말하고, 와카모노(若者)는 청년, 젊은이 또는 청소년 등의 용어로 번역하며, 사춘기, 청년기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춘기는 중학교에서 대략 18세까지의 자를, 청년기는 대략 18세에서 대략 30세까지의 자를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시책에 따라서는 40세 미만까지의 후기 청년기의 자도 와카모노에 포함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세이쇼넨(靑少年)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연령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에서 청소년기를 유요아기에서 청년기 사이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은 의무교육연령에 달한 자(만 6세)에서 30세 미만의 자로 정의할 수 있겠다.

②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이 법 제26조에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이하, 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추진본부의 가장 큰 역할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아동청소년육성대강에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방침, 중요시책 등이 포함된다. 추진본부는 내각부 총리대신이 본부장을 맡고, 내각부 관방장관 및 청소년건전육성을 담당하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부분부장을,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대신, 법무대신, 무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기타 내각부 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국무대신이 본부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③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이하, 육성지원추진대강)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육성추진본부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대강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육성추진대강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중학생 이상 3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유스특명보고원」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책정된 육성추진대강은 2016년 2월이다.¹³⁸⁾ 육성추진대강에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에 관한 기본방침과 아동청소년육성지원 추진과제가 포함되며, 추진과제에는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등에 관한 사항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사회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138) 内閣府, 2018, p.30.

2016년에 발표한 육성추진대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육성추진대강의 기본 방침 및 주요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학력, 체력의 향상, 규범 의식 및 배려심 함양, 체력증진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지키는 힘의 육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상담창구의 정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체계적이며 촘촘한 종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가정 등 방문을 통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확충, 아동 빈곤 대책 및 아동학대방지대책의 강화 등에 관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의 정비로,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 교류활동의 충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이용 등과 같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으로, 관공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조기능의 충실, 종합적인 식견을 갖춘 코디네이터의 양성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할 아동청소년의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청소년의 응원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아동·청소년 계획(子ども若者計画)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는 아동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작성한 육성지원추진대강을 고려하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9조). 기초자치단체(市町村)는 광역자치단체가 작성한 육성지원추진대강을 참고하여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9조의 2). 이와 관련하여 동경도(東京都)는 2015년 7월 「동경도아동청소년계획(東京都子ども・若者計画)」(2015-2019년)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의 모토는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젊은 힘을 육성한다'이다. 본 계획에서의 청소년은 0-30세미만으로 정의되어 있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40세 까지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³⁹⁾ 참고로, 「동경도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조례(東京都青少年の健全な育成に関する条例)」 및 「동경도 데이트클럽 영업 등 규제에 관한 조례(東京都デートクラブ営業等の規制に関する条例)」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同) 계획의 기본적 방침은 크게 5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써 존중한다는 점,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 셋째, '모든 아동 및 청소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 넷째, '지금'을 살아가는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를 보다 잘 살아가기 위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성인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경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청소년 니트, 비정규직 청소년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 보건 및 복지기관,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민간지원단체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1차적으로는 지역사회 지원네트워크를 활용하지만,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 직업훈련기관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⑤ 아동·청소년육성지원협의회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이지메, 청소년에 의한 범죄, 유해정보의 범람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니트, 히키코모리,

139) 출처 :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8/70p8s100.htm> (인출일 : 2019.7.1.)

등교거부 등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개별적 대응으로는 지원에 한계에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¹⁴⁰⁾ 이에 동 법(제 20조에서 25조까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육성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업무 그리고 지정조정기관, 지정지원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협의회의 대상은 히키코모리, 청소년 니트뿐만 아니라 등교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며, 연령은 30세까지로 보고 있다.

지원협의회의 설치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NPO법인 및 학자,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요 기타 아동 청소년 육성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등이다(동 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조정기관은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을 연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 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제21조). 다음으로 지정지원기관은 공적 기관과 연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의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이다. 지정지원기관은 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기관 가운데 한 곳의 단체를 지정하게 된다(동법 제22조). 그밖에도 지원협의회에는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참여하고 있는데(제13조), 이 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 관계기관의 소개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40) 출처 :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8/DATA/70p8s102.pdf>
(인출일 : 2019.7.1)

- (2)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す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이하,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법)

① 개요

이 법은 2008년 6월, 청소년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다음 해인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월에 스마트폰의 보급 및 애플리케이션,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 기존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치로는 대응이 어려운 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저조한 필터링 이용률 등에 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터링 이용률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8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다(내각부, 2018, p. 163)

이 법은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가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성능의 향상 및 이용 보급, 기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하는 기회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정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공에게 열람(시청 포함)되는 정보로, 청소년의 건진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3).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부 또는 주무관청이 유해성 유무를 판단할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주적이며 주체적 노력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관계사업자, 보호자 등에게 맡기고 있다. 단,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는 제시하고 있다(제2조 제4항). 첫째, 범죄 또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직접적 및 명시적으로 부탁, 중개, 유희하는 정보, 또는 자살을 직접적 및 명시적으로

유인하는 정보, 둘째,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기타 현저하게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정보, 셋째,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을 음침하게 묘사 또는 매우 잔학(殘虐)적 내용을 담은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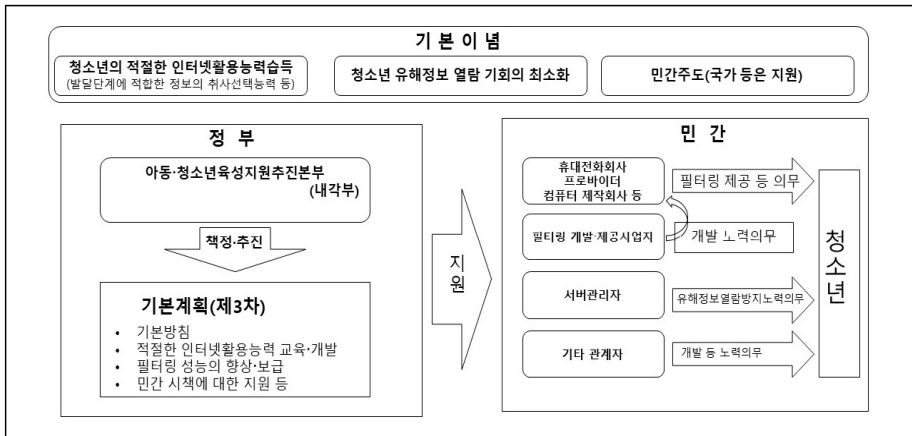


그림 V-4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법 개념도

② 청소년 연령 확인 및 필터링 의무화

2018년 2월 1일자로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內閣府, 2018, p.163).

첫째, 현대전화 인터넷 접속역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 할 시에 사전에 해당계약의 상대자 또는 해당계약과 관련된 현대전화단말기 등이 사용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청소년확인 의무).

둘째, 현대전화 인터넷 접속 역무(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자가 청소년이고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된 현대전화단말기 등 사용자가 청소년이며 또는 해당계약의 상대자가 그 청소년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보호자에

대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 및 청소년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설명 의무).

셋째,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역무(서비스) 제공자 등은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단말기 등을 판매할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휴대전화단말기 등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보호자가 필터링 유효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휴대용 단말기 등에 대하여 필터링 유효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필터링 유효화 조치 실시 의무)

넷째, 인터넷접속기기의 제조사업자에게 필터링 용이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대상이 되는 기기에 대하여 휴대전화단말기 및 PHS단말기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필터링이용 용이화 조치 의무)

다섯째, OS개발사업자는 필터링 유효화 조치 및 필터링 용이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S개발에 힘써야 한다(용이화 조치 원활화 노력 의무)

③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 기본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육성추진본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첫째, 청소년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둘째,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과 관련에 시책에 관한 사항, 셋째,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및 이용 보급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 넷째, 청소년의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기타 청소년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책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이다.

2009년 제1차 기본계획이 책정되었으며, 2012년 제2차 기본계획이 그리고 2015년에 제3차 계획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제4차 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¹⁾

먼저 기본이념은 크게 3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이용함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적절하게 발신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둘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및 이용의 보급,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계되는 사업자에 의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소화한다. 셋째, 자유로운 표현활동의 중요성 및 다양한 주체가 세계를 향해 다양한 표현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의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노력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한다.

위에서 제시한 기본 이념을 토대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¹⁴²⁾

첫째, 청소년이 자립해서 주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개발의 추진으로, 청소년이 발달단계에 따라 주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도 및 정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적절한 생활습관의 정착을 위한 가정 내 노력을 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보호자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발활동 실시로, 보호자가 청소년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의 발달단계에

141) 출처 : https://www8.cao.go.jp/youth/kankyou/internet_torikumi/guideline.html
(인출일 : 2019.7.1.)

142) 출처 :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75442>
(인출일 : 2019.7.3.)

따라 인터넷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 및 인터넷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상의 위험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법,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부모 자녀간 규칙 정하기 등 가정 등에서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보호자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사업자 등에 의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촉하기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촉진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고려한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에게 청소년에 대한 필터링 제공 등의 의무 이행, 필터링 등의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필터링 등의 고도화, 아동포르노에 대한 블로킹 등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조치 등을 촉진한다.

넷째, 국민에 의한 인터넷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주적 노력의 촉진으로,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이 청소년유해정보와 그밖의 인터넷상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배려한 정보발신, 통보 등의 자주적인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방법 등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적인 PDCA 사이클의 구축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은 급격한 기술혁신 등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였으며, 기술, 활용방법 등의 변화가 현저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인 PDCA 사이클을 구축하여,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3) 청소년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청소년고용촉진법)

① 법의 제정 배경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인구의 감소에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노동력인구라고

일컫는데, 일본의 경우 2000년 시점에 노동력 인구가 6,776만명이었으나, 2017년 시점에는 6,556만명으로 감소하였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노동력 인구가 6,18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인구의 확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고용 촉진과 더불어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¹⁴³⁾ 이 법은 2015년 7월에 공포되었으며, 총 3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35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개별 시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략 45세 미만의 자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도 포함되지만,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미취업 상태의 니트 청소년이 주요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법의 목적 및 이념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제1조) 첫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 기능, 지식의 정도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능력을 개발 및 향상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고용의 촉진 등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직장 내에서의 근무환경 정비 및 후생복지의 증진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청소년고용촉진법은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함과 더불어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이념은 모든 청소년은 앞으로의 경제 및 사회를 짊어지고 갈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사회에 필요한 직장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

143) 출처 : https://www.mhlw.go.jp/english/wp/wp-hw3/dl/j1_05.pdf (인출일 : 2019.7.2.)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제2조). 이 법은 관계자의 책무의 명확화 및 상호연계,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③ 관계자의 책무의 명확화 및 상호 연계(제4조-제7조)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모집 및 채용방법을 개선하고,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고용기회의 확보 및 직장 정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청소년들에게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주가 청소년의 모집과 채용 시에 강구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로는 채용 시 노동조건에 명시, 고정잔업수당(固定殘業代)의 구체적인 지불 조건, 채용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및 채용설명회를 통해 제공, 청소년이 채용 조건에 대해 문의할 시 적극적으로 임할 것, 채용 후 근무지 한정 제도 등과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가도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기타 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5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과 연동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소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직업소개사업자, 교육기관 기타 관계자는 이 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제6조). 이와 더불어 후생노동대신은 제4조 및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 직업소개사업자 기타 관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하여 공표한다(제7조).

④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지원(제9조-제18조)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제9조에서 제18조와 관련이 있으며,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에 대한 공공직업안정소의 신규졸업자 구인 불수리(不受理), 청소년의 고용관리상황에 관한 우량기업 인정제도, 일명 ‘유스엘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들이 구인을 희망을 희망하여 지역의 공공직업안정소에 의뢰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불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노동기본법(労働基準法)과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을 위반한 경우인데, 구체적으로는 1년간 2회 이상 동일 조항을 위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와 위법한 장기간노동을 반복한 기업으로 공표된 경우 등이다. 그리고 남녀고용기회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과 육아개호휴업법(育児介護休業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인 요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출처 : 유스엘마크(<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00266.html>)
 청소년고용촉진종합사이트 홈페이지 <https://wakamono-koyou-sokushin.mhlw.go.jp/search/service/top.action>.(인출일 : 2019.9.27.)

그림 V-5 유스엘 마크와 청소년고용촉진종합사이트 홈페이지

다음으로 유스엘(ユースェール)제도로, 이 제도는 동법 제15조에서 제17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 고용자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 고용 및 육성에 적극적이며, 고용관리 상황 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유스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정 마크를 부여하며, 어떠한 기업들이 유스엘기업으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청소년 고용촉진종합사이트(若者雇用促進総合サイト)¹⁴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지원내용은 동 법 제22조에서 제22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21조에는 국가는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자와 연계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직무 경력등기록서(職務経歴等記録書)」¹⁴⁵)의 도입의 촉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 및 효과적으로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경력 등기록서란 ‘잡카드(Job Card)’라고 불리는데, 개인의 경력관리, 다양한 인재의 원활한 취업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애를 통한 진로 계획(career planning)’의 틀 및 ‘직업능력증명’의 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커리어 컨설팅 등 개인 등을 토대로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144) 이 사이트의 주소는 <https://wakamono-koyou-sokushin.mhlw.go.jp/search/service/top.action> 이다(인출일 : 2019. 10. 2.).

145) 여기서 말하는 직무경력등기록서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직무경력등기록서를 말한다.

표 V-8 유스엘 기업 인정 기준

1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모집할 것	
2	청소년 채용, 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일 것	
3	오른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p>「인재육성방침」과 「교육훈련계획」을 책정하고 있을 것</p> <p>최근 3년간 신규졸업자 등을 정사원으로 채용된 이들의 이직률이 20% 이하일 것</p> <p>전년도 정사원의 월평균소정외노동시간이 20시간이하이며, 또한 월평균 법정시간외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정사원이 1명도 없을 것</p> <p>전년도 정사원 유급휴가 연간부여일수에 대한 취득률이 70% 이상 또는 연간취득일수가 평균 10일 이상일 것</p> <p>최근 3년간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업 등 취득자가 1명 이상 또는 여성 노동자의 육아휴업 등 취득률이 75% 이상일 것</p>
4	오른쪽의 청소년고용 정보를 공표하고 있을 것	<p>최근 3년간 신규졸업자 등의 채용자수 · 이직자수, 남녀별채용자수, 평균 계속근무연수</p> <p>연수내용, 멘토제도의 유무, 자기개발지원 · 커리어컨설팅제도 · 사내검정 등 제도 유무와 그 내용</p> <p>전년도 월평균 소정외노동시간, 유급휴가 평균취득일수, 육아휴업 취득 대상자수 · 취득자수(남여별), 임원 · 관리직의 여성비율</p>
5	과거 3년간 인정기업의 취소를 받은 적이 없을 것	
6	과거 3년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정을 사퇴하지 않았을 것	
7	과거 3년간 신규졸업자 채용 내정 취소를 한 적이 없을 것	
8	과거 1년간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해고 또는 퇴직권고를 한 적이 없을 것	
9	폭력단관계사업주가 아닐 것	
10	풍속영업등관계사업주가 아닐 것	
11	각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았을 것	
12	중대한 노동관계 등 법령 위반을 한 적이 없을 것	

* 출처 :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34593.pdf>(인출일 : 2019.7.2.)

3)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은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지만, ‘지원’ 또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느슨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속영업 규제 관련 법령(18세 미만의 자),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규제 관련 법령(18세 미만의 자), 인터넷 환경 정비 법령(18세 미만의 자) 등과 같이 소위 유해환경 및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과 같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의 「청소년 기본법」에서와 같이 ‘9-24세의 자를 청소년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령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의 형태로 본 법령 또는 조항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략 몇 세까지의 자를 말한다’ 등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탄력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고용 촉진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기본적으로는 35세미만의 자’로 정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대략 45세 미만의 자까지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청소년의 연령 정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에서는 언어의 특성상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아동청소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입각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도의 경우는 2015년 「동경

아동청소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때, 중앙정부와는 차별되게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 본다는 점,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점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연령 설정도 0-30세로, 중앙정부의 청소년 연령(6-30세), 동경도의 청소년육성조례상의 연령(18세미만의 자) 과도 상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청소년 정책이 전통적으로 규제 보다는 지원 및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조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 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청소년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연령의 고령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이들이 속한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협의체가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이다. 이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 아동청소년 지원조정기관 그리고 아동청소년지정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지원지역협의회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아웃리치(방문지원)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5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하나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조정 또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매년 아웃리치 연수 사업을 통해 전문가를 배출하여,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에 배치하고 있다(内閣府, 2019 : 116).

위 협의회는 한국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과 사무국을 주로 비영리법인(NPO)가 맡고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는 상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주로 자연권에 설치되어 있고, 법령상 생활권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에 있어 활동적 요소를 활용한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는 한국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유해 환경 규제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의 일반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2008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의 확인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필터링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 제13조 등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판매 시 구입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이 가운데 제12조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인터넷 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학습의 기회 및 계몽활동,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의 보급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VI.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

- 1. 「청소년기본법」 개정 제안
- 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제안
-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1. 「청소년기본법」 개정 제안

1) 「청소년기본법」 수정 및 보완(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조향수정을 위한 개정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① 헌법정신에 내포된 전체 인간존중의 관점을 청소년의 관점으로 재해석

「헌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조직의 기본과 근간을 이루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의 내용과 「헌법」의 조향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부여 가능한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림 VI-1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6) VI장 집필자 : 「청소년기본법」 권일남교수, 「청소년활동진흥법」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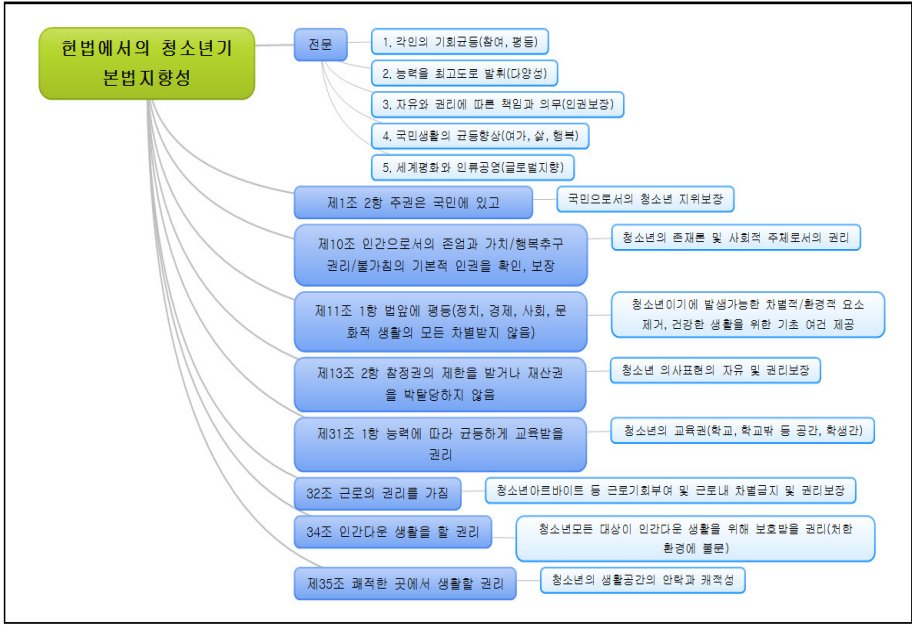


그림 VI-1 「헌법」에서의 청소년기본권 요구의미

「헌법」에서는 한 인간의 존재에서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대한 포괄적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인권의 존재감은 서구가 지향했던 자유와 평등적 관점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함께 경제적 지향성을 강조하였던 사회주의적 권리 등을 혼합한 포괄적 시각을 잘 혼재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본법」은 「헌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인권을 각기 법적 의미에서 얼마나 타당하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토대로 삼아야 하며 기본법의 규정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그림 VI-1에서와 같은 「헌법」의 재해석과정을 통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가 「청소년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②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서의 청소년역량 보장

「청소년기본법」이 중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소년계층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노력해 왔으나 현실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성장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이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증진되어야 할 책무성이 높아졌다. 역설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정서적 특성의 악화를 유발할 개연성이 더 커졌고 동시에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청소년의 긍정성장의 제도적 기반은 더욱 크게 요청되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단초로서 청소년들의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점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핵심과제로 설명하는데 무리한 의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청소년기본법」으로서 지향하는 청소년기본 인권의 의미 강력부여

청소년이 건강한 대상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에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청소년을 기성세대가 문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인과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해야 할 건강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반자로서의 권위를 보장하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의 출발점을 보면 과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인권의 지침을 규정하였기에 여성, 청소년,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타 법상에서 여성, 장애인, 아동, 기타 사회복지적 대상에 대한 인권보장을 규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을 위한 인권은 어느 곳에서도 보장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확산적 의미를 강조하는 새롭고 혁신적 의미를 강조해야만 오늘의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의한 미래 대한민국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근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④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사적 의미의 재조정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목적상에서도 권리와 책임 등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기본 이념 역시 대상과 주제적 역할, 지원의 임무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법률상에서의 연령의 차별성, 중복성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기본법상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점도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듯 세부적 내용에서 언어적 수사가 논리적으로 맞게 기술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⑤ 현장의 청소년육성과 활동 등의 개념 모호성에 대한 의미수정

「청소년기본법」에서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가져 온 부분은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등 상하위법의 용어적 설명에서 유기적 관계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항상 제기되었다. 육성의 상위개념을 근간으로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청소년활동과 연계된 수련활동의 의미 등이 물이 흐르듯 잘 연계되어야 하지만 분절적으로 소통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소년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하였던 청소년육성에 대한 개념을 보면 현시대를 기반으로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육성의 의미가

매우 수동적이고 지지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즐기치게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비판을 야기하는 관점에서조차 이렇다 할 대안이나 방법의 적극성을 제기하지는 못한 채 상식적 수준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적극성을 통제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아마도 이러한 논리적 흐름은 과거 육성의 의미를 매우 규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경향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¹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청소년지도자의 적극성, 능동성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의 삶을 이끌어 주는 성인들의 협력적 특성을 부각해 보는 차원에서 육성의 의미가 무한한 비판을 받을 정도는 아닐 수 있음을 표현해 본다. 다만 이러한 육성의 의미에 보다 명확한 상태를 직시하는 건전육성의 틀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⑥ 입법체계상 상·하위적 설명요소의 관계성 명료화

「청소년기본법」은 상징적 의미를 벗어난 적어도 청소년계의 입법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청소년을 위한 지지적 기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관련법의 최상위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 체계상에서 실행성과 현실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기본법」은 기본적 요소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의 가치지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인권과 권리를 제기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147)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정책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미국은 네거티브형 규제정책, 우리는 포지티브형 규제정책이라고 부른다. 즉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해도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표지판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곳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우리는 표지판의 허용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듯 특별히 안 되는 행정자료만 잘 준비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허용되는 분위기보다 몇 가지 규정안에서만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례나 경험이 없이는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혁신과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원법)의 위계적 의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실천적 요소가 강한 의미를 실행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⑦ 「청소년기본법」 상 책임소재의 대상(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핵심역량의 재조명

「청소년기본법」이 강조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당연시하고 고착화하는 수준을 어떻게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마도 현재의 청소년문제로 거론되는 상당부분은 건강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소홀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부재가 큰 상황이다.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봐도 부모양육의 책임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성이 악화되었을 때 청소년의 부적응이 촉발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적 지탄에 대한 한계를 청소년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역할부재에서 기인하였다는 연구 자료로 입증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거론한 상태에서 대안은 실제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면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과 부모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욱 심화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⑧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및 참여권 지원을 위한 역할과 지원명시강화

미래지향적 「청소년기본법」에는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선거권 연령인하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교육과 역량강화의 방안은 거의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장화,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권리행사 미비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부각될수록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실행력을 갖추도록 학교, 지역사회수준에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자율적 행동력을 키우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필요하다.

⑨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헌신기여에 대한 보장적 제도화 강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미성숙한 대상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헌신도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영역에 비해 낮은 보수와 지도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해 소진과 이직이 빈번한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열정을 수렴해 주는 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자의 날을 명문화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청소년 지도자의 열정을 널리 알려주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도 매우 시급하다.

⑩ 청소년지도자의 세부 운영지침사항의 불균형 해소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운영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타 영역에 비해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보장, 임무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바 타 항목과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은 너무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와 양성의 정도만 언급하고 실제 양성방법과 자격기준 등은 해당 실행법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⑪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전문지도위원제도 신설

청소년지도자의 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지도를 오래 해온 민간지도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법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청소년 전문지도자의 한 형태를 재생산하는 방안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인권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소년인권지도자 또는 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 등 미래시대에 맞는

전문 청소년지도자의 틀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지도위원회 과거 유해환경감시단 또는 지역의 청소년지도를 보완하는 민간지도자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이들의 운영과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기는 하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구태의연하다는 점이 아쉽다.

⑫ 근로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등 관심과 지원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지원의 강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근로여건과 구직활동에 청소년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적 문제에 많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단지 근로청소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청소년의 노동과 여가, 문화 등의 관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이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미래지향적 관점을 추구하는 「청소년기본법」은 지금의 인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청소년을 바라보아야하기에 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변화방향과 해당 법 내용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의미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도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와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당시의 무관심한 대상이었던 소수자에 대한 인식, 성적 평등성, 차별, 학대와 같은 직접적 문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불평등은 청소년이기에 감내해야 하는

문제영역에서 이제는 스스로 변화를 이끌고 주도해야 하는 주체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¹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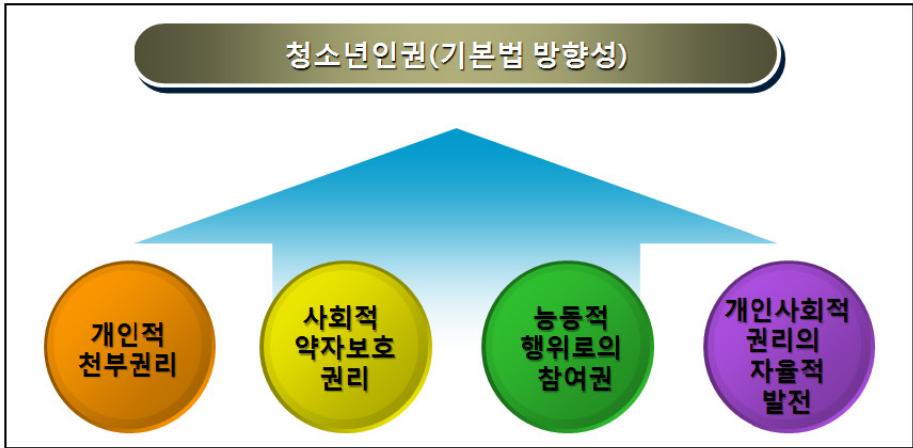


그림 VI-2 「청소년기본법」의 변화 지향점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미래 창의적 역량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실천행위를 청소년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

148) 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성인과 청소년의 집단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할 당시만해도 소수자에 대한 쟁점이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의하면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얻는게 무척 힘들었다. 여전히 성적 몰이해, 성에 대한 터부시적 사고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나타내게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 [법을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p>
<p>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p> <p><개정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 스스로가 현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함은 물론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가정, 학교, 사회적 기능 필요) 7.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기회 보장(청소년 문화, 여가 등 기본 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기회 증대) 8.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의 여건 증대 등) 9.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유익 환경확대 및 유해환경 감소노력) 10.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제적 감각, 민주시민으로서 국내와 교류, 역량 강화 등)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p> <p>.....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을 적용할 때 청소년의 직접 행위 규제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전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청소년의 기본 인권”이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다움의 최소한 권리 기준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p>
<p>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u>균형 있는 성장</u>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u>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u>을 말한다.</p> <p>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p> <p>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p> <p>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p> <p>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u>청소년육성에</u>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8. “청소년단체”란 <u>청소년육성을</u>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2-1. 청소년건전육성이란 <u>청소년이 자신의 기본인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자기계발의 주도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균형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보호와 복지의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생활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 긴밀한 협력을 함으로써</u> ……………</p> <p>6. …………… <u>균형성장에</u> 필요한 필수 역량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는 실내외 <u>체험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창의활동·봉사활동 등 여러 형태로 구조화된</u> …………… 말한다.</p> <p>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u>청소년건전육성에</u> …………… <u>으로써 가, 나항의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u></p> <p>8. “청소년단체”란 <u>청소년건전육성을</u> …………… 말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① 이 법은 <u>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청소년정책에</u> 관하여 …………… 적용한다. ② 청소년을 <u>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u> ……………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p> <p>[법을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p>
<p>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p> <p>② <u>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항 삭제하되 독립적 영역으로 재해석 : 제5조의1)</u></p> <p>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 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지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 추가사항</p> <p>⑥ <u>청소년이 인간다운 삶과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보장이 미련 되어져야 한다.</u></p> <p>⑦ <u>청소년은 자신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⑧ <u>청소년은 학교와 학교 이외에서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⑨ <u>청소년은 사회참여의 방식으로 근로를 희망할 때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제5조의1(청소년차별의 금지) ① <u>청소년에 대해서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u></p> <p>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밖 청소년, 학업중단 사회진출 청소년 및 대안교육 청소년 등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정규 교육 기회에서 유리(有離)된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u></p>
<p>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p>	<p>①-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과 참여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u></p>

청소년 기본법 [법을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p>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p> <p>[전문개정 2014. 3. 24.]</p>	<p>①-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 대상의 특성과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위해 힘쓰도록 해야 한다.</u></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에 영향력이 큰 관련분야 및 부처 전반의 정책에</u> 있다.</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그 결과를 청소년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u></p> <p>⑥(현행과 같음)</p> <p>제5의3(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u></p>

「청소년 기본법」의 법적 요소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이관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p>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양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p>
---	---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p>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p> <p>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p> <p>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p>	<p>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자격 부여 등의 개념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실제적 지원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p>[전문개정 2014. 3. 24.]</p>	<p>활동진흥법으로 이관</p>

<p>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5. 6. 22.]</p>	<p>활동진흥법으로 이관</p>
<p>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양성) ① 여성가족부장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양성과 자격 부여 등의 개념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제적 지원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p>	<p>활동진흥법/복지지원법으로 이관 <u>④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은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배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u></p>
<p>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p> <p>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활동진흥법/복지지원법으로 이관</p>
---	-------------------------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청소년참여와 권리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올바른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p>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 현행의 법조항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고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은 활동진흥법에서 개별 시설 또는 조직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기본법에서는 오히려 더 큰 거대 담론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국적 기구로서 특별회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제12조(청소년참여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구현과 청소년중심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u>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참여기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u></p> <p>② <u>청소년참여기구 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u></p>
---	--

	<p>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①항을 ②항으로 수정 ③ ②항을 ③항으로 수정 ④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기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p>
--	--

청소년정책 집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u>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u>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① <u>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u>하고</p> <p>② <u>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고용주로부터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u></p> <p>③ <u>에서 부모의 역할</u></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의 지원을 위한 제도확립과 기능강화에 적극 노력</u>해야 한다.</p> <p>⑤ ④항(현행과 같음)</p> <p>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u>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당 시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노력</u>해야 한다.</p>
---	--

「청소년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의 청소년정책 구현과 실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행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였다.

<p>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7조(청소년인권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u>건전</u>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u>청소년인권</u>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p> <p>①-1. <u>청소년인권지도위원은 청소년의 인권과 관리보장을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u></p> <p>②<u>청소년인권지도</u><u>임무, 역할</u></p>
<p>제6장 청소년단체</p>	
<p>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p>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교육에서 <u>충족하기 어려운 자기계발과 체험활동을</u> 1-1. <u>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자기 표현과 참여기회제공</u> 2.-3.(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

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제안

1) 개정방향 제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현장중심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에 관련 사항을 과감하게 기본적 골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남겨두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은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이관조치가 검토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정의 조항상,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학모부들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용어정의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가장 큰 맹점중의 하나가 바로 책무성이다.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하며, 잘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책임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넷째,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관련된 규제 제도로 비춰지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사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운영현황으로 볼 때, 둘 제도 모두다 현장에서 외면 또는 발전이 아닌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지는 안타까움이 있다. 실적을 위해 또 다른 강압적인 방법 모색이 아니라, 현장이 알아서 찾아오고 따라가게 하는 제도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을 완성하게 하는, 안정적 국가 및 지자체 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손을 못대는 게 청소년활동의 현실이다. 특히 국공립수련시설의 경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민간(개인) 및 법인 등의 수련시설들은 제기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난관에 놓여있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정책은 고유한 청소년육성정책의 핵심중 하나이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산림청, 농림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부관광부 등)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사업과의 명확한 관계성 정리 필요하다. 일정부분 유사사업 추진 제동과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정의, 내용,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은 관리적 측면에서 나름 잘 되어있다. 문제는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보여 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고제도 및 인증제도 등이 나름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도입으로 현장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위축되고 멀리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시범적인 새로운 시도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참여확대 및 도전의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의 체계화 및 운영의 다각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 집행 또는 운영기관이 관리와 안전부분을 통합 운영되는 것은 견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가시설의 적합한 운영방식이라 볼 수 없다.

넷째, 청소년활동 전문지도인력 양성 및 배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제 공간만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의 개념에서 전문인력이 함께 적극적으로 청소년지원(프로그램)하는 선전화 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2) 개정(안) 내용 제안

(1) 청소년활동신고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우리사회에 큰 아픔을 주었던 무허가 인천해병대캠프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청소년대상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재로부터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적 청소년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2014. 1. 21] 개정되었으나,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수련활동 현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본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의 보장이 불가능해진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신고제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유능하고 검증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기능해야함이 바람직하나,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정기적 시설 및 프로그램안전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등에 관한 종합적 평가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의무적 실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제도를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청소년수련시설로의 확대 적용을 통해 발생한 수련활동현장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사실상 거의 모든 야외에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신고 시 조사하고 준비해야할 자료 및 작성서식이 너무 많아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상기의 문제로 인해 기준이 모호한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야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프로그램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련시설 내부를 활용한 단기형 비 숙박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련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도자(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원적지 호적등본 발급 요구 등)를 요구함으로써,

특히 재능기부와 나눔의 차원에서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수련활동의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차원의 강화와 아울러 청소년수련활동 위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내용

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외 기관의 확대보완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8(청소년단체의정의)에 의거한 청소년단체

현 행	개 정 안
제 2 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 2 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p>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p>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좌동 1~4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10조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서 <u>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u>과 <u>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u>에 의거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결과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신설) 6.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8(청소년단체의정의)과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범위)에 의거한 청소년단체의 경우 (신설)

(2) 국가 지자체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집행에 있어서 마땅히 본 법을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하는 국가 및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나아가 불법적 운영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본 법의 정책대상인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일선에 청소년 현장에서 충실히 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및 시설·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가 불법적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에 대한 양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재확인하고, 대국민 신뢰도와 청소년 활동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가. '국립 및 공립(지자체) 수련시설 감독 및 처벌'에 대한 조항 신설(제67조2)

-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처벌 사항
 1. 여성가족부 이외의 국가 정부부처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불법 설치 및 운영사항
 2.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에 불법위탁
 3. 국립수련시설 설립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사항 미준수
 4. 국립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7조(시설기준), 제18조(안전기준),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 등) 사항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2호, 3호, 4호 관련 사항의 위반
2. 지자체 건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에 불법위탁
3. 지자체가 지역내 건립한 수련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사항 미준수
4. 지자체 건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시설기준), 제18조(안전기준),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 등) 사항 미준수

(3)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에 대한 주기

청소년수련시설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집행에 있어 유사 사회복지사업법과의 차이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탁 청소년시설 및 기관은 수련시설평가 외 기관 위탁 심사, 안전점검 평가, 감사, 식품위생관리 등의 잦은 평가로 인해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무엇보다 평가준비로 인해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예상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일부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설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 법 및 시행규칙의 취지이다.

본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서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

○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에 대한 주기 개정(제9조의2 ①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 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 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보완

청소년수련시설 참가 청소년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수련시설 전문인력의 근무안정성 유지,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의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제25조 2항 관련)상에 명시되어있는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고 있어,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최소인력만을 배치하는 문제 발생으로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지도인력 배치기준을 재보완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를 법에 반영한다.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2017.1)〉

Ⅲ-1-나. 종사자 관리

1) 청소년지도사 배치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이상 확보(권장)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지표 4.1.2 수용정원대비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 매우우수(2.5% 이상), 우수(1.5%초과-2.5%미만), 보통(1.5% 준수), 매우미흡(1.5% 미준수)

최소인력 배치 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성 결여 및 청소년지도사 업무과중 문제 발생으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직무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도 지도인력 배치 기준의 재보완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별표 5)' 보완(제25조 2항)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가 청소년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비율 현실화 마련

〈현행〉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안)〉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명을 초과하는 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2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5)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수행에 있어 학교 밖에서 공식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학교 밖 공공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치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일 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학교와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추가(제9조 ⑤,⑥항)

나.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0조(활동기록,유지관리등) '교육부의 협력' 사항 추가(제20조 ③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p> <p>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p>	<p>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p> <p>⑤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수련 활동 인증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율활동을 학교에 제시하고 방과후 자율동아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학교 안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율동아리의 활동내역을 학교에 제시하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p>
<p>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p> <p>①②좌동</p> <p>③ 교육부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집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주요내용

오늘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다원화된 청소년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이 전략적으로 필요함.

또한 청소년활동 정책은 학교교육정책과 더불어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지역자원 연계·활용을 통해 청소년활동 정책의 체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임.

이처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에 대한 효율적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은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조직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대표자의 경영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요구됨.

따라서 운영대표자의 청소년활동시설 종사경력 및 자격유무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야함.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청소년 지도사’ 국가자격검증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공급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현장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냄.

그러나, 현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1급 취득자 1,615명, 2급 취득자가 30,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대한 법령에 강제성이 없어, 법규로써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에 청소년지도사들이 교육 - 자 격 - 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및 역할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그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함.

(7) ‘청소년지도사 보수 연수’ 대상 정의

청소년기본법의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의 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의 대상자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로 한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국가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일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일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 참여 대상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확대함(제2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8) '청소년지도사 보수 연수' 대상자 적용시점

청소년기본법의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인 학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참여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이 현장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 대상자의 적용시점'인 청소년 자격증을 취득한 해를 포함한 3년 동안은 보수교육을 유예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제10조2호1항)

나.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 대상'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한 확대 보완(제3조1호)

(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시 수용인원 산정기준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마련되어 있으나, 수련시설 각 활동장별 수용정원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직원확보율, 참가 청소년의 안전성 확보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표3 관련)에 명시되어있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입지, 구조, 설비기준 등만 명시되어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동일면적에 대한 수용정원이 각 시설별로 상이한 문제 발생,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의 상향 획득을 위하여 임의대로 수용정원을 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참가청소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 등의 검토로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별표3의 청소년수련시설 각 활동장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명확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을 통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구 분	기 준
1) 면적 2) 실내집회장 3) 체육활동장 4) 자치활동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6) 상담실 7) 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수용정원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수용정원 산정 방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을 준용한다. -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 해당용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 - 자치활동실, 강의실, 특성화수련활동장 등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청소년문화의 집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용정원	<p>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말한다.</p> <p>※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수용정원 산정 방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을 준용한다.</p> <p>-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p> <p>- 자치활동실, 강의실, 특성화수련활동장 등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p>

※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법 시행령 [별표4]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을 준수할 수 있다.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 조세감면 수정 및 보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국내에서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영상, 조명, 방송 등)와 인증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기자재, 실습, 실험 등의 비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업종인 수련시설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은 세제 혜택을 받으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은 납품을 받아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시설(비영리법인, 영리법인)로 분류되지만 이는 모두「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에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 보호 등을 수련시설에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감면의 혜택이 확대 되어야 한다.

○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에 국내에서 직접 구매되는 교육기자재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감면 조항인 제66조③항에 삽입.
- 나. 수련시설에서 급식으로 사용되는 제조된 식품, 공산품도 감면 혜택 내용 제66조 ③항에 삽입.

현 행	개정안
<p>청소년활동진흥법</p> <p>1. 국내에서 구입하는 시청각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 등 비품 감면조항 없음</p> <p>2. 식자재에 제공되는 제조식품, 공산품 등 감면조항 없음</p>	<p>청소년활동진흥법</p> <p>제66조(조세 감면 등)③항 보완</p> <p>1. 국내에서 구입하는 시청각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 등 비품 감면 내용 삽입</p> <p>2. 식자재에 제공되는 제조식품, 공산품 등 감면 내용 삽입</p>
<p>제66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p>	<p>제66조(조세 감면 등)③ 국가는 청소년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사용하는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에 필요한 비품장비와 식자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 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p>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관련 사안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1993년 1월에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의 틀 아래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청소년기본법 제37조(민간인의 참여 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 금융, 세제 기타 행정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숙박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은 전국 189개소 중 민간 125개소 (66.14%), 국공립 64개소(33.85%) 로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8.12.31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중 주로 민간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은 넓은 숲 조성 및 야외 활동장, 체험활동시설·장비 등을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타 업에 비하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

최근 저출산 문제, 태안 해병대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발병 등으로 민간 및 법인의 수련시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립 수련시설(전국 5개소) 및 지자체 수련시설의 경우, 어려운 운영상황을 국고와 지방재정을 통하여 시설개선비 지원 및 운영비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및 법인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민간 및 법인 수련시설의 운영유지는 미래의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국립 및 공공 수련시설의 지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운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민간참여유도 정책목적 달성 및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타 업과의 형평성 확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적 역할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산업분류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17.1.13 고시, '17.7.1 시행)되었다(기존 숙박업→교육서비스업).

가업상속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위하여 현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 2019-149호)를 통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에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 보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 요청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개정 요청안
가~타 (생략)	가~타 (현행과 같음)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업(85614)
하~너 (생략)	하~너 (현행과 같음)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1) 개정방향 제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개정내용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단위 - 지방단위 청소년복지전달을 체계화하고 이 내용을 법 체계 상에 포함(※독일의 청소년청 사례 참고) •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의무를 법체계 내에 포함 •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및 업무분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복지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 연령확대(후기청소년 포함) • 연령 확대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립, 진로지원 서비스 내용 개발, 포함 필요(※ 청년기본법과의 관련성 유의) •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사항 제시 •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및 규정 마련
복지의 추진방법 및 양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처간 협력 사업 개발 근거 마련 (※ 미국의 비행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방부 운영 프로그램 사례 참고) • 정신보건 분야 지원에 대한 구체화 • 건강검진이후 치료 개입 등 명시 •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수준과 양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상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복지지원 내용 강조 필요
자립지원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 분야의 정의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함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근거 마련 • 단, 정보제공 관련사항 누설시 엄벌주의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법적 설치 규정 강제화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기준과 같은 지역별 배치 기준 명시 필요)

항목	개정내용
복지지원의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의 의무성, 강제성 강화 (예 : 할 수 있다 → 해야 한다)
법체계 구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책무 - 일반/위기/특별청소년 영역 지원 이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화 •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통해 청소년복지지원 내용의 세부사항 구체화 •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성 강화 • 정의,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 등 법의 구성 범주감 균형 고려 필요
가출분야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부분 특화 영역으로 확대 • 가출 청소년 대상별 특화 쉼터 개발
타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과 법무부 예방사업과의 차별화, 구체화 • 타부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 필요(장기적 접근) • 아동복지법과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장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통합(※ 독일 사례 참조) • 청소년을 복지수혜대상이 아닌 능동적 자원으로 보는 방향으로의 장기적 변화 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중심이 '복지'가 아닌 '지원'이 되도록 하는 장기적 변화 필요 • 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의 보편적 복지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

2) 개정(안) 내용 제안

미래지향적 청사진 모색을 위한 국내·외 문헌고찰,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정비 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보다 체계적인 법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체계 구성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적 체계가 부족하며 전면적인 법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률체계에 따르면 법률체계는 일반적으로 총칙, 실체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 순으로 나타나며 이 중 총칙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정 순서가 '목적규정→정의 규정→해석 규정→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실체규정에는 '허가·특허·인가·등록·신고·지정·인허가의제, 결격사유, 과징금·부담금·연체금과 가산금, 보조·출자·출연/재정·회계제도, 기금, 자격부여·외국인의 지위, 위원회·특수법인, 행정쟁송'을 보칙규정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수수료→출입검사와 질문·보고의무→청문→권한의 위임·위탁→직무대리·행정업무의 대행→손실보상 및 손해배상→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별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별칙규정은 '형벌, 과태료', 부칙규정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체계에 대한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의견, 유사법인 「아동복지법」 등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구성방안을 제시해 보면 ① (1장 총칙의 하위 영역으로) 법의 목적→정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필요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의무'도 이곳에 위치 가능,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나 있어 차별화된 법조문을 추가하거나 기본법에 청소년복지 관련 내용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 모색 등)· ② (실체규정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 : 일반 청소년 복지, 위기·특별지원 청소년 복지 순으로 구성하되 하위에 건강지원, 학업지원, 생활지원 등 영역별 제시, 영역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 내용 포함, ③ 청소년 복지 기관·시설·단체에 관한 내용, ④ 보칙규정, ⑤ 별칙규정, ⑥ 부칙규정' 순으로 법체계가 개편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단, 일반적으로 총칙에 나타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등은 「청소년기본법」에 드러나 삭제되어

있어「청소년복지지원법」만으로는 결여되어, 체계성이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장이나 절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조문 한 개로 축소되어 제시되거나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범주간 균형(중요한 것은 많이 될 중요한 것은 적게)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 G는 또한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기청소년 지원과 교육적 선도가 각각 5장, 6장으로 동일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있어 위기청소년 지원이 훨씬 큰 만큼 더 큰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즉, “HOW?”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고 규정되어야 함 또한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법령 입안에 관한 헌법 원칙 중 특히 ‘복지·지원’에 관련된 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평등의 원칙(법 적용상 뿐 아니라 입법내용이 평등해야 하며 자의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 주목), 적법절차의 원칙(절차를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내용도 합리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 주목), 명확성의 원칙(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 주목),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범위를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 주목)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아 이 부분에 관해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체계 구성 개정(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정의</p> <p>제2조 실태조사</p> <p>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p> <p>제3조 청소년의 우대</p> <p>제4조 청소년증</p> <p>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p> <p>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p> <p>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p> <p>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p> <p>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p> <p>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p> <p>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p> <p>제10조 운영위원회</p> <p>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p> <p>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p> <p>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p> <p>제13조 상담 및 교육</p> <p>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p> <p>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p> <p>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p> <p>제17조 삭제</p> <p>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p> <p>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p> <p>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p> <p>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정의</p> <p>제3조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 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청소년복지 지원 체계</p> <p>제4조 실태조사</p> <p>제5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p> <p>제6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p> <p>제7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모든 청소년 복지</p> <p>제1절 청소년의 우대 등</p> <p>제8조 청소년의 우대</p> <p>제9조 청소년증</p> <p>제2절 청소년의 건강보장</p> <p>제10조 건강한 성장지원(☆정신영역 포함)</p> <p>제11조 검사 및 진단(☆정신영역 포함)</p> <p>제11조의1 검사 및 진단</p> <p>제11조의2 검사 및 진단 결과의 분석 등</p> <p>제11조의3 검사 및 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p> <p>제12조(신설) 검사 및 진단 후 건강지원</p> <p>제3절(신설) 청소년 자립지원</p> <p>제13조(신설)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p> <p>제14조(신설)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p>

현행법령	개정(안)
<p>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p> <p>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p> <p>제23조 정관</p> <p>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p> <p>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p> <p>제26조 임원</p> <p>제27조 이사장</p> <p>제28조 「민법」의 준용</p> <p>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p> <p>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p> <p>제8장 청소년복지시설</p> <p>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p> <p>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p> <p>제33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p> <p>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p> <p>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p> <p>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p> <p>제9장 보칙</p> <p>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p> <p>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p> <p>제39조 감독</p> <p>제40조 예산의 보조</p> <p>제41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p> <p>제42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p> <p>제10장 벌칙</p> <p>제43조 벌칙</p> <p>제44조 양벌규정</p> <p>제45조 과태료</p>	<p>제4장 위기 및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p> <p>제1절 위기 청소년복지 지원</p> <p>제15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p> <p>제15조의1(신설) 청소년 가출의 조기발견</p> <p>제15조의2(신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p> <p>제16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p> <p>제17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p> <p>제18조(신설) 쉬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p> <p>제2절 특별지원 청소년복지 지원</p> <p>제19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p> <p>제20조(신설) 특별지원의 발굴</p> <p>제21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p> <p>제22조(신설) 특별지원 청소년의 사후개입</p> <p>제3절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p> <p>제23조(신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p> <p>제24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p> <p>제25조 보호지원후견인</p> <p>제26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5장 청소년복지지원 체계</p> <p>제1절 청소년복지지원기관</p> <p>제27조(신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설치</p> <p>제28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p> <p>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p> <p>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p> <p>제2절 청소년복지시설</p> <p>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p> <p>제32조 청소년쉼터</p> <p>제32조의2(신설) 청소년쉼터의 유형</p> <p>제32조의2(신설) 청소년쉼터의 서비스</p> <p>제32조의3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p>

현행법령	개정(안)
	<p>제33조 청소년자립지원관 제33조의1(신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 제33조의2(신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 제33조의3(신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제34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제34조의1(신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형 제34조의2(신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서비스 제34조의3(신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제35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제35조의1(신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유형 제35조의2(신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서비스 제35조의3(신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7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 감독 제39조 예산의 보조 제40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 제40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p> <p>부칙</p>

이 중 다른 법 조항과의 형평성과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해당사항을 법에 근거하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령 중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의 '제10조 운영위원회',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해당하는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등이다. 위 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각 법조문 별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자립'에 관한 사항이 법조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에서 나타난바 대로 '자립'은 최근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지원 영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을 위한 조문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추가하되 「청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의무는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보호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만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소년복지체계가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부처, 지역사회, 보호자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령	개정(안)
-	<p>제 1 장 총칙</p> <p>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사회는 「청소년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청소년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p>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을 가능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할 필요성 또한 제기 되었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야 한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신체적 영역 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이후 치료나 조치 등도 법조항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목개정 2017. 12. 12.]	제10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신체·정서·심리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향상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동일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 및 진단 결과의 분석, 공개 금지에 관한 사항 또한 신체적 부분은 물론 정신적 영역까지로 확대되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 이후 검진이나 진단 뿐 아니라 치료 및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국가와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	제12조(검사 및 진단 후 건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검사 및 진단 후 치료 또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은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 등을 위해 청소년 치료 및 지원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마련의 근간이 되었던 청소년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제공되는 청소년사업 안내 내용 중 법에 포함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법 조항에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를 예로 들어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	개정(안)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p> <p>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p>	<p>제32조 청소년쉼터</p> <p>제32조의 1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58 437 1040 949"> <thead> <tr> <th>구분</th> <th>일시쉼터</th> <th>단기쉼터</th> <th>중장기쉼터</th> </tr> </thead> <tbody> <tr> <td>보호기간</td> <td>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td> <td>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td> <td>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td> </tr> <tr> <td>이용대상</td> <td>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td> <td>가출 청소년</td> <td>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td> </tr> <tr> <td>핵심기능</td> <td>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td> <td>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td> <td>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td> </tr> <tr> <td>위치</td> <td>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td> <td>주요도심별</td> <td>주택가</td> </tr> <tr> <td>지향점</td> <td>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td> <td>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td> <td>자립지원</td> </tr> <tr> <td>비고</td> <td>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td> <td colspan="2">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td> </tr> </tbody> </table> <p>제32조의 2 청소년쉼터의 서비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요구 및 상황, 쉼터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②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③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④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가출의 조기발견 등을 신규 조항으로 포함시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	제15조의1(청소년 가출의 조기발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가출후 조기에 가정 또는 사회에 복귀 또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유형화를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수치 상에서 '쉬움'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업·무직형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단, 이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시책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 계획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	제18조 기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무업·무직형 청소년(니트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까지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그쳤던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발굴방법, 지원 이후 다시 시급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p>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p> <p>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 특별지원 청소년복지 지원</p> <p>제19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p> <p>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특별지원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는 특별지원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p>제21조(특별지원 청소년의 사후개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청소년이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입이후 최소 1년간 2회 이상 생활상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지원과 개입’에 초점을 맞추었던 현행법의 방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발굴과 예측,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조항이 추가 또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도 6개월~1년 가량의 시설 생활 후 퇴소한 청소년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비행의 재발이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령	개정(안)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p> <p>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제35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p> <p>제35조의3(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장은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현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의 경우 그 개념적, 내용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제로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 체계’를 별도 장으로 신설하여 실태조사, 상담과 전화 설치,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등과 함께 앞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인력이 대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공동 역할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은 물론 청소년복지지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아동복지법과의 서비스 격차 해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소년관련 조직 명칭 통일 또는 관련 사항 명시, 지원과정, 단계의 구체적 보강, 청소년복지 관련 웹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 축적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2016.0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62204>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과 미래 : 2015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보고서**.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미래연구회.
- 국회도서관 (2012). **주요국의 영유아보육법**. 서울 : 국회도서관.
- 곽병선, 유병열, 윤현진 (1997). **인성 교육의 실제**. 서울 : 중앙교육심의회 장학편수분과.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 관계부처 합동.
- 김선애 (2015).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4), 93-114.
- 김성준 (2009).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사적 관점에서 헌법의 정의 시도. **세계헌법연구**, 15(2), 177-202.
- 김영미 (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2), 58-73.
-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사회복지법제연구**, 9(1), 41-69.
- 김영한, 조아미, 이승아(2013). 청소년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 (2012).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법과인권교육연구**, 5(1), 29-45.

- 김정환 (2009).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44(2), 71-97.
- 김태균 (201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반성과 향후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2(2), 43-66.
- 김현수 (2017). 도덕과교육에서 인성교육 관련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14, 141-161.
-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lob/100814/eba44d0c71a4b2064035d5c0d1c6d431/pdf-organigramm-data.pdf>에서 2019. 7. 12. 인출.
-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2008). **입법학입문**.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박정훈 (2009). 입법체계상(立法體系上) 기본법(基本法)의 본질(本質)에 관한 연구 (研究) : 일본(日本)의 기본법(基本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8(12), 272-317.
- 박진규 (2004).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6(2), 5-14.
- 박진애 (2017.10).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I : 「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입법현안 법률정보**, 69, 서울 :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 법제처 (2010). **2011 법제업무편람**. 서울 : 법제처.
- 법제처 (2017). **법령입안·심사기준**. 세종 : 법제처.
- 법제처 (2018). **2019년 법제업무편람**. 세종 : 법제처.
- 법제처 (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보건·복지분야) (공통)**. 세종 : 법제처.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 안미영 (2017).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의 고찰. **사법행정**, 58(2), 43-52.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보도자료(2019.3.22). [카드뉴스] 교권 추락에 학교 떠나는 교사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29700797>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 오병선, 김비환 (2011). 인권의 해설 : 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기획도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유병열 (2006). 도덕교육론=Moral education. 파주 : 양서원.
- 유수연 (2012).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6), 4-10.
- 유영미 (2016). 제·개정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고찰. 법학연구, 50, 103-125.
- 윤철경, 김영지, 김기현, 오성배 (2008).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수시과제) 08-R16).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향희, 김경제 (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20, 353-388.
- 이부하 (2018).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법학연구, 21(2), 129-154.
- 이용교 (2004).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5-24.
- 이용교 (200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청소년복지연구, 9(1), 1-16.
- 이유진, 김영한 (2017).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연구보고 17-R20).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4, 국제사회보장리뷰, 1, 106-111.
- 전광석 (1994). 독일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 정재훈 (2014).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33, 44-55.
- 조성혜 (2011).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41, 43-84.
- 최종선 (2014).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해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5(1), 303-333.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대전 : 통계청.
- 통계청 보도자료 (2019.09.24.). **2018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60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 통계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2019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44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 홍봉선, 남미애 (2018). *청소년복지론*. 경기 : 공동체.
- e-나라지표 웹사이트 (2018.12.7.).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 (2004).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98-124.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 (2004).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98-124.

Christoph Degenhart (2015). **독일 헌법총론**. 홍일선(역.), 서울 : 피엔씨미디어.

Dysart, T. L. (2014). The Protected Innocence Initiative : Building Protective State Law Regimes for America's Sex-Trafficked Children, 44 COLUM. HUM. RTS. L. REV. 619, 629.

Fernandes-Alcantara, A.L. (2018). Vulnerable Youth : Background and Polic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ilgendorf (2003). dtv-Atlas Recht 1(Band 1).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Konrad Hesse(2001). **통일 독일헌법원론**. 계획열(역.), 서울 : 박영사.

Meier/Bannenberg/Höffler (2018). Jugendstrafrecht(4.Auflage). C.H.Beck. Meyers 웹사이트. <http://lexikon.meyers.de/meyers/Verfassung>

Peter-Christian Kunkel (2018). Jugendhilferecht(9.Auflage). Nomos.

佐々木禎 (2010).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もとづく子ども若者支援・クォータリー生活福祉研究, 75(1) 3,1-18, 明治安田総合研究所

総務庁青少年対策本部 (1998). 平成8年度版・青少年白書

総務庁青少年対策本部 (2001). 平成11年度版・青少年白書

内閣府 (2002). 平成13年度版・青少年白書.

内閣府 (2003). 平成14年度版・青少年白書.

内閣府 (2016). 平成28年度版・子ども・青少年白書.

内閣府 (2018). 平成30年度版・子ども・青少年白書.

内閣府 (2019). 平成31年度版・子ども・青少年白書.

[법령 및 판례]

2004년 이후 「청소년기본법」 입법화내용(57건).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9년 7월
11일 인출.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 of 2017.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253/text?q=%7B%22search%22%3A%5B%22family+first+prevention+services+act%22%5D%7D&r=1>.

가출및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 of 2018.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9,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571/text>.

건강및기아없는아동법(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bill/3307>.

국가방위인가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50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5314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
가족지원법](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체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908&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체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914&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와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of 1993.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house-bill/2010>.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 to Prevent Child Exploitation and Other Sexual Crimes Through 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515>.

노동규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congressional-record-index/114th-congress/2nd-session/fair-labor-standards-act/234333>.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5,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177>.

법제처, 청년발전기본법안의 주요내용,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IPstSeq=984>.

보호법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108/plaws/publ21/PLAW-108publ21.htm>.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2100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860>.

성착취인신매매예방과가족강화법(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4980>.

성착취자로부터의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5th-congress/house-bill/3494>.

성학대로부터청소년보호및안전스포츠승인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of 2017.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534>.

소년사법과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 2019, from <https://ojjdp.ojp.gov/research-and-statistics>.

손자양육조부모지원법(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091?q=%7B%22search%22%3A%5B%22Supporting+Grandparents+Raising+Grandchildren+Act%22%5D%7D&r=2>.

실종,착취,가출아동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9,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senate-bill/249>.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0,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4365>.

아동보호와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11,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9th-congress/house-bill/4472>.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9,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4600>.

인신매매피해자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of 2015.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9,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78>.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Retrieved July 7, 2019,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bill/1350>.

○ — 부록

-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지

부 록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지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령 정비 방안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지(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문 ■

※ [붙임 1]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 개요 및 실제

- 청소년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의 변화하는 개념과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개선방안

(1) 법체계의 구성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법체계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 복지시설,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과 관련하여
 - (일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임에도 누락되어 새롭게 추가되어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복지 지원법」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2) 세부 사항

- 다음 각각의 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정의, 개념, 세부구성 내용의 적합성 등).
 - 제1장 총칙(목적, 정의, 실태조사)
 -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청소년의 우대, 청소년증)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건강한 성장지원,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운영위원회)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의 신천 및 선정,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보호지원후견인)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제9장 보칙

- 법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3) 타법과의 관계

- 소년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우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4) 청소년관련 환경, 미래 청사진의 반영정도

- 청소년관련실태, 제6차청소년5개년계획, 아동권리협약 등 청소년관련 청사진의 내용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청사진들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청사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장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 내용 이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료 또는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추후과제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미래지향적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개선 또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긴 시간 동안 면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 · 윤철경 · 서고운 · 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 · 임정아 · 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 · 유민상 · 김창환 · 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 · 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 · 백혜정 · 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 · 정연 · 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 · 최정원 · 변금선 · 이종원 · 이민정 · 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 · 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 · 이종원 · 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 · 김현철 · 문호영 · 이윤주 · 박지숙 · 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 · 이윤주 · 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층)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규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로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64-235-3 93330